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5-10

www.mafra.go.kr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Ⅱ)

2020. 1.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 1 권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1

1. 기본규정 ····· 3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 58

Ⅱ. 2020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 97

Ⅲ.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 163

농촌분야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 165

1. 귀농귀촌 교육 ····· 167
2.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 174
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경상보조) ····· 182
4. 청년귀농 장기교육 ····· 194

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 203

5.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 205
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231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 235
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 260
9.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 264
10. 영농도우미 지원 ····· 289
11. 일반농산어촌개발 ····· 301
12.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 321
13. 행복나눔이 지원 ····· 345

농업분야

2-1 경쟁력 제고 ····· 357

14. 경영실습임대농장 ····· 359
15. 곤충유통사업지원 ····· 388
16. 농업계학교 실습장(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 401
17.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 402
18. 농업농촌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 475
19. 농촌고용인력지원 ····· 481
20. 도시양봉 지원 ····· 502
21.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 509
22.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 535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550
2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사업 공모지원 ····· 573

2-2 생산기반확충 ····· 579

25.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581
2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598
27.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 611
2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632
29. 농촌용수개발 ····· 645
30. 배수개선(지자체) ····· 667
31.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 690
32. 수리시설개보수 ····· 705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725
34. 유기농업자재지원 ····· 736
35. 유기질비료 지원 ····· 766
36. 토양개량제 지원 ····· 792
37. 한발대비용수개발 ····· 813

제 2 권

2-3 농가경영안정 ····· 837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 839
39. 농기계임대 ····· 870
40. 농업자금이차보전 ····· 898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 1004
42. 친환경농업직불 ····· 1019

2-4 국제협력협상 ····· 1035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 1037

식량분야

3-1 경쟁력 제고 ····· 1049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 1051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 1120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 1121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 1122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 1223

48.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융자) ····· 1225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 1230

축산분야

4-1 경쟁력 제고 ····· 1251

50. 말산업 육성지원 ····· 1253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1270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 1306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 1320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 1328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 1333
56. 축산자조금 운영 ····· 1349

4-2 생산기반확충 ····· 1355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 1357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 1364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 1390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 1438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1463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1506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 1519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 1521
64. 친환경축산직불 ····· 1527

식품분야

5-1 경쟁력 제고 ····· 1539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1541
6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1548

5-2 생산기반확충 ····· 1557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 1559
68. 전통주산업진흥 ····· 1566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 1571
70. 찾아가는 양조장 ····· 1589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 1595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1597
72. GAP 생산여건조성 ····· 1643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 1650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 1677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1686

제 3 권

유통원예분야

6-1 경쟁력 제고 ····· 1713

76. 과실브랜드 육성 ····· 1715
7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1757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 1794

6-2 생산기반확충 ····· 1827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 1829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1885
81.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 1899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1909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 1935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 1989
85.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 2023
86.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2031
87. 과원규모화(융자) ····· 2064
88.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 2089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2105
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 2151
91. 시설원예현대화 ····· 2166
92. 유통시설현대화 ····· 2208
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 2234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 2247
95.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 2259
96.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 2271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 2277

97. 공동선별비지원 ····· 2279
9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 2301
99. 직거래장터 지원 ····· 2334
10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 2343
101. 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 2350
102.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 2359

103.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 2367
104. 산지유통활성화자금 ····· 2382
105.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 2410
106. 자조금지원 ····· 2425
107.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 ····· 2434
108. 직매장 지원 ····· 2448
109. 채소가격안정지원 ····· 2464

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 2471

110. 조림(지자체) ····· 2473
111. 정책숲가꾸기 ····· 2478
112. 공공산림가꾸기 ····· 2482
113. 양묘시설현대화 ····· 2485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2494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2502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2509
117. 수출기반구축 ····· 2516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2524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 2532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 2537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 2543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 2547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 2554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 2572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 2579

2-3 농가경영안정

농업분야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예산 (백만원)	8,800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한도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080	18,536	16,712	17,600
국 고	11,592	9,320	8,356	8,800
지방비	11,488	9,216	8,356	8,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국회	044-201-1560
		주무관 윤주영	044-201-156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한창형	054-429-4072
		주무관 이지세	054-429-4079

신청시기	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논이모작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②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③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⑥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⑦~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다. 사업대상지구 준수(의무)사항

○ 사업대상지구와 참여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 농지 및 마을경관 개선 공동작업 등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 향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 작물, 지급단가,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 등 조정 예정

Ⅱ 사업추진체계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수요조사)	4월	추진위원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 사업 신청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
⇓			
사업수요 제출	5~6월	시·도, 시·군, 읍·면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면적 배정	7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8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추진위)
⇓			
협약체결	9~10월	시·군, 추진위원회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사업대상선정 결과 제출	11월	시·도, 시·군	·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협약체결) 결과 및 면적배정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예산 배정	12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시·도별 대상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이행점검	(차년도) 개화기 (4~5월, 9~10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
⇓			
보조금 지급	(차년도) 6월, 11월	시·도, 시·군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사업신청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4월 말까지)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첨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라. 사업신청서 접수

읍 · 면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5월 15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마. 사업대상지구 추천

시 · 군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확인을 거쳐 사업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까지)

②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지구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별지 제9호 서식]

시 · 도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까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가.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 배정(7월 말까지)

나.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시 · 도

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 배정(8월 10일까지)

시 · 군

② 시장·군수는 읍·면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구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까지)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③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다.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시 · 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9~10월)

②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③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라.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 및 확정

시 · 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 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까지)

시 · 도

②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 입력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까지)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가. 작물재배관리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②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시 제시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읍 · 면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시 · 군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 · 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의뢰시기 조정 가능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이행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⑤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점검결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 시스템으로 통보

시 · 군

②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라. 이의신청

시 · 군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서면[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읍·면장)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으로 재전송

시 · 군

③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결과를 통보

마.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

시 · 도, 시 · 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②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의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바.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 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시·군, 시·도)

① 직불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직불금 감액기준”을 적용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②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동계작물, 하계작물)까지 지급 가능

③ 직불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

< 직불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직불금 지급 취소(100% 감액)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⑥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교부요청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요청

② 교부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교부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③ 전산작업 : 시·도(시·군)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④ 보조금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교부액 전금

다. 직불금 지급(시·군)

① 시·군는 시·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경관보전”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라. 지급결과 보고

① 시·도(시·군)는 직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말)

마. 정산 및 반납(시·도, 시·군 등)

① 시·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액 확정

③ 시·도는 집행잔액 등 반납

Ⅲ 평가 및 환류

가. 보 고

① 사업 수요조사결과 제출(6월 10일까지)

②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과 서면으로 보고(11월 말까지)

③ 직불금 지급액 결정내역 Agrix시스템으로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③ 시·도(시·군)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12월 말까지

나. 환 류

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마을)은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②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table>
<tr><td rowspan="2">1. 대상지역</td><td colspan="3" rowspan="2">도 시·군 읍·면</td><td>리</td><td>법정리명</td></tr>
<tr><td>리</td><td>행정리명</td></tr>
<tr><td rowspan="3">2. 지역현황</td><td>가구수</td><td colspan="4">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td></tr>
<tr><td>인구수</td><td colspan="4">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td></tr>
<tr><td>경관작물
재배면적</td><td colspan="4">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td></tr>
<tr><td rowspan="2">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td><td colspan="2">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td><td>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td><td colspan="2">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4. 경관작물
식재계획</td><td colspan="2">경관작물명</td><td>식재면적</td><td colspan="2">식재시기(파종~수확)</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계</td><td>㎡</td><td colspan="2">~</td></tr>
<tr><td>5.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연계계획</td><td colspan="5"></td></tr>
<tr><td>6.특이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td></tr>
</table>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성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지목 및 면적(㎡)					경관작물별 식재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개인)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및 면적(㎡)				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				⑤재배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란은 경관작물명과 식재면적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 (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시·군·구>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집단화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10점 5점 1점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20점 1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35%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35% 미만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사업제외 -20점 -10점

[별지 제6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기준에 의함

4.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① 휴경, ② 폐경, ③ 미재배, ④ 비대상작물, ⑤ 중복신청, ⑥ 실경작아님,

⑦ 자진취소, ⑧ 기타

※ “불일치 사유”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 1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사업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시·군	읍·면	리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소계	국고	지방비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관련 프로그램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 당	계 장	과 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교부액(천원)	사업지구수			지급농가수(호)			지급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합계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9 농기계임대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대체	예산 (백만원)	35,625
사업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시군구 임대사업소 설치 개소당 10억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 내외(국고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800~1,6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70~14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200백만원(사업비)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50~3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4,000	58,000	84,000	71,250
국 고		27,000	29,000	42,000	35,625
지방비		27,000	29,000	42,000	35,625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소계	42,000	32,000	24,000	24,000
	국고	21,000	16,000	12,000	12,000
	지방비	21,000	16,000	12,000	12,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소계	6,000	6,000	6,000	6,000
	국고	3,000	3,000	3,000	3,000
	지방비	3,000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소계	4,000	10,000	44,000	33,250
	국고	2,000	5,000	22,000	16,625
	지방비	2,000	5,000	22,000	16,625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소계	2,000	10,000	10,000	8,000
	국고	1,000	5,000	5,000	4,000
	지방비	1,000	5,000	5,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친환경농업과 등	서기관 최승묵 농기계담당자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또한,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4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24,000백만원(국고 12,000백만원, 지방비 12,000백만원)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은 ‘19년부터 지원불가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여성농업인을 우대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단,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년)를 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편이장비 구입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휴대용자동전동가위

* 농작업용편의의자 : 국가공인기시험기관에서 농작업용 의자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착탈이 편리하고 이동시 의자가 둔부에 고정되는 “농작업용편의의자”로써,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한 특허등록된 조달청(벤처나라 등)제품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70~14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③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및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야 함)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함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166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33,250백만원(국고 16,625백만원, 지방비 16,625백만원)

④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20년 지원대상 시·군·구는 '19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며, '20년 평가결과는 '21년도 사업에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4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150백만원~300백만원/개소

* '20년도에 지원하는 시·군·구는 '19년도 지원받은 시·군·구를 제외하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9년도의 "C"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8,000백만원(국고 4,000백만원, 지방비 4,00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업 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 첨부 여부,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21년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군·구는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수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 금지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Ⅲ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0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20. 2. 28.까지

○ 가내시 통보 : 2020. 9. 30.까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20. 12.까지 제출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 기타사항은 '20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기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 위</td><td>성 명</td><td>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업구분</td><td rowspan="2">▪ 임대사업소 (신규, 분점, 증설)
▪ 주산지일관기계화 ( )
▪ 여성친화형농기계 ( )</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업내용</td><td colspan="3">시설·장비</td><td colspan="2">소요예산(백만원)</td></tr>
<tr><td colspan="3">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보관창고 설치 :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관리장비 구입 : 종 대</td><td colspan="2"></td></tr>
<tr><td>전담인력
확보내용</td><td colspan="2">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td><td>조 례
제정여부</td><td colspan="2">제정( ), 미제정( )</td></tr>
<tr><td colspan="3">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td><td colspan="3">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td></tr>
</table>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 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 대수 (대)	이용 농가수 (명)	연간 임대 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 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 ○ ○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 사본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40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312,989
사업목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이차보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금융부	허정은 사무관 김종욱 팀장	044-201-1752 02-2080-7590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정순일	044-201-1831 044-201-183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과 장 이경로	02-2080-7561 02-2080-7558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840, 184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유재형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32, 153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홍근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임지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성구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2337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손경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4, 223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창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20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1,420,000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구분	세부 지원요건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구분	세부 지원요건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3. 대출방법

○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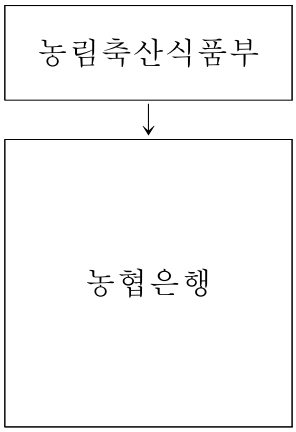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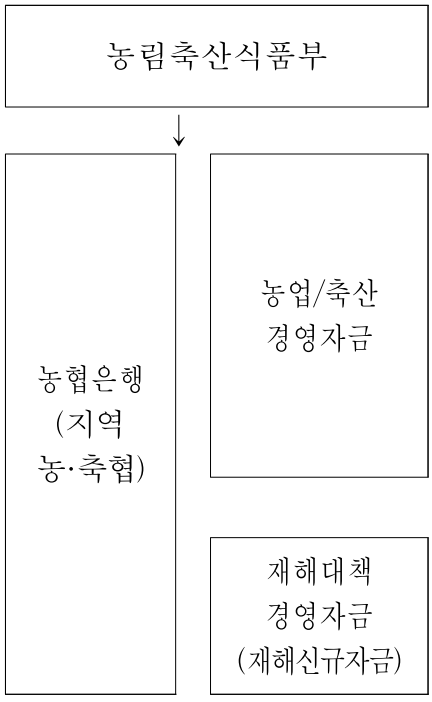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❷-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마.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❷-2.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윤원습 서기관 김정락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차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라. 기술창업·벤처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박상호 사무관 김범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팀 장 정형민 연구원 김보경	063-919-1330 063-919-133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❷-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경선	02-2080-7590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사무관 이창호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❷-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신재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융자(농협자금)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 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융자금의 회수

- 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2019.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2-라.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

1.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2)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2. 지원요건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확인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확인서”를 받아야함**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 평가비의 50%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 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다.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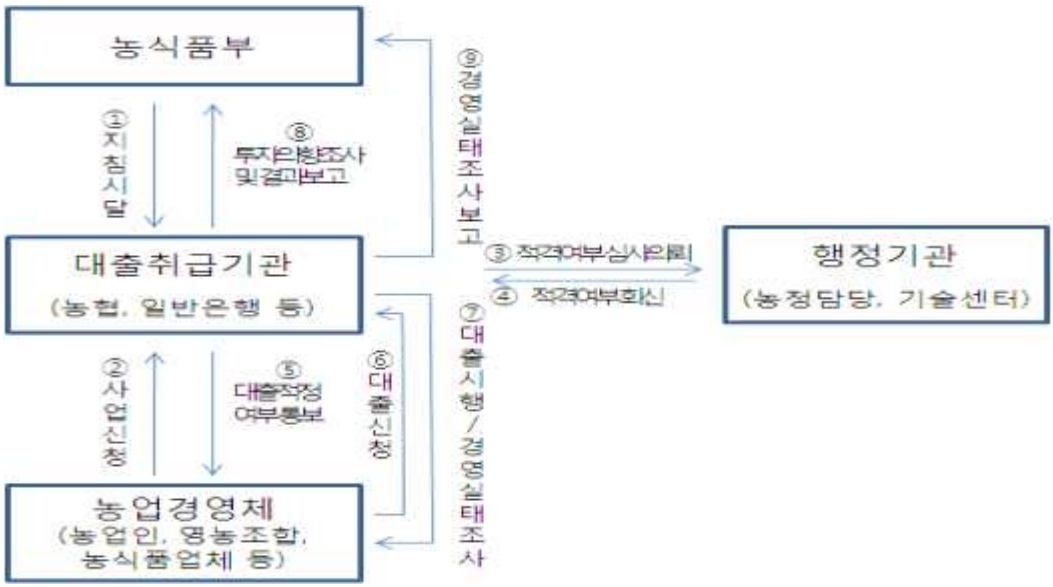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주무관 위철승	044-201-1838 044-201-1839
	농협경제지주 RPC 관련 협회	양곡부 (사)한국RPC협회 (사)전국RPC연합회 (사)대한곡물협회	차장 박은지 전무 서용류 전무 윤명중 부장 최용수	02-2080-6305 031-423-0872 044-866-4204 042-826-9458

Ⅰ 사업개요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2. 근거법령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 융 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비 농협조직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붙임 1) 참고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벼 확보(계약재배, 매입(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 및 수탁, 계약재배 관련 자금(계약금, 중도금, 선금, 잔금)

*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원자금은 상기 농가벼 확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타용도 사용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타 제재 등 부과)

(타 용도 사용 예시) 타 대출금 상환, 외상 매입금·매출금 상환, 시설·설비 개보수, 장비 구입, 인건비, 공과금, 부동산 및 주식·채권 투자 등

4. 지원형태

○ 재원 : 시중은행 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

○ 지원기준 :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계약재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지원규모 : 연간 1조 2천 308억원 내외

○ 지원형태(사업의무량 150% 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150% 기준 : 지원액 100% + 자부담 25% + 자금 회전 25%(수확기에 확보한 벼를 판매 후 추가 확보)

○ 지원조건 : 연리 0~2%, 10개월 이내 일시 상환

* 금리는 매년 기여도평가 및 계약재배실적, 원물확보대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은 매년 9월 1일 기준 실행, 상환은 익년도 6월 30일 기준 상환(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통합·연합RPC는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방안(붙임 2)"에 따라 우대자금(무이자) 지원

* 민간RPC 중 생산자단체로 전환한 RPC는 우대자금(3년간 지원자금 중 최대 25억을 무이자로 전환 또는 추가 지원 등) 지원

* 사업참여 농가 등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선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금지

* 원물확보대행 자금에 부과된 금리는 원물확보대행 요청 RPC가 부담하여야 함(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최소 13억원 이상 최대 250억원 이내

<등급별 최대 지원금액>

(단위 : 억원)

등급	A	B	C	D	E	F
금액	250	200	150	100	50	25

* 다만, 비 생산자단체 최대 지원한도는 130억원 이내('20년은 100억원, '21년은 50억원, '22년부터 20억원)

* 통합RPC 우대자금은 당초 지원기간동안 지원한도액에 관계없이 지원 예정

*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식품부 고시) 적용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지원 신청범위

- 최대 신청한도 :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량의 80% 이내 신청

- 최소 신청한도 : 통합·연합RPC 35억원 이상, 일반RPC 13억원 이상

* 최소 신청한도는 매년 일반RPC는 3억원(통합·연합RPC는 5억원)씩 상향하여 '22년부터는 20억원(통합·연합RPC는 50억원) 이상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0% 이상 농가벼 매입

* 통합RPC는 '20년은 130%, '21년은 14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기존 통합RPC 우대자금은 '20년은 110%, '21년은 13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수확기는 당해연도 9.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되, 작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자금은 당해연도 배정 금액 기준(연장 후 반납액 및 미 대출액, 중도 상환액 포함)

○ 사업실적 불인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 지원 타 사업자금에서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 집행실적(중복 불인정)

7. 제재 및 감경 기준

○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담 등 조치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지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의무량 150% 기준),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차기 지원시 2년간 0.5%p 추가금리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차기 지원시 차감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 적용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이차

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RPC 이행조건(통합법인 출범 또는 잉여가공시설 폐쇄 등) 미 이행시에는 일반RPC로 전환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지원자금 미대출시 미대출금액을 차기 자금 지원시 차감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기타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 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준용

○ 제재 감경기준

- 지원대상 업체 소재 시·군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사업지역 면적의 30% 이상 피해 발생) 및 화재 등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 이상 피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자금의 100%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을 회수(정책자금 연체금리는 적용하지 않음)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 필요

- 업체별 평균 매입량(최근 5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한 경우에는 미이행금액은 회수(연체금리 적용)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 감경

  가. 매입량 12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0.5%p 상향 적용

  나. 매입량 10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최고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정부지원 RPC 심사 기준(붙임 1)에 따라 신규 진입 및 제외 평가를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4.30.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5.31까지)

3. 자금배정 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배정 기준을 aT에 통보

○ aT는 배정기준을 근거로 업체별 자금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5.31.까지)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6. 법규 위반자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배정

○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자금 배정(6.30까지)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자금 대출신청 및 실행

○ 자금배정 권한 : RPC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부족한 대출담보능력 상쇄, 안정적 원물확보 기반 확대 등을 위하여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붙임 3 참조)

-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는 1개의 RPC와 원물확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시행단계

○ 대출기간 : 익년도 6월 30일까지(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평가, 전년도 계약재배, 수확기 실적, 논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실적 등 정책사업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자금 연장 가능

○ 대출시기 : 매년 9월 1일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용계좌(계정)를 개설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용계좌(계정)를 통하여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등을 하여야 함

* 농식품부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배정금액은 전액 환수 후 연장여부 또는 재배정 실시

* 연장은 대출예정은행의 대출가능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배정은 "II.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대출 가능 RPC에게 우선 배정하여 수확기에 대출이 실행되어 농가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매년 연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농식품부의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 '18.12월 기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19년 수확기부터 현금 지급 거래 불인정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RPC 협회 등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RPC는 벼 수확기 이전에 호퍼스케일(수분 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 등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급적 전문대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받아야 함

- RPC 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설능력(건조 저장 가공)을 정기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시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 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 및 aT로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 RPC 협회에서는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 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 등 벼 매입자금 사용 실적 및 용도외 사용 등을 조사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 점검 실시(붙임 4, 5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원료벼 매입실적(붙임 9)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원료벼 매입량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검증 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 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붙임 6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RPC 시설능력 현지조사표(붙임 10, 11)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RPC 시설능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위반업체의 대표 및 소속 협회는 위반행위 발생 및 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속 협회를 통해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을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 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 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 승계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에는 제외

○ 기존 정부지원 RPC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전(양곡가공업 승계 이전) aT에 최근 2년간 운영상황 등을 제출하여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붙임 1)”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 확인사항 : 시설 부지 양도, 운영자금 확보, 고용승계, 주요거래처 유지여부 등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6.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재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제재기준이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제재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가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벼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제재기준을 적용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및 "Ⅱ. 주요 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관련 법규위반	① 금고형 이상 벌칙에 처한 경우	2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3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3년간 2.0% 추가금리 적용
	② 벌금형 벌칙에 처한 경우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2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3년간 1.5% 추가금리 적용
	③ 선고유예·기소유예 벌칙에 처한 경우	1년간 0.3% 추가금리 적용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2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④ 과태료 처분	경고	1년간 0.3% 추가금리 적용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나.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과 관련한 벌칙에 처한 경우		3년간 1.5% 추가금리 적용	5년간 2.0% 추가금리 적용	-

* 기타 양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

* 추가금리 적용에 따른 최종 적용 금리한도는 정책자금(금융자금) 기본금리('20년은 3.32%) 내로 제한하여 적용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함 (예시 :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0.3% 추가금리 적용)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중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위반인 경우는 대출금 회수 및 농협은행의 연체 대출금리 적용 조치하고,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령의 위반건(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위반 포함)에 대해선 다음 자금 지원시기부터 "② 개별기준" 적용 조치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Ⅳ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익년 2월말까지)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한 RPC는 정부지원(시설 및 매입자금 등)을 우대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우대 조치

-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7)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붙임 8)를 발급할 수 있음.

3. 2020년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계획

○ 평가기관 : aT(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aT, 지자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전년도 12.5.까지)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 aT는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5.15.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 확정(6.30까지)

<붙임 1>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에 한함) 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 중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단, 부도 RPC 인수업체의 경우 정상 운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18년 신청분부터 적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음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 명의로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미만 운영

② 법규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세부 조사방법은 붙임 6 참고)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품질검사 시스템 : 원료 벼 반입 시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양곡을 외부 자연환경 및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기밀성 확보)
* 바닥, 벽체 및 지붕 등이 방수가 되어야 함
* 환기시설(벤틸레이터 또는 강제 환풍기)은 창고별로 2개 이상(방충문 또는 방충망 설치)
* 지붕 슬레이트 또는 석면 마감재가 창고 내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가공능력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계약기준((1) 도정기계, (2) 공장시설·환경기준, (3) 위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요 기준 : 석발기 2대 이상, 정미기 2대 이상, 색채 선별기 2.5톤/시간당 이상, 생산능력 2.5톤/시간당 이상, 자동계량기, 금속검출기 등

○ 기타 : 본 시설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 체결요령의 계약기준을 준용함

나. 운영기준(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4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최소 벼 매입량(5천톤) 및 최소 가공율(50%), 도정수율(72%), 쌀 평균가격(2,400원) 등 감안

○ 취급물량(① ~ ⑤ 동시 충족 조건)

① 벼 5,000톤 이상 매입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벼 매입량 3,000톤 이상(미만)으로 운영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자격(RPC 1만톤, DSC 3천톤) 기준 감안
* 벼 생산량이 1만톤이 안되는 지역의 경우엔 해당 시군 생산량의 50% 이상 매입시 예외 인정 (타항목도 동일 적용)

② 쌀 3,200톤 이상 판매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평균 도정수율(72%)과 가공율(90%) 감안

③ 수확기 벼 4,000톤 이상 매입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연간 벼 매입량 대비 수확기 벼 매입량이 평균 80% 내외임을 감안

④ 원료벼 계약재배 1,000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평균 계약재배 확보량 50% 내외 수준 감안하여 매년 500톤씩 상향 예정

⑤ 매입량 대비 가공율이 50%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연간 벼 확보량 대비 쌀 판매물량이 90% 수준 감안

○ 당해연도 운영자금 : 자부담금 이상 확보(최소 2.5억원 이상)

* 운영자금(운전자금 또는 경영자금) : 유동부채 총액 - 유동자산 총액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자부담(20%) 체계 전환과 최소 신청액 10억원(자부담 2.5억원) 감안

○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 F등급 중 15점 이상 업체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F등급 RPC 등 적용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벼 재배면적 : 1,500ha 이상 확보(최신 시군 행정통계 자료 활용)

* 단, 친환경, 특수미 전용 RPC는 인증단지 등과의 계약재배면적으로 적용(연접 시·군 포함)

- 통합 RPC의 위성DSC 및 개별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다만, '17년 이전에 설치·가동 중인 도정업체 중 시설 및 운영실적이 심사기준 이상 충족하고, RPC당 벼 재배면적이 1,500ha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 허용

* 문1) A군 벼 재배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4개소와 정부지원 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10,000ha - [(4개소 × 1,500ha) + (2개소 × 1,000ha)] = 2,000ha

⇒ RPC 1개소 또는 DSC 2개소 가능

* 문2) B군 벼 재배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5개소이며, RPC 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정부지원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 10,000ha - [(4개소 × 1,500ha) + (2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0ha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문3) C군 벼 재배면적 3,400ha이고, 정부지원 RPC 1개소와 정부지원 DSC 1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3,400ha - [(1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900ha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벼 재배면적은 최신 시군 행정통계 자료 기준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① 시설기준 미달 RPC(당해년도 시설능력 조사결과 기준)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18년도 사업시행지침 적용(1년만 유예)

② 운영기준 미달 RPC(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기준)

③ 기타

- 쌀산업기여도 평가 미 신청
-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 통합탈퇴 RPC
- 해산된 통합 RPC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등
- 통합RPC 지원 조건 미 충족자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RPC 제외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음

※ 위 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시·군의 모든 RPC가 제외기준 해당시 1년간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정부지원RPC 제외시 1년간 유예기간 적용(벼 매입자금 지원하되, 최고 금리 적용)

<붙임 2>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통합 및 연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 및 연합 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보급종 우선배정 등

○ 단기간 내에 통합이 어려운 경우 연합RPC로 일정기간 운영 후 통합으로 전환할 경우 벼 매입자금 및 시설개보수 우대지원

- 연합RPC는 3년간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연합RPC 운영 후 취급기준(벼 10천톤 매입, 쌀 7.5천톤 판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개보수 조건부 지원(5년 이내 충족)

  * 단,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되고, "Ⅱ. 주요내용 중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및 연합 RPC 참여업체가 탈퇴(해산 포함)시 탈퇴 및 해산업체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해산 포함)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및 해산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2년차 이상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간주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 RPC 이사회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참여농협 등에서 지급)

○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지자체 등)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 및 연합 모델 제시,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① 2개 이상 농협RPC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후 통합·운영하는 경우

②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50% 이상이 참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③ 농협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간 합병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

① 농협RPC와 민간RPC간 별도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농협RPC와 민간RPC간 자산인수(DSC, 비RP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 또는 농협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④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민간DSC 또는 농협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① 2개 이상 민간RPC가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④ 2개 이상 민간RPC가 백미 전용 도정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⑤ 민간RPC가 민간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Ⅳ유형(광역)

①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운영하는 경우

② 1개의 RPC가 2개 이상의 타 시·군 DSC·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연합 I유형(농협 + 농협)

- (농촌연합형)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이 모두 참여하여 연합·운영하는 경우

○ 공통 기준

- 통합 및 연합 대상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이어야 함

- 통합 인정 후 도정시설은 1개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 다만, 주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인정 가능

- 통합RPC로 인정받은 경우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RPC에 참여하는 DSC(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계약체결)는 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 1개 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취급량의 80% 또는 최소 3천톤 이상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불인정 및 제외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통합 또는 연합 RPC를 구성한 경우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 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
- 통합계획(통합법인 출범, 잉여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원료벼 확보 및 마케팅창구 단일화 등)을 미 이행한 경우
- 통합 및 연합에서 탈퇴한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해산된 통합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통합 및 연합 인정 절차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연합 I유형 : 주관 농협 → 농협중앙회(경제지주)(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과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 희망 농협 또는 업체 → 시·군(검토의견 첨부) → 시·도(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Ⅳ유형(광역) : 농협간의 통합은 I유형 적용, 민간이 포함된 통합은 Ⅱ유형 적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평가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 평가방법 :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시 별도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일반RPC 전환,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우대자금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간 : 통합 5년, 연합 3년

  * 연합 후 통합시에는 6년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및 연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동일 시·군 지역통합>

(A)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 × 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B) 2개 RPC 통합 : (10억원 × 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C)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 RPC수) + (2억원 × 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D)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RPC수) + (2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E)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 × RPC수) + (2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F)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통합RPC수) + (30억원 × 일반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연합유형>

(G) (A)타입 적용

<통합 유형별 지원타입>

○ 통합Ⅰ-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Ⅰ-② : A타입

○ 통합Ⅰ-③ : A타입

○ 통합Ⅱ-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Ⅱ-② : B 또는 C타입

○ 통합Ⅱ-③ : A타입

○ 통합Ⅱ-④ : A타입

○ 통합Ⅲ-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Ⅲ-② : A타입

○ 통합Ⅲ-③ : C타입

○ 통합Ⅲ-④ : B타입

○ 통합Ⅲ-⑤ : A타입

○ 통합Ⅳ-① : D 또는 E 또는 F 타입

○ 통합Ⅳ-② : F 타입

○ 연합Ⅰ-① : G타입(A타입)

○ 연합Ⅰ-② : A타입

<붙임 3>

원물확보 대행사업

○ 민간RPC가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을 대행업체에 배정

○ 소속 협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 승인 후 대행업체에서 자금 대출(부과된 금리는 RPC에서 부담 원칙, 추후 수수료로 정산하여야 함)

○ 대행업체에서는 대출받은 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대행업체의 물량확보 방식(계약재배, 수탁출하, 단순 매입 등)은 자율)

○ RPC에서 요청할 경우 원료 벼 입고(대행업체에 보관시설이 없어서 수확기에 바로 RPC에 원료벼를 입고하거나, 대금지급이 일정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채권보전방법은 쌍방간 합의 결정)

○ RPC는 원료벼 입고 후 2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 (장기 보유형)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 민간RPC 또는 대행업체는 사업의무량 중 나머지 50% 물량을 상호 협의하여 수확기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장기 회전형) 대행업체는 1차 대금 입금 후 수확기 내에 원물 추가 확보(50%),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붙임 4>

수탁사업 시행요령

○ 계약체결

- 사업대상RPC가 수탁희망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 약정 체결하고, 사업대상 RPC는 벼 수탁판매 약정농가 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
- 들녘경영체 등 계열화단지를 중심으로 RPC별로 수탁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실시 후 수탁계약 체결
- 수탁계약은 RPC와 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함(단, 법인화가 안 된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계약에 대한 행정처리는 일괄수행 가능)
- 계약금 및 선도금(우선지급금)은 계약체결 또는 수탁물량 인수도시 RPC가 농가 또는 법인에 지급하되 지급비율(50% 미만)은 농가 등과 자율적으로 결정
- 선도금의 기준가격은 해당 RPC에서 동일품종 매입가격으로 결정
- 계약금 및 선도금의 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현금 지급 불인정)

* 계약금과 선도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 가능

○ 수탁물량 인수도

- 수탁사업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수탁약정 물량을 RPC에 판매위탁하고 RPC는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 수탁보관증은 약정농가와 RPC가 상호날인하여 농가와 RPC가 각각 보관
- RPC 책임하에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부터 판매시까지 수탁물량을 안전하게 보관
- 수탁물량 보관 중 도난, 변질, 부패, 침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RPC가 부담

○ 판매 및 정산

- 최종정산은 공동계산방식으로 정산(투기를 조장하고 상생 취지를 훼손하는 개별정산은 불인정)
- 판매 후 수탁판매 대금에서 선도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통장으로 지급

* 공동정산 : 판매 완료 후 또는 기간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하는 조건 만족시에만 인정)

* 개별정산 :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당시의 시가로 정산

- 수수료는 RPC가 농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약정농가에 사전 고지 후 사업 추진

○ 수탁협의회 구성

- RPC는 수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선도금 지급비율, 수수료율, 판매 및 정산기준 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가대표(단지대표 등), RPC, 농협, 농관원, 시군 등이 참여한 수탁협의회를 구성 운영

<붙임 5>

RPC 벼 매입실적 조사 방법

1. 목적

○ 정부지원 RPC에 지원하고 있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매입 실적을 현장 확인하여 정책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조사대상 업체 : 201개소

○ '19년에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RPC 및 신규진입 신청예정자

- RPC 201개소(농협 135, 민간 66)

3. 조사대상 물량

○ 기간('19.1.1~ '20.1.31) 중에 RPC가 실제 매입하여 농관원에 제출할 자료

- 금회조사는 '19.1.1~12.31까지(12개월분)와 '20.1.1~1.31(1개월분) 매입실적을 각각 조사함

4. 조사 항목

○ 공공비축매입(산물), 계약재배매입(매취·수탁), 일반매입(매취·수탁), 공매, 수확기 자체매입(물량·매입단가), 야적물량, 수탁지급 대행실적

- 조사 항목별 매입단가가 각기 다를 경우 항목별 총 매입금액을 항목별 총 매입물량으로 나눠 산출

* 매입단가 = 매입금액(천원)/매입량(톤)×40kg

5. 조사 요령

○ 공공비축용 정부 산물수매 조사시 매입단가('18년 산물벼 단가 적용)

* 포대벼 포장 제비용을 제외한 상기 금액으로 매입금액 산정

- 총물량은 톤으로 기재하고, 단가는 40kg/대 평균가격을 기재

○ 계약재배 : 재배품종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RPC로 출하되어 구분 보관하는 물량만 인정

○ 수탁매입 : 농가와 RPC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선도급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 결정하며,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만 수탁

매입으로 인정

* 수탁가격 : 해당 RPC의 동일 품종 실제 매입가격(농가와 RPC간 합의 결정)

- 특별한 사유없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확인

○ 수확기 매입 : ‘19년산 신곡만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19.9.1~’20.1.31)

* ‘19.8월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9년산 신곡이 확인될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

* ‘19.9월 이후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9년산 신곡이 아닐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미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 : ‘19년산 신곡만 사업의무량 매입으로 인정(수확기 매입 + ’20.1월 중 매입량)

* 세부기준은 수확기 매입기준과 동일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실적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이 소재한 사무소에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을 신청한 RPC에 대하여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를 확인하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을 조사(수탁물량도 확인)후 RPC가 소재한 사무소 및 해당지원에 조사결과를 공문 통보

6. 확인 내용

○ RPC가 매입한 벼 확보 실적과 비교하여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

- 관련 장부, 농가통장 입금 자료(통장 미 입금시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 (참고) ‘19년도 수확기부터 현금거래 실적은 불인정 예정

- 현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비교 검토

○ 수탁물량 확인, 허위여부 점검

- 벼 수탁판매약정 농가 관리대장 및 수탁계약서

* 수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탁 미 인정(매입(매취)로 인정)

- 농가 수탁판매약정 체결 서류

- 선도금 지급 서류, 농가 수탁보관 발급 서류(농가 수탁증 등)

- 벼 수탁보관 정산 서류(수수료 포함)

- RPC별 수탁물량 확인(창고 등)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에서 확인)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 미 인정)

- 실제 RPC 입고물량(창고 등)

7. 인정범위

○ 원료 벼 매입관리 대장(서식1)에 작성 된 매입실적을 인정

○ 자체매입 실적은 연산구분 없이 모두 인정

○ 수확기 자체 매입량은 '19년산 신곡만 인정(구곡 미 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도 '19년산 신곡만 인정

○ 공매는 연산구분 없이 인정(자체매입에 미포함, 합계에만 포함)

○ 순수한 벼(메벼・찰벼・특수벼) 매입만 실적으로 인정(쌀, 보리, 잡곡은 미인정)

- 단,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상 벼를 쌀로 가공・판매 후 정산하는 쌀 수탁은 인정(벼로 환산해서 실적 인정, 쌀 매입량 ÷ 0.72)

○ 농가벼를 직접 매입한 경우와 비RPC농협에서 매입한 경우만 인정

- 비RPC농협 : RPC를 운영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 자도·타도간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 조곡상 거래는 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시에만 인정

- RPC간 거래는 미 인정(단,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실적도 조사

- 통합RPC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경우 통합RPC 실적으로 인정(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격, 물량 등을 명시하고 통합RPC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의결서 또는 증빙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통합RPC의 참여농협 현황은 붙임의 '통합RPC 현황'을 참조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확인시 농관원은 RPC와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간 체결 계약서를 확인 후 벼가 보관된 장소 파악(농협, RPC)

- 계약서가 없으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미 인정
- 계약서가 있으나 벼가 농가에 있으면 미 인정
- 계약서가 있고, 농협 또는 RPC에 벼 보관(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
- 수탁인정 조건에 해당되나 선도금 금액이 아닌 최종 정산가격으로 농협이 농가에 지급시에는 농협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농협이 우선 모든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차후 RPC에서 차액을 받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농협이 선도금, RPC가 선도금의 차액을 지불한 경우가 원칙적인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에 해당함

<용어정의>

1) 수탁 : RPC가 농가로부터 벼 값의 일부(농가와 협의결정)를 지급하고 매입·보관하고 시세에 맞춰 판매함으로써 보관, 가공 등 제반 비용의 차액을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 조건)하고 수익의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 제도(농가는 판로확보가 가능, RPC는 벼 가격의 일부 금액으로 많은 양의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관·관리를 맡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이 가능)

   * 선도금을 주지 않고 RPC가 판매 후 정산한 것도 수탁에 해당함

   * '18년 실적('19년초 조사 시)에 한해 개별정산(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

2) 매입(매취) : RPC가 농가로부터 매입당시 시세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하는 제도(모든 수익은 RPC 소유)

3)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 값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판매 후 정산시 나머지 금액 지급)

8. 기타

○ 조사 업체에서 자료 제출거부 또는 자료 미비치 등 확인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사유기재

- 기타 조사관련 의문사항은 농관원 본원 품질검사과(054-429-4114)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로 문의

*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조사는 지양(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 영업상 답변이 곤란한 사적 질문 및 조사내용 누설 금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태도를 지양하고 친절히 응대

9. 행정사항

○ RPC(DSC) 원료벼 매입 실적 확인 및 수탁대행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 20(목)까지

- 지원 → 본원 : 2. 25(화)까지

* 지원에서는 검토 철저 : 매입가격이 고가인 경우, 매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톤 → Kg 환산여부 등) 등

- 본원 → 농식품부 : 2. 28(금)까지

<매입량 조사 예시>

<예시1> 통합RPC 참여농협이 통합RPC와 무관하게 벼 매입 후 통합RPC에 인도한 경우(이사회 의결이 없는 경우)

⇒ 참여농협이 매입한 실적은 통합RPC 실적에서 제외

<예시2> 수탁선도금을 주지 않고 농가와 수탁한 경우

⇒ 수탁 계약체결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수탁인정

<예시3> 수탁대행농협과 RPC간 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농협이 수탁대행하였을 경우

⇒ 수탁매입 실적 미 인정

<예시4>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수탁잔금 금액과 다르게 농가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잔금을 농가에 정산해 준 경우만 수탁매입으로 인정, 농협이 별도 정한 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간주

<예시5> 일반매입시 3천톤은 50,000원/40kg으로, 2천톤은 53,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단가

⇒ 매입단가(40kg) : 51,200원 = (3,750백만원+2,650백만원)/5천톤×40kg

* 3,750백만원 = (3,000,000kg ÷ 40kg) × 50,000원

* 2,650백만원 = (2,000,000kg ÷ 40kg) × 53,000원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관련 참고사항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업체가 대출받은 자금보다 적게 매입하거나, RPC로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 Ⅱ. 주요내용, 7. 제재 및 감경 기준 적용(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적용)

- 배정받은 금액은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와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단계와 4. 사업시행단계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요청RPC에 차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업체가 반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

<붙임 6>

RPC 및 DSC 시설능력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출자한 시설도 조사에 포함

❑ 조사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시기 : 매년 2월 20일까지

○ RPC(DSC) 시설능력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 20(목)까지

- 지원 → 본원 : 2. 25(화)까지

- 본원 → 농식품부 : 2. 28(금)까지

2. 조사항목

○ 원료투입구 시설별 보유현황 및 투입능력

○ 건조시설(순환식, 연속식, 사각빈, 사일로)별 보유현황 및 연간 건조능력

○ 저장시설(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별 보유현황 및 연간 저장능력

○ 연간 정곡 가공능력

○ 매입장비(호퍼스케일, 제현율 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

※ RPC 시설 및 장비의 용량 및 규격은 성적서 등에 따른 규격을 인정

* 조사 대상업체는 조사 시작 기준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시설 별 규격서(성적서)를 준비하여 농관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규격서 미비치 업체는 시설능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조사요령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순환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1.7회전(1일)×25일)
  * 건조기준 : 함수율 24%→16%, 시간당 0.8%/hr 건조, 원료투입·배출에 1.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1.7회전 = 20hr / [{(24%-16%)/0.8%}+1.5hr]
- 연속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20시간×25일÷(4회전×0.5시간))
  * 건조기준 : 16%건조를 위해 평균 건조기 4회 통과, 건조기 통과에 0.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저장빈 및 사일로 : 저장능력을 건조능력으로 100% 인정(상온통풍)

○ **저장능력**

- 사각빈 및 사일로 : 설계도 및 기기별 사양 인정(가공시설의 원료탱크와 겸용 사용시 제외)
- 평창고(1,000㎡(300평) 기준)

  (ⅰ)창고높이가 5m 이상 : 3.3㎡(평)당 4톤

  (ⅰ)창고높이가 5m 미만 : 64.6(적재가능면적)×2.3톤(평당 단단 적재량) × 적재단수×91%(이용율)

  * 창고높이가 5m 이상으로 3단 적재 할 경우 저장능력은 평당 약 4톤 수준

○ **가공능력**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근거로 조사

  * 가공능력 산출 : 시간당 가공능력 × 8시간/일 × 250일 기준

  * 도정기계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른 가공능력과 신고증의 가공능력이 다를 경우 변경 신고 후 재조사 실시

○ **색채 선별기**

-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라 색채 선별기 능력을 조사

○ **매입 장비**

- 호퍼스케일, 제현율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을 조사하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 **건조능력 조사 산출 예시**

○ 시설현황 : 순환식 건조기 6톤 4대, 사각빈 50톤 12기, 싸일로(상온통풍) 200톤 3기

⇒ 건조능력 산출 : 2,220톤(㉮+㉯+㉰)

- ㉮ 순환식 건조기 건조능력 : 6톤 × 4대 × 1.7회전 × 25일 = 1,020톤

- ㉯ 사각빈 건조능력(상온통풍) : 50톤 × 12기 = 600톤

- ㉰ 사일로 건조능력(상온통풍) : 200톤 × 3기 = 600톤

❑ **저장능력 조사 산출 예시**

<예시1>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사일로 400톤 3기

⇒ 건조능력 산출 : (50톤 × 12기) + (400톤 × 3기) = 1,800톤

<예시2>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평창고 100평

⇒ 저장능력 산출 : 1,000톤(㉮+㉯)

- ㉮ 사각빈 : 50톤 × 12기 = 600톤

- ㉯ 평창고 : 64.6평 × 2.3톤 × 3단 × 91% ≒ 400톤

<붙임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294호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19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1 농협RPC(135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통합	고성통합	괴산농협	갈산농협	계화농협	강진통합	경주통합	가락농협
	김포통합	김화농협	남보은농협	공주통합	고창통합	곡성농협	남포항농협	거창통합
	대월농협	동송농협	내수농협	금마농협	공덕농협	광주통합	농협양곡(주)	고성통합
	모가농협	동철원농협	농협양곡(주)	당진통합	금만농협	구례통합	안동	김해통합
	부발농협	문막농협	진천지사	당진해나루통합	김제통합	군서농협	다사농협	농소농협
	서화성농협	사천농협	보은농협	대산농협	남원농협	금성농협	동문경농협	두북농협
	송탄농협	양구농협	음성통합	둔포농협	농협양곡(주)	남평농협	상주농협	곤명농협
	안성통합	철원농협	제천농협	보령통합	익산지사	농협양곡(주)	서청도농협	산동농협
	안중농협	횡성통합	증평농협	부여통합	대야농협	무안지사	선산농협	산청농협
	양평농협		청원통합	서산농협	동계농협	다시농협	안계농협	의령농협
	여주통합		충주통합	서천통합	백구농협	수북농협	안정농협	진주통합
	연천농협			세종통합	부안농협	동강농협	예천통합	창녕통합
	용인통합			연무농협	부안중앙	마한농협	의성통합	창원통합
	이천남부통합			영인농협	서김제통합	보성통합	함창농협	하동통합
	이천농협			예산통합	옥구농협	북신안농협	해평농협	함양농협
	장흥농협			운산농협	익산농협	선진농협	홍해농협	합천농협
	조암농협			원북농협	임실통합	순천농협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파주통합 팔탄농협 팽성농협			천안통합 태안농협	장수농협 정읍통합 황등농협 회현농협	영광통합 영암통합 완도농협 장성통합 장흥통합 함평통합 해남옥천 화산농협 황산농협 흥양농협		
계	20	9	10	19	20	26	15	16

2 민간RPC(66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농산 대한농산 독정RPC 미농RPC 미아토 안성곡산 이천농산 협성농산 화성농산	새마을금고 푸른곡산 햇곡원	광복영농 우농RPC	금성농산 대동RPC 대원RPC 새들만RPC 신금산영농 예산RPC 천수만RPC 천안RPC 황산벌RPC 석성농산물	금양머쉬본 남농영농 동진협동 등룡RPC 라이스프라자 명천영농 새만금농산 오성RPC 완주영농 에브라임코리아 이택영농 ㈜삼보 ㈜옥정영농 중신영농 지리산쌀 한결영농	고흥미곡 금호미곡 나주평야동강 대우미곡 무등미곡 수영산업 여주농산 영암미곡 인수영농 조양영농 주영농산	건양RPC 동양미곡 상일RPC 유천RPC 조양곡물 청구RPC 풍년RPC 한가위RPC 한국라이스텍 합동RPC 화원미곡 아자개영농	송림영농 창원청결미 평화영농
계	9	3	2	10	16	11	12	3

<붙임 8>

제 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확인서

업체정보	업체명	*홍 길 동*
	대표자명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양곡가공업 정보	신고번호	*세종-1호*
	신고일자	*2012.12.12.*
	일 가공능력	*40톤*
유효기간		*2020.7.1.~2021.6.31.*

위 업체는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20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붙임 9> 벼 매입실적 관리대장 (RPC명 :)

① 매입일자 (월/일)	② 계약 여부	③ 매입 방법	④ 매입처 (농가,업체명)	⑤생산 년도	⑥수량(kg)	⑦매입가격 (원)	⑧매입단가 **(40kg/원)**	⑨수탁 선도금 (40kg/원)	⑩수탁 정산일	⑪비 고 (계약품종,수탁정산액, 기준가격등)
2018-1-2	*계약*	*매취*	*홍길동*	*2017*	*1,600*	*2,320,000*	*58,000*			*추청벼*
2018-9-15	*계약*	*수탁*	*김철수*	*2018*	*3,210*	*2,006,250*	*25,000*	*25,000*	*2019.2.10*	*오대벼 정산액4,843,900원 기준가격60,360원*
2018-9-28	*일반*	*매취*	*부흥농산*	*2017*	*250,000*	*331,200,000*	*52,992*			
2018-10-22	*일반*	*수탁*	*이만기*	*2018*	*2,050*	*1,025,000*	*20,000*	*20,000*	*미정산*	*기준가격 62,000원*

① 벼 매입 일자별 실적을 작성(매입기간: 2018. 1. 1.~2019. 1. 31.까지 실적)

② 계약재배 여부(계약 또는 일반으로 구분)
- 계약재배는 모내기 전 품종명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재배한 벼 매입 실적 임.

③ 매입방법(매취 또는 수탁으로 구분)
- 매취는 매입 당시 거래가격으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한 경우
- 수탁은 벼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쌀(벼)로 판매 후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벼값의 50%이상 지급 시에는 매취로 인정
*** '19년도 벼 매입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붙임 5. "수탁"의 용어 정의 참고)**

④ 매입처: 농가명 또는 비RPC농협 등 벼 매입처 기록

⑤ 생산년도: 매입하는 벼의 재배(수확) 년도 **⑥ 수량**: 매입한 벼를 kg단위로 기록

⑦ 매입 가격: 실제 지급한 벼 매입가격 기록

⑧ 매입 단가: 매입한 벼를 40kg단위로 환산한 가격(녹색부분 자동계산 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⑨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 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값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40kg기준) *벼 값의 50% 이상 지급 시는 수탁이 아니고 매취 임

⑩ 수탁정산일: 쌀(벼)로 판매 후 최종 정산한 일자 기록, 최종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산으로 기록

⑪ 비고란에는 계약재배 품종, 수탁 최종 정산액, 수탁 기준가격(미정산시는 계약서 상 기준가격, 정산 완료시는 최종 정산액을 40kg환산가격)기록

<붙임 10>

업체별 건조능력 조사표(업체명 :)

○ 건조기 시설

순환식 건조기			연속식 건조기			비고
기당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톤)	기당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톤)	
계			계			

○ 저장빈(사각빈) 및 사일로

저장빈			사일로			비고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톤)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톤)	
계			계			

※ 저장빈과 사일로의 건조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저장능력(시트2)자료와 비교 검토.

- 저장능력만 있고 건조능력이 없는 빈과 사일로는 제외하고 조사(저장능력의 수량과 같거나 적어야 함)

○ 건조, 가공능력

건조능력 합계(톤)	가공능력(톤)	가공능력(시간당/톤)

○ 매입장비(단위 : 대, 개)

호퍼 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동력 제현기	원료 투입구

<붙임 11>

업체별 저장능력 조사표(업체명 :)

▣ 저장시설 능력

저장빈(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높이 5M이상 기준)			총 저장 능력 (톤)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 저장빈과 사일로의 저장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건조능력(시트1)자료와 검토.

▣ 저온, 냉각, 단열시설 능력

저온(평창고)			냉각(빈, 사일로)		단열(사일로)		비 고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 저온시설: 평창고중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
※ 냉각시설: 빈, 사일로중 냉각기가 설치되어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동식 냉각기 포함)
※ 단열시설: 사일로중 우레탄 처리된 시설
☞ 냉각시설과 단열시설은 중복 가능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2019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9년도 지침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00	550,000	550,000	550,000
ㅇ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00,000	550,000	550,000	55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1](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2]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기존 별동의 부속 건축물이더라도 개량하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사.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4,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대 2,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6)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로 증빙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4,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 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 (**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사업추진체계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2.1~12.31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 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당해 연도 1.15~2.15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1차 선정(2.28까지), 추가 선정(11.30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기간 : 수시제출(서식2)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완공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 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 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 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연장시는 '21.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20.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1.8.3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5>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농협으로 송부하도록 시·군·구에 요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 희망자(입주예정자)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0.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20.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1.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1.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 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 확인 등 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사본 포함)을 해당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상담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 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 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여부*를 확인

* 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20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재원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7>」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5>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20.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4. 성과측정

가. **'20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86.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0.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나.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다. **(농식품부)** 사업실적·민원 등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6.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 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및 제78조 준수

7. 2021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1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3>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0. 12. 31일까지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hwp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별송)

<서식3>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별송)

<서식4> 다음연도 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xls(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별송)

<서식6>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2월말(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분기별 (시·군·구 → 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 세대주 ( ), 배우자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기타(신규마을/직원용 임대주택)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5.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6>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천원	천원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B,D]) - E * 잔금 대출 = [Min(A,D)×C(⇒[B,D])] - E 천원

<서식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인 과 장 이경로	02-2080-7561 02-2080-7568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	3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 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 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

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 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예시)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td><td>세목</td><td colspan="3">자치단체
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td><td>예산
(백만원)</td><td colspan="3">30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7">○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7">○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7">○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td></tr>
<tr><td>재원구성
(%)</td><td>국고</td><td>40</td><td>지방비</td><td>40</td><td>융자</td><td>-</td><td>자부담</td><td>20</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계획</td><td colspan="7">(단위 : 백만원)
<table>
<tr><td>구 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d>2021년 이후</td></tr>
<tr><td>합 계</td><td>-</td><td>750</td><td>750</td><td>미정</td></tr>
<tr><td>국 고</td><td>-</td><td>300</td><td>300</td><td>미정</td></tr>
<tr><td>지방비</td><td>-</td><td>300</td><td>300</td><td>미정</td></tr>
<tr><td>자부담</td><td>-</td><td>150</td><td>150</td><td>미정</td></tr>
</table></td></tr>
<tr><td colspan="2">담당기관</td><td colspan="2">담당과</td><td>담당자</td><td colspan="3">연락처</td></tr>
<tr><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 colspan="2">재해보험정책과</td><td>강승규
안준영</td><td colspan="3">044-201-1794
044-201-1795</td></tr>
<tr><td>신청시기</td><td colspan="3">사업년도 2월</td><td>사업시행기관</td><td colspan="3">시·도, 시·군·구</td></tr>
<tr><td>관련자료</td><td colspan="7"></td></tr>
</table>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 업 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ⅰ)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ⅱ)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ⅲ)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20년도 500개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구,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전년 12월~1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관내 농업인·농업법인·농협조직(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9년 12월 ~ '20년 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

○ 시장·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에 대해 규정한「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이 처리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지원 대상자 추천	→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 (2월말)		시·도(3. 3)		농식품부(3. 7)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 희망규모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3. 3)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 희망규모를 검토하여 사업 물량을 시·도에 배정(3.7)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후 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사업자(3.15)		시·군 또는 시·도(3.20)		시도→농식품부(3월말)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3.15)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3월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4월~)

○ 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자(연중)		시·군 또는 시·도(연중)		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사후관리단계〉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1월31일) 운영실적 점검
- 점검항목 :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Ⅳ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 과도한 포획 예방

○ 시장·군수는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포획틀은 사업 신청자가 환경부의「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별표1]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제작 하거나 구매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 같은 지침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 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환경부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0. 1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시도(시군구)에 대하여 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ⅱ) 이 사업외 자체사업 실적, ⅲ) 자금집행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

○ 2020년 12월 사업시행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VI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2) → 시장·군수('20.3) → 시·도지사('20.3)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 [별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 별표3 및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td><td>농업경영체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5">*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5">(휴대폰) (자택)</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5">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___명, 참여농가수 ___호, 공동경영면적 ___ha</td></tr>
<tr><td rowspan="5">사 업
예정지</td><td>지 번</td><td>대상면적(㎡)</td><td>작 목</td><td>수령(과수인 경우)</td><td colspan="2">피해면적(㎡)</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3">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td><td colspan="5">대</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사 업 예정지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개소)
	* 포획틀 설치(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0) 5대 설치 → ('21) 5대

[별 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 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정도·서식실태·포획목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가로 680㎜ 이상 x 세로 2200㎜ 이상 x 높이 1030㎜ 이상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앞뒤 각 2개씩의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 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42 친환경농업직불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공익형직불제)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2,832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국고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최기정	044-201-2432 044-201-2433
자치단체	시·군·구 담당과	담당자	

신청시기	정기(~3.31.)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식품부('19.12월)	→	**지자체**('20.1~3월)	→	**친환경농업인**('20.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9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20.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20. 3. 1. ~ 4.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8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2.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농관원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농관원·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농관원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20.3.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3.31.)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5.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 사업대상자 명단을 농관원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5.~11.30.)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소재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농관원(인증기관)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 제대상여 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 · 면 · 동		시 · 군 · 구		시 · 군 · 구 농관원(인증기관)		농식품부 시 · 도		농식품부 시 · 군 · 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 ·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 · 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 · 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 · 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4 국제협력협상

농업분야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		예산 (백만원)	513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민간환경조사 : 해외진출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진출국의 농업 투자환경, 농업 인프라 등에 대한 시장조사,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의 제경비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지원 ○ 컨설팅 : 해외진출 및 정착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을 지원 ○ 해외인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			
지원한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대기업(50%), 중견 및 중소기업(70%) ○ 해외인턴 : 인건비(최대 6개월 이내), 항공로 등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사업	71	355	330	412	451
해외인턴	25	33	61	85	9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국장	오동진 이은수	044-201-2040 031-345-656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관련자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3. 지원내용 및 용도

○ **(민간환경조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이 진출계획 수립을 위해 진출국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구체적인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 조사자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전문가 자문료 등

○ **(컨설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시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지원분야) 각 법률, 사업성분석, 경영자문, 재배, 생산기반, 저장건조, 무역, 유통, 농기계 등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내용) 전문가 컨설팅은 자문료,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컨설팅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비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 인턴사원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지원, 교육지원비

  * 인건비는 최저임금(월 1,796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국내법인 근무 시, 인턴사원에게 해외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국고 50~70%, 자부담 30~50%

- (대기업) 국고 50%, 자부담 50%, (중소·중견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사업비는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시 자부담 집행분을 포함하여 보고

○ **(해외인턴)** 인턴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교육지원비 지원

  * 인건비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영기업이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지원한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대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연도별로 구분하여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집행 및 지원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해외인턴)**

- 지원한도: 사업자별 인턴 최대 2명 이내
- 지원기간: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이내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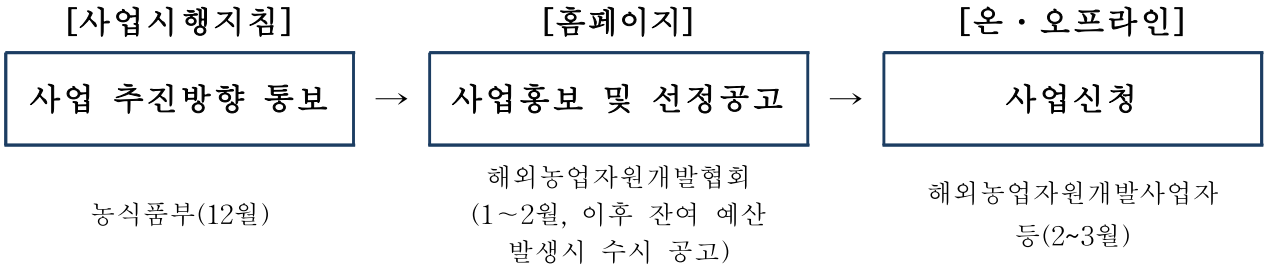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계획을 시달

○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시달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도 12월~금년도 1월중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홈페이지 게재 등)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사업자 선정 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사업시행기관은 지체없이 재공고를 실시(수시)

*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사업 신청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구비서류>

①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 신청서, ②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④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⑤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견, 중소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⑦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⑧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⑨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해외인턴사업 구비서류>

① 해외인턴 참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④ 인턴사원 선발의 공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모집기간, 절차 및 수단, 결과가 명시), ⑤ 인턴사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⑥ 인턴사원 자격증 및 학력 관련 증빙서류, ⑦ 인턴사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⑧ 보호자 동의서(학생일 경우)

* 협회에서 인턴사원 모집 요청 시 ④~⑧ 서류 제출 생략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민간환경조사

[온·오프라인]		[전문가 심사]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면접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를 포함하여 면접심사를 진행

- 면접심사시 사업신청자는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와 지원액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와 민간환경조사사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민간환경조사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1차 서류심사 : 재무건정성, 사업계획(조사적정성, 조사충실성 등) 심사
◇ 2차 면접심사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나. 컨설팅

[온·오프라인]		[평가위원회]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결정 *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지받은 사업대상자는 세부 컨설팅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컨설팅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컨설팅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투자기반 및 환경, 컨설팅 계획, 활용계획

다. 해외인턴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인턴사원 선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지원대상 기업)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턴사원 선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개모집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필요 시 협회는 공개모집 등 선발절차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과 인턴사원 선발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인턴사업 선발결과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자와 해외인턴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해외인턴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 채용연계 가능성, 운영계획(운영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등) 심사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3월)		사업대상자(3~11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연중)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자금집행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 **(보조금 선금 지급)**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 및 협약 등을 체결한 사업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보조금 선금 지급을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지원액의 50%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선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해외인턴)**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사업시행)**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1.30까지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되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장

○ **(협약의 변경)**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의 협약 변경요청시 변경사항이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내용 및 용도 등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

○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필요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집행 확인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등 사업에 대해 현지조사에 동행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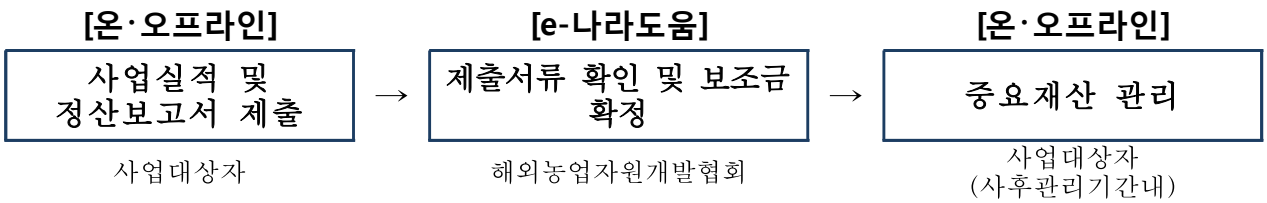

○ **(사업실적보고)**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검수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확정하고 잔금을 지급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서 제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검토 및 잔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사업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비율만큼 자부담이 집행되었는지도 함께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승인 요청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사업대상자가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	
그밖에 계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	

- (해외인턴)

· 사업대상자의 위법·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 인턴사원의 계약 위반 또는, 위법적인 행위로 근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필요 시, 인턴철수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가능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평가 및 검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부진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감액하여 최종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검수를 위해 필요시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결과발표회에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참석시켜 공개 발표회로 개최할 수 있음, 다만 공개 발표회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9.상반기)

○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1월)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20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기타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1 경쟁력 제고

식량분야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RPC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예산 (백만원)	25,08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 시설 설치 및 집진시설 보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공시설현대화)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통합 RPC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집진시설 보강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기준사업비 7억원(저온저장고 3억원, 집진시설 보강 2~5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지원한도	사업비 심의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40	지방비	20~40	융자	-	자부담	20~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7,800	36,390	41,770	63,041
국 고	14,490	14,370	14,340	25,080
지방비	6,780	6,600	8,645	15,826
자부담	16,530	15,420	18,785	22,1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사무관 위철승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미곡부	채종혁 차장 -	061-931-0758 -

신청시기	사업추진연도 전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융자지원 예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6 참고)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농협RPC 통합 추진 방안>

▸ 목표 : (현행) 135개소 → (목표) 120개소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②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③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④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지원 RPC로 한정하여 지원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라. 지원제한 기준

○ 해당 시·군 벼 재배면적*이 RPC 및 DSC 진입기준** 중 지역기준(RPC 1,500ha, DSC 1,000ha)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벼 재배면적은 최근 시·군별 행정통계 기준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 참고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통합RPC에 한해 10억 이상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3억 이상의 소포장 라인 신설 및 증설 지원 허용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군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집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된 연계 시설물의 경우, 5년 이내 폐쇄 및 신축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 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집진시설 설치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30㎎/S㎥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단, 민간RPC 중 신청연도 직전 2개년간 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 A등급 RPC는 통합RPC에 준해 지원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2021년 사업 신청자)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시・군]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RPC 등(2～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 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사업자(신청업체)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학·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현장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 발표평가 >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2020년 사업 대상자)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다.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도에 제출(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다음 연도 초에 시도(시군은 시도에 자료 제출)에서 농식품부에 정산보고시 중요재산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사업완료시 중요재산에 보조금 취득 사업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부착하여야 함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기본규정」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 ~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2월말까지 조사

< 붙 임 1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붙임 2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 colspan="2">업체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
(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조직형태</td><td>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td><td>전년
매출액</td><td>00억원</td><td>계약재배
농가수</td><td>00호</td><td>대표
브랜드</td><td></td></tr>
<tr><td rowspan="6">신청내역</td><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가공시설
현대화</td><td>계(백만원)</td><td colspan="2">국 고</td><td colspan="2">지방비</td><td colspan="2">자 부 담</td></tr>
<tr><td>건조저장
시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별
규모</td><td>가공시설
현대화</td><td colspan="7"></td></tr>
<tr><td>건조저장
시설</td><td colspan="7"></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2개 시·군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톤)		생산비중(%)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도대비

* 최근 3년 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정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해당 시·군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향후 5년)

○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요약해서 기재*

다.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라.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구분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시중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 *야적 현황, 야적벼 가공 및 판매현황, 향후 5년간 저장시설 확충 계획 등*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매입 현황, 향후 5년간 매입물량 확대 계획 등*

○ 수확기 반입예약제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반입예약제 운영 현황, 향후 5년간 확대 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또는 벼 건조저장시설	감리 및 컨설팅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합계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에서 지도, 점검

나.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조건부	o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o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정비법	기 타	조건부	o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o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o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o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o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o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o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o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o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 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o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o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 승인신청”에 의함. o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o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 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o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o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o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o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건축관련] o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o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o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 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소방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벼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2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집진시설 개보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8">신청자</td><td colspan="2">업체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
(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일</td><td colspan="2"></td><td>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조직형태</td><td>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td><td>전년
매출액</td><td>00억원</td><td>계약재배
농가수</td><td>00호</td><td>대표
브랜드</td></tr>
<tr><td rowspan="2">집진
시설
현황</td><td>RPC</td><td colspan="6">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td></tr>
<tr><td>DSC</td><td colspan="6">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td></tr>
<tr><td rowspan="3">신청내역</td><td colspan="2" rowspan="2">사업비</td><td>계(백만원)</td><td>국 고</td><td>지방비</td><td colspan="2">자 부 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업별
규모</td><td colspan="6">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 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

○ 집진시설 설치 현황

설치 위치(용도)	집진기 종류	설치년도	집진휀용량 (㎥/min)	동력(HP)	노후 상태 (기능 저하 내용)
현미부	*싸이클론*	*1998*	*120*	*7.5*	
원료조선기	*백필터*	*2001*			
정미기	*통합집진기*				
왕겨풍구					

* 설치위치 : 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현미.백미석발기, 정미기, 연미기, 원료투입구, 원료조선기, 원료정선부, 건조기 중 해당사항 작성(예시중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별도 입력 가능 단, 이송기기, 탱크류 등 집진시 해당 공정 작성)
* 설치년도 : 수리 또는 교체 등 보수가 이루어진 년도 표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준공년도 표기)

2.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집진시설 개보수 필요성

- 노후도, 집진방식, 민원 발생 등 개보수 필요성 기재

○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기존 집진시설 교체 대상 상세 내역(집진기 개수, 교체 시설, 집진방식 변경 등)

- 개보수 소요기간, 개보수에 따른 기존 시설 가동중단 등 피해 최소화 계획

- 개보수에 따른 개선 효과 등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						
소계						
3. 건조시설						
-						
-						
소계						
4. 저장시설						
-						
-						
소계						
5. 가공시설						
-						
-						
소계						
6. 소방 및 전기공사						
-						
-						
7. 기타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사업추진 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3.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관련 사진(전경사진 및 세부사진), 기존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3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서면&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점)	15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 지역내 식량산업 구조와 사업신청자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 생산구조 발전방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통구조 발전발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식량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 시·군 단위 생산조정제 참여계획 및 목표는 적절한가? - 지역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매우 우수 : 15% 이상, 우수 : 10% 이상, 보통 : 7% 이상, 미흡 : 5% 이상, 매우 미흡 : 5% 미만)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점)	10	○ 고품질 원료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10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10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10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수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0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 실적 및 계획 -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시행 계획 적절성 (20점)	10	<부지선정 적절성>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건축 및 시설 적절성>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R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4. 종합 의견 (10점)	10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와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한가? ○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합 계	100	< 최종점수 산정방법 >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붙 임 4 >

평가위원 평가의견서

□ 평가대상 :　　□ 평가자 :　　(서명)

평가 항목	배점	평가의견	평점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		
3. 시행 계획 적절성	20		
4. 종합 의견	10		
합 계	100		

< 붙 임 5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운영실적	가공시설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벼 건조·저장시설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법인요건 (비 농협조직)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지원 제한 기준 (대부분 '19년 신청부터 적용)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류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 규모	가공시설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이 80% 이상입니까?		
	벼 건조·저장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기존 시설 증축입니까?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단순 개보수입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자부담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비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농협조직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시설 검토	공통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가공시설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벼 건조·저장시설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		
		3. 조감도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5.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6. 법인등기부등본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9. 지적도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14. 최근 5년간 결산재무제표		
	15. 최근 5년간 벼 매입량		
	16. 최근 5년간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19. 기본요건 점검표		
	20.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2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6.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6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I.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쌀 이외 식량작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부재 및 지역 내 적정투자 소요 검토 미흡,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하에서 체계적인 투자 부족

❑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위주로 수립

○ 지자체 주관으로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 그동안 5개 시범지역* 선정 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5개 시범지역(당진, 김제, 익산, 해남, 경주) 선정 후 예시 모델 제시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8.3 ~ 8월

○ 권역별 순회 설명회(3개 권역, 300여명) : '18.9.4 ~ 9.7(3일간)

○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등 안내 : '18.9.11(수)

○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18.11.19(월)

- 개별 시•군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실시 : '18.9월 ~ 11월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실시 : **4회, 42개소 선정**

- ‘18년 종합계획 평가·선정(**5개소***) : ‘18.12월

*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경북) 경주시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0개소***) : ’19.3월

* (경기) 안성시, 파주시, (충남) 홍성군, 공주시, (전북) 김제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고흥군, (경남) 산청군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재평가·선정(**12개소***) : ’19.6월

* (세종) 세종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전북) 군산시, 진안군,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 안동시, (제주) 제주

- ’19년 하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5개소***) : ’19.12월

*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전북) 익산시, 부안군, (전남)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함양군, 창녕군

Ⅱ. 식량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 주요 내용

○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단위 식량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 포함

○ 지역 내 식량산업에 대한 생산 및 유통현황 기초분석, 품목별 생산조정제에 따른 생산계획 등

○ 미곡분야 생산 및 유통 체계화는 거점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계약재배단지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농가조직화 방안, 생산지도 계획, 마케팅 전략,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식량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는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방안, 마케팅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 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제시

❑ 수립절차

❑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 체계

○ **(성격)**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시간적 범위)** 수립 · 승인년도부터 5개년

○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주체)**

- 계획 수립은 지자체·조직이 자율적 수립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품목 : 미곡, 밭작물(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원예작물은 제외

○ **(재정적 범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과대 계획은 지양

○ **(계획 선정·평가)**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및 이행평가 실시

- (심사) 3단계(서면-현장-발표) 나눠서 심사평가 진행
- (승인요건)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승인

○ **(계획의 효력)**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PC 및 DSC,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아래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하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연계 지원사업(안)

사업명	세부사업	연계방식	적용시기	비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2021년	보조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2020년	
	사업다각화	신청자격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RPC 시설현대화	신청자격	2019년	
	DSC 시설지원	신청자격	2019년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가 점	미정	
공공비축미 배정		우선배정(일부)	미정	제도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배정(일부)	미정	
RPC 벼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	2019년	융자
농기계사업		가 점	미정	

○ **(평가환류)** 先 계획 - 後 지원 원칙하에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 점검

- 이행평가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목표조정 및 변경, 보완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이행평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지원 보류

Ⅲ. 선정・평가절차

❑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실시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

❑ 단계별 평가절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농식품부 또는 aT, 외부평가위원		내·외부 평가위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1단계 : 서면평가(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평가 1회 면제

❑ 2단계 현장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현장평가 1회 면제

❑ 3단계 발표평가(현장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선정

< 참고 1 > 목표 지표(안)

○ 공통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들녘경영체 재배면적(비중)	
		계약재배(약정출하) 면적(비중)	
		공동영농 면적(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각 항목별 제시
	적정・고품질 생산	쌀 생산조정 면적(비중)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비중)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비중)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 용량(비중)	상온, 저온 구분
		관내 RPC 수	통합 등
		RPC 취급량 대비 공동(대표) 브랜드 출하량(비중)	
밭작물	농가조직화	밭작물경영체 재배면적	공동 출하조직
		공동출하실적(매출액)	
	고품질・안전 생산	품목별 생산면적 또는 비중 / 계약재배 면적 또는 비중	
	유통・가공・소비	관내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경유율	품목별 기준 설정
		공동브랜드 판매실적(매출액)	

❍ 자율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수탁사업 면적(비중)	
		대표브랜드 계약재배 면적(비중)	
		· · · · · ·	
	적정・고품질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질소질 비료 저감율	저감 계획
		공동육묘량	
		· · · · · ·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현대화시설 RPC 정곡출하량(비중)	
		고품질쌀완전미 비율	감축 계획
		지역 내 소비량	로컬푸드, 급식 등
		· · · · · ·	
밭작물	농가조직화	공동출하실적(매출액)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작업 기계화율	
		· · · · · ·	
	고품질・안전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 · · · · ·	
	유통・가공・소비	식량작물 전문 유통조직 실적(매출액)	품목별 기준 설정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지역 내 소비량	
		· · · · · ·	

< 참고 2 > 선정지표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사업계획 (25점)	1.1.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10점)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 식량산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점) * 지자체, 거점유통조직, 참여조직, 농가조직 등의 역할분담 체계는 적절한가?(5점)		2~10
	1-2.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2~10
	*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0점) * 지자체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5점)		1~5
2. 실행계획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0점)	2~10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계획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는 적절한가?(5점)	1~5
		적정시설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계획 * RPC 및 DSC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1~5
	2-2.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타작물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 타 작물 전환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지역단위 식량작물의 전략품목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조직화, 이를 위한 생산지도는 적절한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향 * 품목별 대표 유통조직은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계획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산지유통시설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1~5
3. 투자계획 (15점)	3-1.연차별실행계획(5점) * 연차별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한가?(5점)		1~5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10점)		2~10
가점 (10)	GAP,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 * GAP, 친환경 합산 재배면적 비율은 10% 기준으로 2%p 상승시1점씩 부여 (최대 5점)		0~5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조례 등 활성화 노력 * 조례제정시 3점, 기타 노력 2점 (최대 5점)		0~5
합 계			100점(110점)

< 참고 3 > 이행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이행 실적 (25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10점) * 이행실적보고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15점)		3~15
	1-2.자율평가보고서 적절성(10점) * 자율평가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2~10
2. 성과 목표 달성도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이행하였는가?(10점)	2~10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이행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이행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를 이행하였는가?(5점)	1~5
		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2-2. 밭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 선정 *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의 생산계획은 적절하게 추진하였는가?(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지도는 추진하였는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실적은 향상되었는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실적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추진실적은 보유하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3. 연차별 추진성과 (15점)	3-1.연차별 실행관리 방안(5점) * 연차별 사업추진 달성을 위한 실행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5점)		1~5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10점)		2~10
합 계			100점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2,19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0	2,000	3,000	4,380
국 고	1,000	1,000	1,500	2,190
지방비	800	800	1,200	1,752
자부담	200	200	300	43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11,542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000	5,000	13,500	23,084
국 고	3,500	2,500	6,750	11,542
지방비	2,800	2,000	5,400	9,234
자부담	700	500	1,350	2,3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백만원)	6,87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3년, 5~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4,000	17,000	10,918	17,175
국 고	5,600	6,800	4,367	6,870
지방비	5,600	6,800	4,367	6,870
자부담	2,800	3,400	2,184	3,4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규정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기준>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농가수 15명 이상, ‘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30ha 이상이고 최종 5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단지화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3년 신청자부터 적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등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붙임 5 참고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일정비율 및 기간 :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2개소 이내, (시·군) 5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3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1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② (경과규정) ‘19년에 한해 1회 이상 추진한 경우(①항목 충족 조건)도 자격 부여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시설·장비는 '18년 사업자('17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3.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으로 신청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논콩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계획이 있는 경영체 우선 선정

○ '22년까지 단지화가 가능한 경영체는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우선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 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연차평가를 마련·시행하여 2021년도 신청자부터 적용(추후 안내)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추가)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선정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자동선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이행을 위해 콩 등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권고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지원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 농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은 최소화하고, 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과 배수개선 굴착기 지원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티, 소수재(왕겨)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4,302천원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단지화 운영주체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 달성 시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지원)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사업계획 평가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사업다각화에서 시설·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TMR 공장 건립 의무화와 농기계 50% 이하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의무부과

○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 (예시 :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등)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 ~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서약서 제출)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 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확약서 제출)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패널티 :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마.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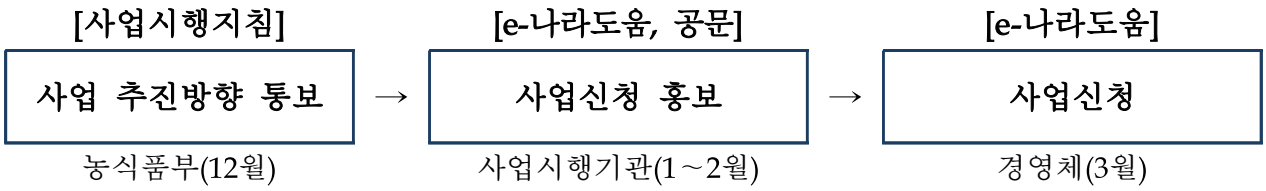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 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출자액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교육 이수·확인증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 내역 등),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등

- (지자체 제출서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현장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 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3명 내외)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시설・장비는 7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시설・장비는 사업물량에 따라 권역별 현장실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 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시설·장비 지원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4～6명 내외 구성)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다각화는 7월초, 시설・장비는 8.31.까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4.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추가 50ha(조사료 100ha)이상 확대

예시)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100ha 이상으로 확대의무 부여

*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서약서 참조)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붙임 확약서 참조)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추가지원 : 논타작물 50ha 확대 조기 달성 시,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농정원은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 향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연차평가를 개발, 개별경영체 지원에 반영(2021년 사업신청자부터 적용)

2. 2021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1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0.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붙 임 1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8년)

등급	2017년 월 임금	2018년 월 일금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방법
리더농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참여농가	2.0hr	외부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농가	4.0hr	외부강사	참여학습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외부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농가	2.0hr	외부강사	참여학습
리더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농가	4.0hr	외부강사	참여학습
계				17.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 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3 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년차 필수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필수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3년차 필수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필수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 붙 임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잡곡 전문은 10ha 또는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식량산업 종합계획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입니까?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		
	정부지원 RPC 연계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10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2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세부 사업별 자격 및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컨설팅을 다른 유사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최근 10년간)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를 최종 지원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하였나요?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X	X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X	X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X	X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X	X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6.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8.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24. 교육 이수·확인증		
	25. 참여농가 명부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35. 표준생산메뉴얼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44. 친환경인증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48.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53.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3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6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1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5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4-2. 자체 평가 (12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3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5. 가점 (6점)		(6)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6.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6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6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지자체 평가	5-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5-2. 자체평가 (16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수립 중(1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현장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현장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지자체 평가 — 4-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10점)
4. 지자체 평가 — 4-2. 자체평가 (14점)	8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수립 중(2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점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시도)		(시군)	
(단지명)		(경영체명)	

입력 기준 : ① ~ ③, ⑥은 '19년도 실적 입력, ⑤-1 ~ ⑤-3는 '22년 계획 입력
⑦은 지정, 미지정으로 입력, ⑧, ⑨는 지자체에서 평가 후 입력

평가지표	배점	관련 실적	평가점수	비고
① 타작물 재배면적(최소 5ha 이상)	1ha당 1점			
② 공동영농면적(최소 10ha 이상)	1ha당 0.5점			
③ 참여 농가수(최소 15명 이상)	1ha당 0.4점			
④ 단지 집적도 (배후단지내타작물재배비율)	10%당 1점			
⑤-1. 향후 확대계획(①타작물) (추가 50ha, 최소 55ha 이상)	1ha당 0.5점			
⑤-2. 향후 확대계획(②공동면적) (추가 50ha, 최소 60ha 이상)	1ha당 0.25점			
⑤-3. 향후 확대계획(③농가수)	1명당 0.2점			
⑤-4. 향후 확대계획(④집적도)	10%당 0.5점			
⑥ 배후단지 규모	1ha당 0.1점			
⑦ 들녘경영체 지정 여부	30			지정은 30점, 미지정은 0점
⑧ 목표 달성 가능성(추가 50ha)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⑨ 성공 가능성(5년간 유지)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합계			172	

< 붙 임 4 >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군·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정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업체별 30개소(통합법인 5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구분	단기('19～'20)	중장기('21～)
① 컨설팅업체·컨설턴트 인증	⇨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	⇨ 재인증제도 준비 등 인증제 고도화
② 사업프로세스 관리 * 수행계획, 중간 및 완료점검 등	⇨ 현장 모니터링(재인증 시 반영, 자격 검증)	⇨ 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 검증 등 품질관리 강화
③ 성과점검·확산 * 종합평가, 피드백 등	⇨ 교육·컨설팅 표준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	⇨ 성과진단·평가 및 환류 등 성과 확산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현장·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① 신규인증: 1차(서면·현장평가) → 2차(발표심사) → 3차(최종인증심의)
②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①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 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④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①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1 신규인증

(1단계) 서면·현장평가	(2단계) 발표심사	(3단계) 최종인증심의
•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정성지표 서면 검증 및 부적격업체 제외 • 서면 적격업체 대상 제출자료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 컨설팅업체별 공개발표 •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CEO 의지, 사업역량 등 종합평가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 인증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농정원·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전문가)**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량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 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심사표 참조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최종 신규 인증 >

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

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

2 재인증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
•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지표 등 검증	⇒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농정원		전문가·농식품부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서류 접수	심사 및 검증	결과 통보
•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접수 • 컨설턴트 검증 신청	• 컨설턴트 검증(서면)	• 선정 및 검증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 컨설팅업체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컨설팅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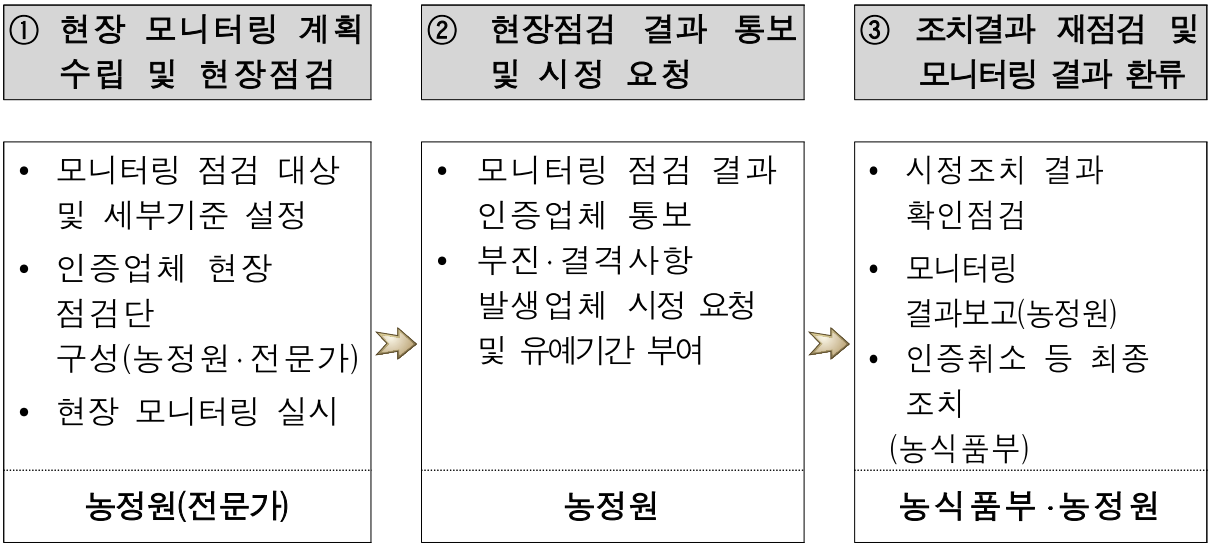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7">신청인</td><td>경영체명</td><td></td><td>설립연도</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명</td><td></td><td rowspan="4">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td><td>총 횟수</td><td>회</td></tr>
<tr><td>연락처</td><td></td><td>총 금액</td><td>백만원</td></tr>
<tr><td>주소</td><td></td><td>지원 내용</td><td></td></tr>
<tr><td>조직형태</td><td colspan="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4">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___명, 참여농가수 ___호, 공동경영면적 ___ha</td></tr>
<tr><td>연계조직</td><td colspan="4">* RPC는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td></tr>
<tr><td rowspan="8">신청내역</td><td colspan="5">(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td></tr>
<tr><td rowspan="2">총사업비</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r>
<tr><td rowspan="2">□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td><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 rowspan="2">□ 시설·장비 지원
(기간 :)</td><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 rowspan="2">□ 사업다각화 지원
(기간 :)</td><td>주요내용</td><td colspan="3">예시) 수제맥주 제조·체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3">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1차 수정 20○○년 ○○월 ○○일

2차 수정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 00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 00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 00

Ⅳ.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00

Ⅴ. 사업비 확보계획 ····· 00

Ⅵ. 기대효과 ····· 00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기본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주요 브랜드	

○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면적(ha)	GAP쌀 인증면적	친환경쌀 인증면적	매입량 (톤)	계약재배 농가수(호)	
					농가조직체수	농가수
전체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사업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해보험 가입 현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체계(조직도)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관리 실태(2020년 3월말 기준)

사무실 존재 여부(여, 부)		현황판 비치 여부(여, 부)	
이사회 등 대표자 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총회 등 참여농업인 전체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회의록 작성 여부(여, 부)		공동영농 작업일지 작성 여부(여, 부)	
회계서류 보관 여부(여, 부)		2017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여, 부)	
RPC 약정 계약서 작성 여부(여, 부)		기술정보 등 교육책자 배부·비치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방법 및 금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8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 교육*			*국가·지자체 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고품질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2019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20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21(계획)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면적

논 면적(A)	이모작 면적(B)	타작물재배면적(C)	비율(%)	
			B/A	C/A
ha	ha	ha		

※ 이모작 재배 현황(2019년 수확 기준)

이모작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하계 타작물 재배 현황(2020년 재배계획 기준)

타작물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19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원/ha), 이앙기(원/ha), 콤바인(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2020년 2월말 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① 사업유무 :
② 경축순환형태 : 면적 ____ha, 농가수 ____호, 생산형태 퇴구비 ____톤, 액비 ____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 공동육묘 운영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____상자, 지게차 ___대, 온탕기 ____대,		
	파종기 ____대, 육묘대 ____층 ____대, ____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____kg/년, 상토량 ____톤/년, 농약 ____원/년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 주변지역 육묘 가격 : ____원/장
* 자재비용 : 종자비____원/년, 상토비____원/년, 인건비____원/년
* 혜택 농가 수 : ____명
* 시군별 지원여부
* 총매출액(A) : 천원 / 총비용(B) : 천원 / 경영이익(A-B) : 천원
* 이익금 처분내용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____ha * ___회, 임대방제면적 ____ha * ___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____ 원/ha, 임대방제단가 ____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트럭____대(____톤)*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 총매출액(A) : 천원 / 총비용(B) : 천원 / 경영이익(A-B) : 천원
* 이익금 처분내용 :
* 방제기 활용계획 : *축산방제, 건축물 폭파,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기타 공동농작업 면적 :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_____ 시간/년, 현장지도 _____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둑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_____ g/상자		
10a당 상자 수	_____ 상자수/10a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침지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성묘*		
이앙시기 및 방법	*적정시기 ____. ____. 적정이앙주수 _____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_____ *본답* _____		
시비관리	*밑거름 ___kg/10a 새끼거름 ___kg/10a 이삭거름 ___kg/10a*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_____ *보완방제* _____		
	병해충자재 종류 _____		
물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떼기*		
수확시기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백사용), 건조수매시 45~50℃(종자용 40℃)*		
볏짚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7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8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ㅇㅇ년도)	지원 후 (20ㅇㅇ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쌀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작업면적,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공동작업별 추진방안 작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2020년 공동영농 작업료 책정 계획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가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 구입방안

- (보조사업)
- (자체구입)

□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부족한 시설의 추가 확보 방안 *(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규모,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공동육묘장

- 현재 보유현황(동, ㎡), 확보계획(년 동,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시설규모 등*

② 건조시설

- 현재 보유현황( ),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 불가)*

③ (기타 시설명)

- 현재 보유현황( ),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 마련에 소요자금 확보 계획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 조직원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 향후 1년 이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연번	수행업체	참여대상	교육・컨설팅계획			비고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총계		명			천원	
1						
2						
3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물량) 기술*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관련내용 기술*

□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목별 인증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농산물에 대한 GAP·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관련 인증기관, 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품목, 인증 재배면적 기술*

○ 품질기준

-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 선정, 작부체계 운영, 토양관리 등 생산일관관리 내용, 품질기준 준수 방안 등 기술*

○ 고품질 생산(재배) 체계구축

- *매뉴얼 구비·준수 확인 절차, 교육 등 기술*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토양·수질·생산물 검사 및 평가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4.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Ⅳ.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투자계획 (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2. 추진목적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2) 시장·환경 분석

○ *마케팅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3)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3.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

4. 세부계획

1) 사업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제*(공동농업 추진 관련, 세부실행 방안 제시)*

- *조직화 부분 전략*
- *생산 부분 전략*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전략*
- *가공·유통 부분 전략*
- *홍보·마케팅 부분 전략*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20년(사업준비)	2021년(사업기간)	2022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 – • –	• – • –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 *과제* – *계획* •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 2020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4) 2021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소방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부지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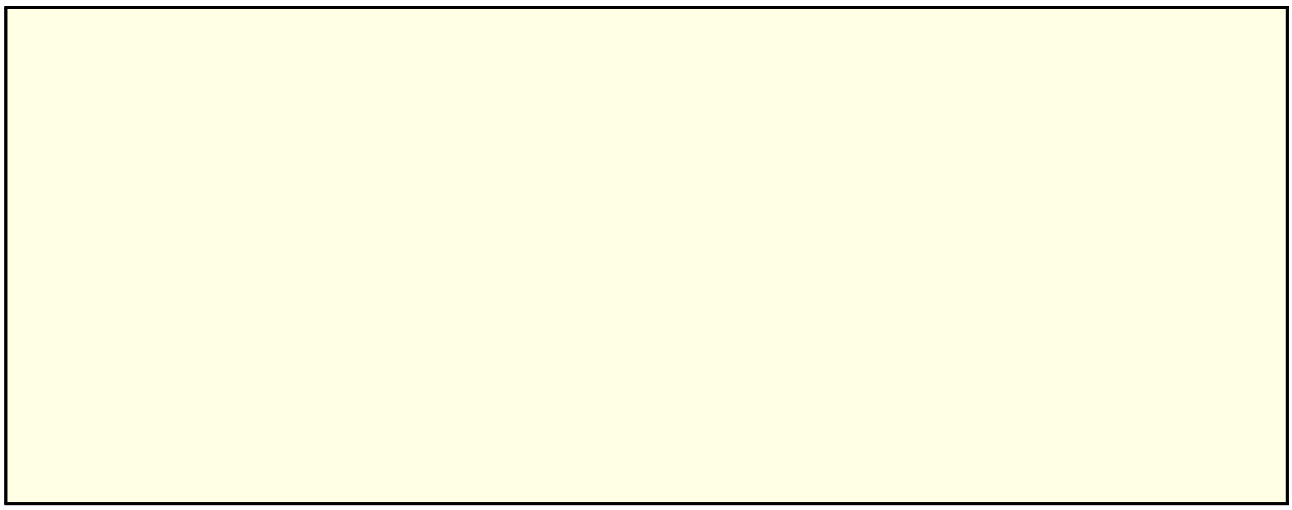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조건부	o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o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 가능.
	농어촌정비법	기 타	조건부	o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o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o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o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o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o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o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o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o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o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o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에 의함. o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o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o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o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 설 설	폐기물처 리시설 설 치계획	조건부	o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치 촉 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o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건축관련] o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o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o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 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VI.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향후 3년간 추가로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19년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과 ’22년까지 확대한 면적을 ’20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20년부터 공동영농면적을 최소 50ha ~ 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공동영농 면적(A)	논 타 작물 면적 및 품목					비율 (B/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19년	ha	ha	ha	ha	ha	ha	%
‘20년	ha	ha	ha	ha	ha	ha	%
‘21년	ha	ha	ha	ha	ha	ha	%
‘22년	ha	ha	ha	ha	ha	ha	%

4.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및 확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참여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식량생산의 핵심리더인 경영체로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 '20년 쌀 수급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현황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실적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계획		
참여 농가수	공동경영 면적(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호	ha		ha	%		ha	%

*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미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공동경영면적 : ____ha

3.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지원기준(시설·장비 15% 이상, 다각화 30% 이상, 잡곡전문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식량분야

48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융자)

세부사업명	산지유통활성화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밭식량작물수매지원	예산 (백만원)	9,400
사업목적	○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국산 밭 식량작물의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계약재배 활성화,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지원자격 및 요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등)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임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33,851	16,851	16,851	9,400
융 자	33,851	16,851	16,851	9,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산업과 정책금융부	이가인 한승희	044-201-1835 061-931-114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민간
관련자료	농산물수매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양곡관리법」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를 뜻함(미곡 제외)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3. 사업시행기관 및 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임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형태 및 요건

○ 지원형태: 국고융자

○ 융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량: 대출금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 수매

○ 지원조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농업인·농업법인 2.5%, 그 외 3.0%
- (변동금리) 매월 변동(6개월 변동주기, 농협은행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 밭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로 하되 여유자금 발생 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

○ 우대조건: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 우선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 세부지원계획 수립 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안(지원업체 평가, 자금지원규모 차등화 등) 및 품목별 세부 자금운영 계획(용도·시기별)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사업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은 홈페이지 게시, 지역본부에 공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극 홍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 '20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당 지사)로 제출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참여농가 명부 1부 등
-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금배정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내 미 대출 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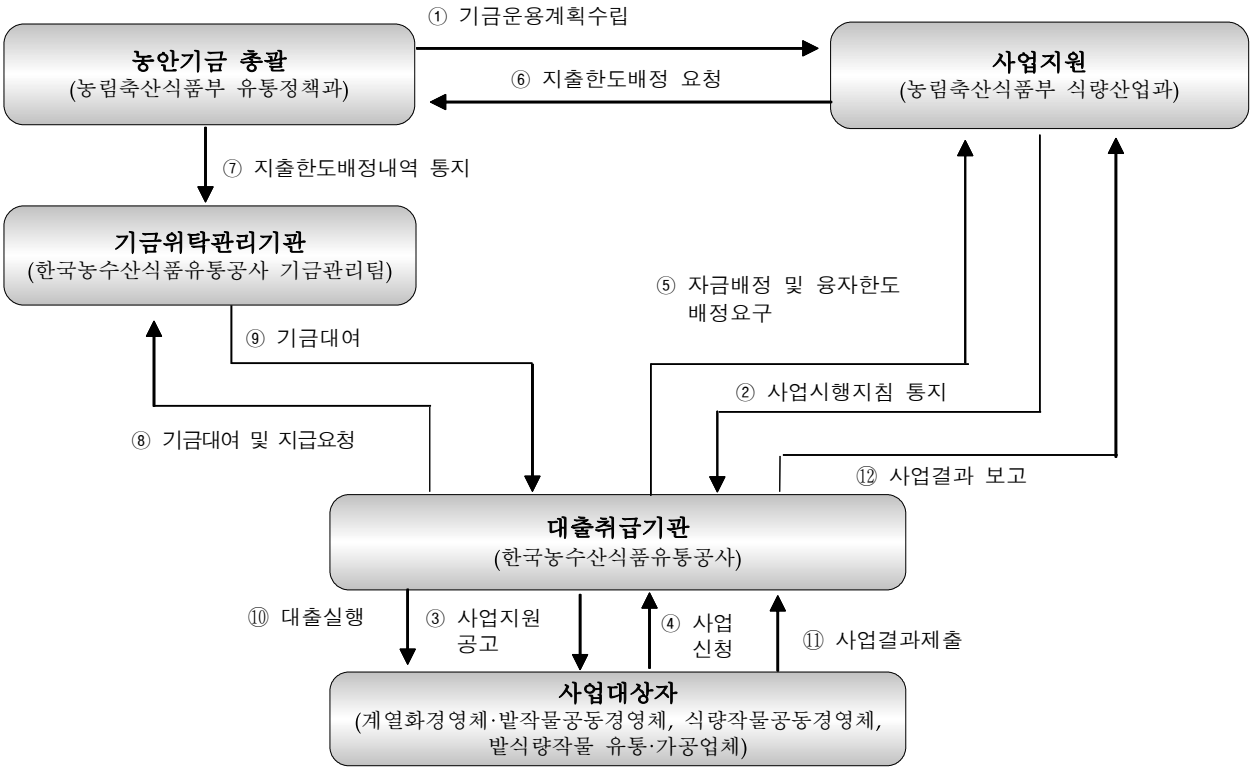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상품목 수매여부,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확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미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 시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도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쌀 소비 활성화 사업</td><td>세목</td><td>지자체
경상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사업</td><td>예산
(백만원)</td><td>20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5">○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랩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5">○ 쌀 제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대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상품개발, 소비자 수요 조사, 청년 창업자 교육 및 홍보.마케팅, 다양한 쌀 가공제품 판매 등</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5">○ 양곡관리법 제26조,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5">○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 라이스랩을 독립 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5">○ 1개소당 2억원 이내 지원</td></tr>
<tr><td>재원구성
(%)</td><td colspan="5">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현황</td><td colspan="5">(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합 계 | 800 | 800 | 800 | 400
국 고 | 400 | 400 | 400 | 200
지방비 | 400 | 400 | 400 | 200</td></tr>
<tr><td colspan="2">담당기관</td><td>담당과</td><td>담당자</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식량산업과</td><td>차은지</td><td colspan="2">044-201-1842</td></tr>
<tr><td>신청시기</td><td colspan="2">별도 통보</td><td>사업시행기관</td><td colspan="2">자치단체</td></tr>
<tr><td>관련자료</td><td colspan="5">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td></tr>
</table>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 관련 제품, 요리 등을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 라이스랩을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3. 지원대상

○ 쌀의 신수요 발굴을 위한 라이스랩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홍보비, R&D 자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규모 : '20년 라이스랩 2개소 운영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각 라이스랩 별 2억원 이내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다만, 해당 대상자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라이스랩별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라이스랩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시·군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 검토·평가 이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시·도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는 시·군 제출자료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 후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인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정하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지원 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및 보조금 가내시 통보, 지원 대상자·보조금 확정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의 사업 계획 보완 및 소요 예산 검토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은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기본규정」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집행

* 계획 내 기존사업 내용에서 금액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경우, 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시·군에 제출·검토하는 것으로 갈음

- 시·군의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포기서 제출 시 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1~5년 지원 제한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기본규정」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장·군수 및 지원 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의 세부 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반기별 진행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점검시기 : 당해연도 3월말 , 9월말을 기준으로 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주기적(반기별)으로 '사업 수행상황(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라이스랩 운영 기관·대표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서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점검・확인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원 대상자가 계약・조달지연 등 원인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이월 신청・처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지원 대상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 사업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2. 평가

○ 「라이스랩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 등을 연 1회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라이스랩 설치·운영사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또는 라이스랩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선정 취소 등 조치

3. 환류

○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평가 후 신규 선정 필요시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고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h colspan="8">'00년 라이스 랩 사업신청서</th></tr>
<tr><td rowspan="5">지자체
현 황</td><td>지자체명</td><td colspan="2">○○도 ○○시(군)청</td><td>주관부서</td><td colspan="3">○○○○과</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 ) -</td><td>팩스번호</td><td colspan="3">( ) -</td></tr>
<tr><td rowspan="2">사 업
담당자</td><td>직위</td><td></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성명</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신 청
내 용</td><td>사업명</td><td colspan="6">'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 . . . ~ 20 . . .(개월)</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사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술</td></tr>
<tr><td>사업장소</td><td colspan="6">구체적인 장소 명기</td></tr>
<tr><td rowspan="2">총 사업비</td><td colspan="2" rowspan="2">총 200,000천원</td><td>국 비</td><td colspan="2">100,000천원 (50)%</td></tr>
<tr><td>지방비</td><td colspan="2">100,000천원 (50)%</td></tr>
<tr><td>동일・유사
사업
지원여부</td><td colspan="7">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신청 여부 표기</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7">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장 또는 대표자) 인</td></tr>
<tr><td colspan="8">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사업계획 요약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4"></td></tr>
<tr><td>단 체 명</td><td colspan="4"></td></tr>
<tr><td>대상 지역</td><td colspan="4"></td></tr>
<tr><td>제안배경</td><td colspan="4">-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td></tr>
<tr><td>성과목표</td><td colspan="4">- 정량적 목표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성적 목표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담당자</td><td>직 책</td><td></td><td>성명</td><td>(인)</td></tr>
<tr><td>전화번호
(휴대폰)</td><td></td><td>E-mail</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able>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 응모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00년 라이스 랩(Rice Lab) 사업계획서

단체·기관명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전략

1. 3

2. 4

3. 세부 추진내용

1. 0

2. 0

4. 기대효과

1. 0

5. 추진일정

1. 0

6. 사업수행인력

1. 0

7. 소요예산

1.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유형 : *(매장 공유형, 셰프 주도형, 기업주도형, 협동조합형 중 택 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2. 사업목표 및 전략

❑ 사업목표

○

❑ 추진체계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 추진방향

○

3. 세부추진내용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면적, 세부 공간 기능 및 조성방안, 시설배치계획 등(도면 포함)*

❑ 관리운영 계획

○ *관리운영주체 설정, 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 운영 활성화 계획

○ *창업자 교육, 홍보, 마케팅, 이벤트 계획,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등*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관리 운영 계획, 운영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4. 기대효과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비			
	계			
	직접사업비	**소계**		
		시공비(예시)		○○원×○회
		기계비(예시)		○○원×○회
				○○원×○○명×○식×○회
				○○원×○○부×○회
	운영비	**소계**		
		인건비(예시)		○○원×○명×○회
		식료품비(예시)		○○원×○회

<작성 유의사항>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00년 라이스랩 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시도비 %, 자부담 %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상황(방문객 수, 판매·전시 현황 등)*

○

3. 반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00예산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상반기	하반기		
계						
ㅇ국고						
ㅇ자부담						
ㅇ기타						

4.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00년 라이스랩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지자체			
라이스랩			

□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지 주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도비 %, 시비 %

□ 사업 추진현황

○ 라이스랩 운영 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쌀		쌀가공품	
		판매량(kg)	매출액(천원)	판매량(kg)	매출액(천원)
00라이스랩					

* ‘18.1월～11월 기준

- 판매·전시 현황 등 라이스랩 운영 관련 사항

○ *연구개발 현황*

○ *홍보 현황*

○

□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운영시 성과 등 기술*

□ 라이스랩 운영 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기술*

□ 지자체 의견

○ *사업 지속의 필요성 여부,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사항 등 기술*

□ 2018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18년 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D)	차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00라이스랩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	집행내역	비고
합계			200,000,000	
국고	*인건비*	*총괄 매니저(00원×00개월)* *매니저(00원×00개월)* …		
	식재료비	…		
	운영비	…		
	교육비	…		
	홍보비	…		
	마케팅비	…		
	…	…		
지방비				
자부담				

참고	*00행사 추진 결과(개요, 사진 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4-1 경쟁력 제고

축산분야

50 말산업 육성지원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민간융자,
내역사업명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유청소년 승마센터 건립, 인공수정용 번식씨수말 도입,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	예산 (백만원)	**29,700**
사업목적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학생승마체험, 승마대회,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등 지원 ○ 말산업특구지원, 말산업실태조사,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설치 지원 : 승마시설 신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학생승마체험 : 학교장 등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자체승마대회 활성화 : 승마대회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등 ○ 말산업특구,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 마사회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한도	○ (승마시설 신설) 공공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2억원, 승마길 조성 2억원, 거점조련시설 12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5억원 ○ (승마시설 개보수) 공공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2.8억원 ○ (학생승마체험) 승마체험형태에 따라 체험자 1명 기준 9만원~20만원 등		

재원구성 (%)	국고	20~50%	지방비	20~60%	융자	30~100%	자부담	20~6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	31,247	29,434	31,514	28,575
융자	3,340	1,950	1,950	1,125
지방비	21,885	23,696	24,926	23,887
자부담	6,438	11,918	12,546	8,2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20년도 1분기	사업시행기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020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이덕진	044-201-2324~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 말산업인력개발처	처 장 엄영석 처 장 박한용	02-6006-3692~5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나. 근거법령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 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7,450	65,919	62,910	66,998	70,936	61,795	미정
보 조	32,950	30,920	31,247	29,434	31,514	28,575	
융 자	4,100	3,340	3,340	1,950	1,950	1,125	
지방비	18,300	23,382	21,885	23,696	24,926	23,887	
자부담	2,100	8,277	6,438	11,918	12,546	8,208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유청소년 승마센터 건립 포함)

②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③ 승용마 조련강화

④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⑤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⑥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

⑦ 학생 승마체험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은 가점 부여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농축협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지자체

※ 상기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승마)를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 · 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 · 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가능 거리이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농어촌형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승마길 조성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비, 설치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공공기관*	40	40	-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3%(농업인 2%)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설	20	20	30	30	
	개보수	-	-	100	-	
승마길 조성	지자체	40	60	-	-	-
	농축협	40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50	5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민간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마시설 신설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대학·공공기관	**2,000**	800	800	-	400	**700**	280	280	-	140
농어촌형 승마시설		**1,000**	200	200	300	300	**300**	-	-	300	-
승마길 조성	지자체	**500**	200	300	-	-	-	-	-	-	-
	농축협	**500**	200	-	-	300	-	-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1,000**	500	500	-	-	-	-	-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	-	-	-	-
	농축협/민간	**3,000**	1,200	-	-	1,800	-	-	-	-	-

②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승마시설 이용 외승로 내 '포장길'이 전체의 30% 이하면서 3KM이내 시설만 지원

○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3회

○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외승체험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540	540	720

③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거점 승용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에 위탁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 더러브렛 품종의 경주퇴역마 후순위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에 의거하여 육성된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 또는 승마대회 출전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권장
* 조련사업 지원 말 중 품평 및 승마대회에 출전 말의 소유자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품평일정 및 기준은 호스피아 홈페이지(http://www.horsepia.com) 공지)

4. 지원형태

(단위: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위탁조련 + 경매상장(선택)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100)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20)
		국비(40)	지방비(40)	
위탁조련	5,000	2,000	2,000	1,000
경매 상장(선택)	3,000	1,200	1,200	600

- 위탁조련 : 지정된 시설에 대한 위탁조련비용(3~6개월분, 운송, 사양, 진료, 보건, 조련 등)
- 경매상장 : 경매 준비 및 상장 과정 중 발생 비용(운송, 조련[2개월 이내], 경매수수료, 사양관리, 기승료 등)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권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지원 기준금액	2,500	3,330	4,170	5,000	일할 계산 시 1일 27천원 적용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 강화	450	180	180	90	-

④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 사업대상자 및 지원기준

구 분	사업대상자	지원기준 (1:1 매칭)		
		국비(50%)	지방비(50%)	계(100%)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4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80백만원 이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이 있는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물품구입 (창단,운영)	▪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3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운영경비 (창단,운영)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5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 (대회 참가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1,800	900	9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⑤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이 있는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웜블러드 신청자에 한해)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 웜블러드 :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씨수말 도입(해외 현지 씨수말 라이센스 취득 씨수말에 한함)

* 도입된 씨수말은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에 이용

* 도입지원 품종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고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80	20	농가 보급 씨암말과 동일 품종의 교배지원 수말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80,000	144,000	36,000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80	144	36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⑥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승용마(3~7세)로 한정하는 연령별 승마종목 2개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 대회는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기준

○ 정부예산 지침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축산발전기금 지원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지방비 매칭)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 40%/상금 40%/홍보비 20%, 항목별 ±10% 이내로 조정 가능)에 의하여 운영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⑦ 학생승마체험

1. 사업대상자 :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시설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3. 지원기준(승마체험자 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1인당 강습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90	120	90	3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1인당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6	8	6	2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0	10	-	20
	재활승마	10	10	-	20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

*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4-2]를 참조하여 신청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증권 제출 必)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공공체육시설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2022년 사업부터는「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만 인정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⑧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포니3등급)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한국마사회에 통보

*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20,996	6,299	8,399	6,298	65,610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600	300	300		1,875명
	재활승마	1,202	601	601		2,864명
계		22,798	7,200	9,300	6,298	70,349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22,500
사업목적	○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기반조성(단지 구획정리 및 정지 토목공사, 도로·용수·전력·통신시설 등), 지원센터(교육 및 빅데이터 센터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 등 사업 추진 여건 등)		
지원한도	○ 기반조성(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센터(국비 50%, 지방비 50)		

재원구성(%)	국고	50~70	지방비	30~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11,250	33,000
국 고	-	-	7,875	22,500
지방비	-	-	3,375	10,500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 태 복 사무관 조 재 성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 계	11,250	33,000	22,785	5,000	-
국 고	7,875	22,500	17,125	2,500	-
지방비	3,375	10,500	9,625	2,50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입주 경영체(단지에 입주하여 축산을 경영하는 생산주체로 영농법인 및 조합),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부지는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제 해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추진 1차년 내에 확보해야 함
- 단지에 입주하는 축산 농가 사전 확보, 영농법인 및 조합 결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개소당 15ha 내외 규모, 총 사업비 9,500백만원

* 축산단지 규모, 참여농가 및 사육규모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자체 부담)

지원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15ha 내외	9,500	6,250	3,250

* 축산단지 기반조성비 7,500백만원(국고 5,250, 지방비 2,250), 축산단지 내 교육·빅데이터 교육센터 2,000백만원(국고 1,000, 지방비 1,000)
* 연차별 사업비 : (1년차) 기반조성 50%, (2년차) 기반조성 50% + 교육·빅데이터 센터 50%, (3년차) 교육·빅데이터 센터 50%

○ 축사 및 분뇨, 방역 등 축산단지내 시설의 건폐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40% 수준에서 설정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건폐율 및 면적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지원조건: (단지조성) 국고보조 70%(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지방비 30%

(교육·빅데이터 지원센터) 국고보조 50%(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공모 (안내)	➡	모집·접수	➡	평가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19.10월		**'19.12월**		**'19.12～'20.1월**		**'20.1월**
공모 알림 및 안내		사업신청 모집·접수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알림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대상자 공모('19.10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19.12월)

시·도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0월)

○ 시·군, 입주 경영체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에 참여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출('19.12월)

시·군

○ 축산농업인, 농업법인(조합)에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19.10월)

○ 시·도, 입주 경영체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입주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후 시·도 제출('19.12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정

입주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 단지 내 축사, 분뇨, 방역, 사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축산단지 운영 및 사후관리, 활성화 등 계획 수립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19.11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축산단지(토목), 축사(건축), 분뇨, 방역, ICT, 경영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20.1월)
- 제출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현장점검[별지 제3호 서식], 대면보고를 통해 평가 실시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20.1월)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19.11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20.1월)

시·군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입주 경영체, 자체 자문자, 지자체 담당자)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19.11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20.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 서류, 현장점검 및 평가 등 지원

3.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지자체 예산 편성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 확인한 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 신청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계획서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승인

* 사업자 선정 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의 사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토 실시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안 및 추진사항 중 전문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1개월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와 함께 최종사업계획을 제출

○ 시·도는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입주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부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즉시 제출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도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확인

○ 시범단지 운영에 필요한 공동매뉴얼(지자체+입주경영체)을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기반공사와 관제·교육센터, 축사·분뇨·방역관리 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입주 경영체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 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지정

시·도

○ 시·도는 사업추진단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사업추진단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공정률)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수립 시 반영

8. 경과조치

○ 2019년 신규사업 선정 지자체는 동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신청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위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주요사업 계획		면적(㎡)	확보면적(ha)	주요시설
합 계			(%)	
연계사업	축 사		(%)	
	분뇨처리		(%)	
	방역관리		(%)	
	교육·관제		(%)	
	기타		(%)	
신청계획	축 사	*스마트 축사: 사양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축사내 질병·번식관리*		
	분뇨처리	*친환경분뇨관리: 분뇨수거 및 자원화를 통한 악취 및 수질오염 최소화 계획*		
	방역관리	*방역관리: 방역, 차량출입 통제, 가축 입식 및 출하관리, 사료 입고 관리 계획*		
	교육·관제	*관제 시스템: 축사내 사양관리정보, 냄새·수질정보, 차량출입, 가축출하, 생산성 정보*		
	기타	*폐사축 처리, 태양광, 관리사, 주차장 등*		

Ⅲ. 사업비 투자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합 계		*13,500*	*6,250*	*2,750*	*6,000(토지)*	-
주요시설	기반시설					
	축 사					
	분뇨처리					
	방역관리					
	교육·관제					
	기타					

Ⅳ. 생산계획			
사육규모	마리	연간 생산량	마리(톤)

위와 같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모 사업계획서(양식)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 ○○. ○○.

○○○시·도/시·군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3), 증빙자료(붙임4)로 구성

□ 공모 신청서 작성안내

○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대면보고용 발표자료를 모두 제출(각 13부 인쇄본, 문서작성 파일)

- (사업계획서) A4 6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발표자료) 30분 이내 발표 가능한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제한분량에서 공모신청서 및 표지와 목차, 증빙자료는 제외
* 전체 사업계획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본문 내지는 백상지로 인쇄하고 도면은 가독성을 높이고 컬러로 인쇄
* 작성파일은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wp', '*.ppt' 등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지역에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_____ha(축사 00동 ㎡, 분뇨 00㎡, 방역 00㎡, 관제·교육시설 00㎡, 관리사 및 기타 00㎡)
○ 주요시설 :
- *(단지기반) 부지조성, 단지내 도로, 용수, 전기, 축사·분뇨자원화·방역관리 시설 등*
- *(축사시설) 축사구조, 축사내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 주요 시설 등*
- *(분뇨관리) 퇴·액비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시설, 정화시설, 축사내 악취관리, 분뇨처리 장비*
- *(방역관리) 차단방역시설, 소독시설, 폐가축 철리시설*
- *(관제·교육) 데이터 수집·활용, 단지내 시스템 컨트롤 기능, 교육시설 등*
- *(관리사 및 기타) 축소, 창고, 사료빈 등*

○ 추정사업비 : 총_____억원(국비_____ , 지방비_____ , 자담_____)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스마트 축산단지내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3. 사업추진 경위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예비계획 수립을 준비해 온 추진단과 지자체의 노력 및 일자별 추진경위를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Ⅱ. 기본 구상

1. 비전설정

○

※ 스마트 축산단지를 통해 지역 축산업이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

2. 발전목표

○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축산업 발전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3.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 · 분야별로 세부전략 제시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4. 성과지표

○

※ 스마트 축산단지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Ⅲ. 대상지역

1.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일반현황, 축산현황, 토지이용, 도시계획, 교통, 지역 산업·경제 등

나. 축산현황

○

※ 행정조사자료, 이력제자료 등 활용하여 축종별 가축사육현황, 도축, 가공 등 에 대한 통계정보
※ 해당지역의 축산업의 위치(전국 대비 규모 등)

다.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시·군의 단기, 중장기 도시관계획 수립 내용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라. 지역의 축산업의 입지

○

※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발생 현황, 질병발생 현황,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
※ 필요 시 지도 등을 통해 정리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환경 관련 축산단지 입지제한 규제 적용여부 검토, 해소 방안 등
※ 도로,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 수질오염, 악취민원 등 발생 가능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미등기					
지목별 현황	목장용 용지					
	농지	소계				
		전				
		답				
		과수				
	기타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다.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00	00	0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
2	00	00	00	0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
3	00	00	00	0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00	00	0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부지 현황(매입부지, 매매계약 완료부지 등)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9.05.20.	○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9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매매동의서, 사용승락서 확보 부지)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9.07.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9.07.30.	○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3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시 예정 시 3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구체적인 매입계획 일정 첨부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목장용지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수요 분석

※ 축산농가 설문조사, 지역포럼, 지역 축산단체, 농축협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가. 기존 농가 수요

○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사육마릿수와 단지 입주시 면적, 사육마릿수 기재*

다. 신규 농가 수요

○ *신규농가 대상자 기준(축산관련 학과 전공자, 청년 창업농 등)*

라.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농업인, 추진단,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추진단,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외부전문가 등)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

※ 시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축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환경관련 축산업 및 축사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개발행위 규제 검토)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

※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지역의 경쟁력

가. SWOT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나. 발전방안

○

※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축산단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

Ⅳ.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1. 총괄 조성 계획

가.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 축산단지 구성의 개념 및 효과 설명
- 지자체의 무허가, 분뇨관리 문제 해결, 산업육성 등과 관련 사업의 방향 설명
- 적정한 분뇨관리,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기본 시스템 설명

나. 스마트 축산단지 마스터 플랜(안)

○

※ 스마트 축산단지 마스터 플랜(안) 제시
- 스마트 축산단지의 핵심구성 사업 대상지 위치표시
-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제시
- 축사, 분뇨, 방역시설, 관제·교육 시설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다. 추진체계

○ 구성 및 역할

○ 추진실적 및 계획

※ 주요 주체・참여경영체 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스마트 축산단지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참여농가 현황 및 조직(법인 또는 조합) 구성·운영 계획

2. 세부조성계획

가. 주요시설 총괄표

○

※ 스마트 축산단지의 주요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스마트 축사, 통합 방역관리, 통합 친환경분뇨관리, 통합 관제 시스템, 교육시설, 폐사축 처리장, 분뇨에너지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 기능별구분 / 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나. 기반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세정수, 생활오수 등) 및 에너지화시설, 기타 시설*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세정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축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폐수시설 등의 용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다. 스마트 축사

○ *주요 시설물 구성*

- *축사동수, 동별 시설 내용*

○ *조성규모*

○ *주요기능*

※ 세부구성 내용 : 축사구조, 사양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축사와 분뇨관리 및 질병관리시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라. 통합 친환경분뇨관리

○ *주요 시설물 구성*

- *퇴비화 관리, 액비화 관리, 수질환경관리, 에너지화시설, 퇴·액비 유통 및 농지환원 관리, 축사내 환경관리*

○ *조성규모*

○ *축산단지내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퇴비화 관리, 액비화 관리, 수질환경관리, 에너지화, 퇴·액비 유통 및 농지환원관리, 축사내 환경관리 시 설의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축사내 환경관리 시설과 퇴·액비·자원화시설과 통합분뇨관리시설의 기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

마. 방역관리

○ *주요 시설물 구성*

- *차단방역, 소독시스템, 폐사축처리 시설*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사람 : 단지 출입시 대인소독 → (탈의 → 샤워 → 방역복 착용 → 소독) → 단지
※ 차량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 동물 : 밀폐형 축사구조(가금, 돼지), 울타리 시설
※ 소독시스템 : 전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단지 출입구 대인 소독시설, 축사내·외부 소독시설
※ 가금·돼지 폐사축 사체처리기(외부 처리 계획)

바. 관제센터·교육장

○ *주요 시설물 구성*

- *빅데이터 수집·활용 관제센터, 방문센터, 단지운영 ICT 연계 교육장*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스마트 축산단지 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현장 실습 교육 등 데이터 분석 교육이 가능한 관제센터 구축・운영
※ ICT 연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선진 기술 교육생들의 생생한 교육현장 체험을 지원

사. 기타요소

○ *주요 시설물 구성*

- *관리사, 착유시설, 사료반입 시설, 가축입식·출하시설, 창고 등*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주요 시설물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4. 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Ⅴ. 스마트 축산단지 운영계획

1. 총괄 운영 계획

가. 기본방향

○

나.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스마트 축산단지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단지운영 주체 구성 및 역할
- 법인설립이나 지자체, 입주경영체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단지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2. 세부운영계획

가.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스마트축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 스마트축산단지 에너지시설, 전기·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보수 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규모, 산출내역 등 포함)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나. 스마트 축산단지 경영

※ 법인 또는 조합을 결성하고 농가간 수평적 계열화를 유도하되, 단지운영 대표(내부 선임) 또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단지 운영 총괄
※ 단지 내에서 생산된 가축 및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를 위해 축종별로 지역·품목조합, 계열화사업체 등과 MOU 체결 유도
※ 경영, 사양관리, 가축분뇨 및 방역관리를 위해 전문가 활용

다. 생산·유통계획

1) 스마트 축산단지 생산·판매계획

① 실적 및 계획(총괄)

구분		연도	전 체 사육규모	번식기반	자축생산	출하물량	금액 (백만원)
생산	계획	2022					
		2023					
		2024					

② 생산실적 및 계획

○

※ 축산단지 참여농가의 현재 생산실적과 향후 단지조성시 계획을 비교하여 작성
※ 사육규모, 입주 경영체의 기술력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 제시 (품목별로 작성)

라. 기타

1) 기타시설 운영계획

○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Ⅵ.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1)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축사 시설	소계					
	축사신축					
	ICT 장비					
	기타					
분뇨 처리	소계					
	액비화 시설					
	퇴비화 시설					
	정화시설					
	에너지화 시설					
	폐수처리 시설					
방역	소계					
	차량소독					
	축사소독					
	사람소독					
	폐사축 처리					
	기 타					
관제 교육	소계					
	관제센터					
	교육장					
관리사 및 기타	소계					
	관리사(주택)					
	사료 반출입					
	가축 반출입					
	기 타					

2) 사업별 투자계획

연차별 /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20	2021	2022	2023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스마트축사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분뇨관리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방역관리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관제·교육시설						
관리사 및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 기반시설, 스마트축사, 분뇨관리, 방역관리, 정주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 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1)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2) 자부담

○

※ 입주 경영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작성
※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Ⅶ .기대효과

1.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소득액 추정

○

2) 생산성 제고 요인 및 소득향상 정도

○

※ 일반 축산농가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요인을 분석하여 기술
※ 일반 축산농가와 비교하여 연간 소득액 증가 정도 기술

3) 투자대비 자금 회수 계획

○

※ 축산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참고 증빙자료(양식)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부록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첨1) : 환경관련 축산업 및 축사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예산확보 관련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지자체 축산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모두 기재

◦ 지방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 입주경영체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객종합정보 조회서(신용보증금액 기재)

4.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현황

5. 주민동의

◦ 인근 주민 동의서

◦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동의서

◦ 참여농가 축사 및 배후시설(분뇨·방역) 설치 동의서

[별첨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겠음	
1	**입지규제**				
1-1	주거밀집지역 등의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축분뇨법 제8조
1-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				4대강 수계법 제15조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겠음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겠음	
	사업인가				‘아니오’ 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축산단지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 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스마트 축산단지 현장점검 보고서

□ 기본현황

신청 지자체명	사업예정지			용도지구·구역
축 종			전체사업면적	㎡
구 분	기반시설	축사시설	분뇨·방역시설	기타
면 적	㎡	㎡	㎡	㎡
시설내용				
사업비(백만원)				

□ 입지현황(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1	예정부지 전경-2

□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 점검결과

<table>
<tr><th>구분</th><th>조사내용</th><th colspan="2">결과</th></tr>
<tr><td rowspan="10">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td><td>- 사업대상지 위치</td><td colspan="2"></td></tr>
<tr><td>- 지적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td><td>토지대장 면적</td><td>계획서 부지면적</td></tr>
<tr><td>㎡</td><td>㎡</td></tr>
<tr><td>- 토지소유주 구분</td><td colspan="2"></td></tr>
<tr><td>- 인허가 가능여부</td><td colspan="2"></td></tr>
<tr><td>-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td><td colspan="2"></td></tr>
<tr><td>- 용도지역 현황</td><td colspan="2"></td></tr>
<tr><td>- 진입도로</td><td colspan="2"></td></tr>
<tr><td>- 인근 하천</td><td colspan="2"></td></tr>
<tr><td>- 산간지역 지형특성</td><td colspan="2"></td></tr>
</table>

구분	조사내용	결과
	- 교육·문화시설	
	- 축사 및 축산시설	
	- 인근 하천 등 축사 시설 설치 제한 요소	
	- 문화재 발굴 여부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배출량 관리	
대상지 입지조건	- 가축 사육환경 적합성	
	- 지반상태 · 성토, 파일공사 등 여부	
	- 가축분뇨 및 오폐수 처리시설 가능 여부	
	- 상수도, 지하수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사업추진 의지	- 사업참여 자치단체장	
	- 사업참여 농가	
사업비 확보 및 투자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시·도의 지원	
	- 소요예산 확보 계획	
민원 가능성	- 사업 진행 시 민원 및 피해 가능성 예상	

[별지 제4호 서식]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사유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다음해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C)	지방비	계	국고(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기반정비, 교육센터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부지정지, 도로, 용수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

1. 준공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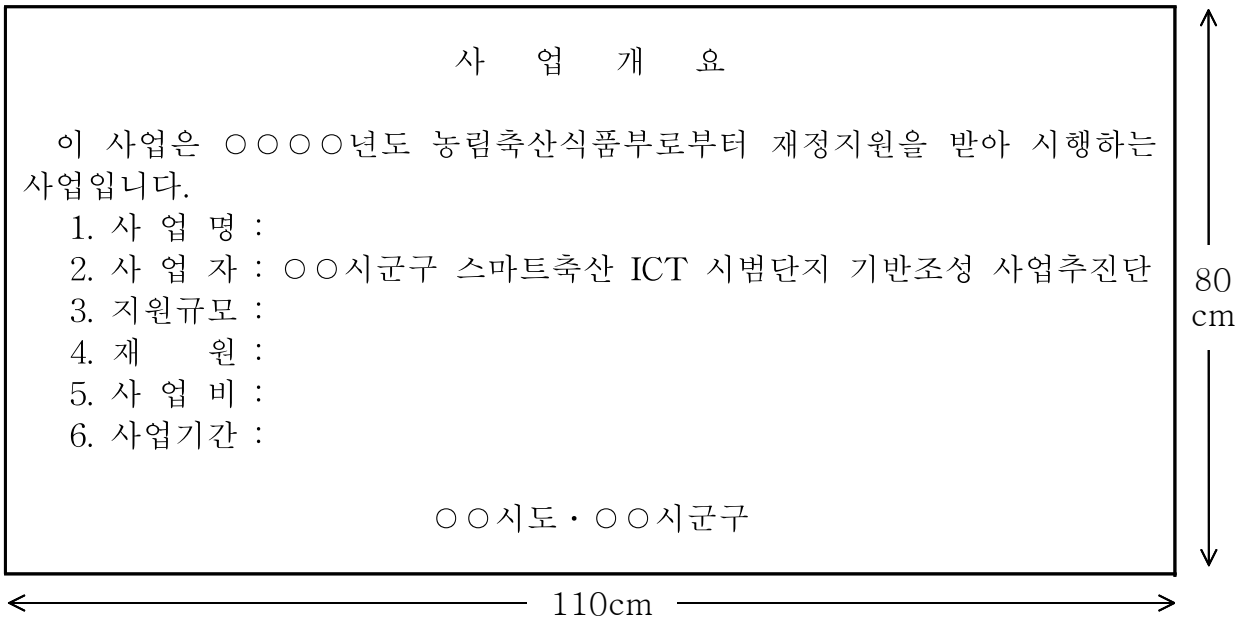

2. 준공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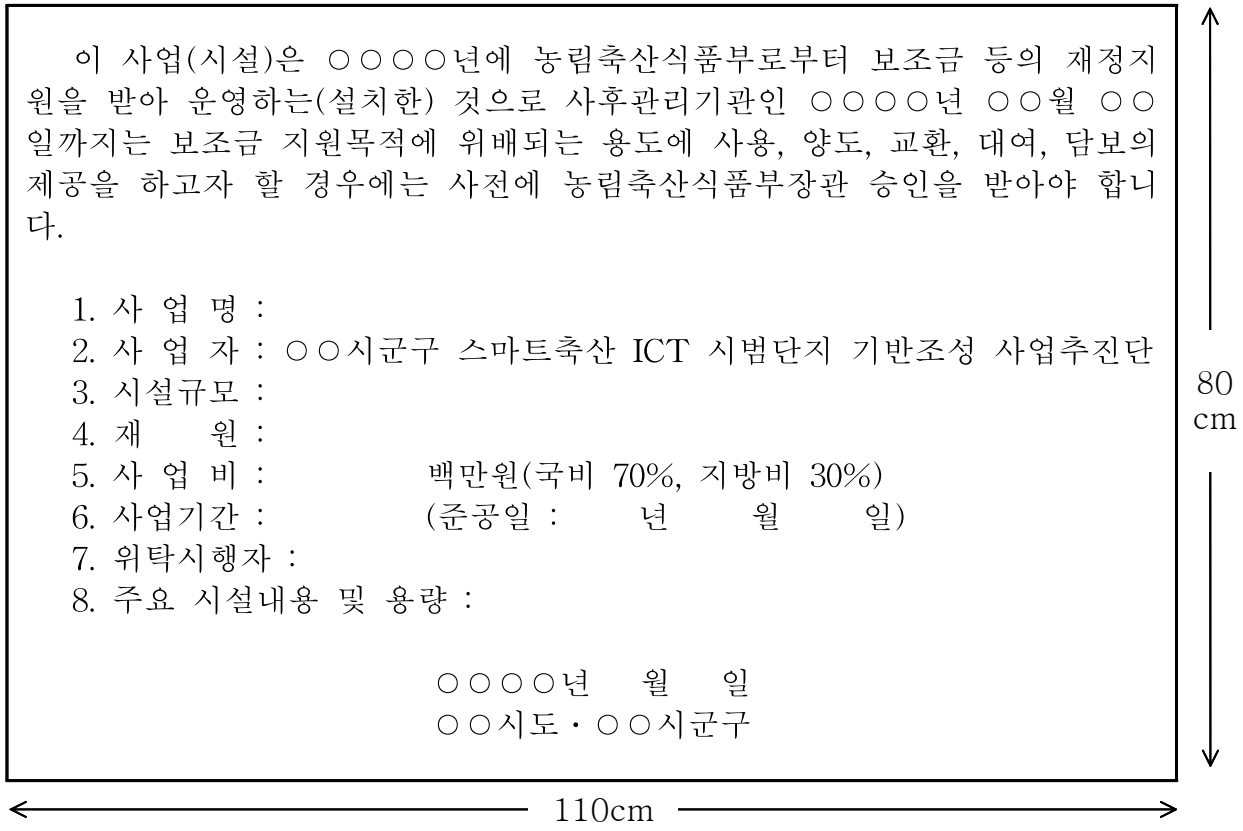

※ 사업장 전시 표찰 규격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 추진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축사시설현대화사업</td><td>세목</td><td colspan="3">자치단체
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td><td>예산
(백만원)</td><td colspan="3">3,000
(보조 500, 융자250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7">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7">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7">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td></tr>
<tr><td>재원구성(%)</td><td>국고</td><td>10</td><td>지방비</td><td>20</td><td>융자</td><td>50</td><td>자부담</td><td>20</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계획</td><td colspan="7">(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r>
<tr><td>합 계</td><td>5,000</td><td>5,000</td><td>5,000</td><td>4,500</td></tr>
<tr><td>국 고</td><td>500</td><td>500</td><td>500</td><td>450</td></tr>
<tr><td>지방비</td><td>1,000</td><td>1,000</td><td>1,000</td><td>900</td></tr>
<tr><td>융 자</td><td>2,500</td><td>2,500</td><td>2,500</td><td>2,250</td></tr>
<tr><td>자부담</td><td>1,000</td><td>1,000</td><td>1,000</td><td>900</td></tr>
</table></td></tr>
<tr><td colspan="2">담당기관</td><td colspan="2">담당과</td><td>담당자</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td><td colspan="2">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td><td>조재성</td><td colspan="2">044-201-2332</td></tr>
<tr><td>신청시기</td><td colspan="3">정기(전년도 10.31일까지)</td><td>사업시행기관</td><td colspan="2">자치단체</td></tr>
<tr><td>관련자료</td><td colspan="7">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td></tr>
</table>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전년 10월)		농업인 등(전년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0.31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11월)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1.10일 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1.15일 까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월～12월)		사업시행기관(1월～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결정)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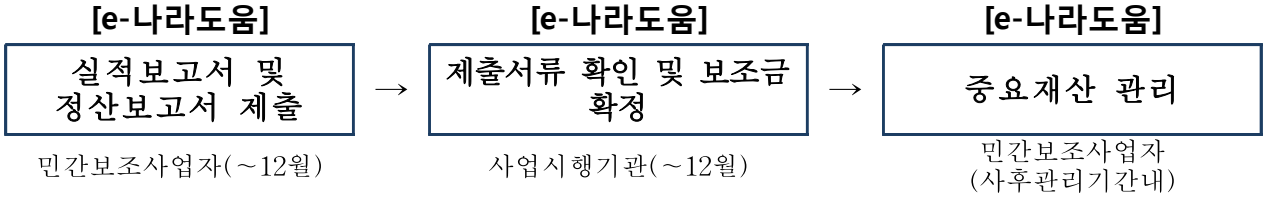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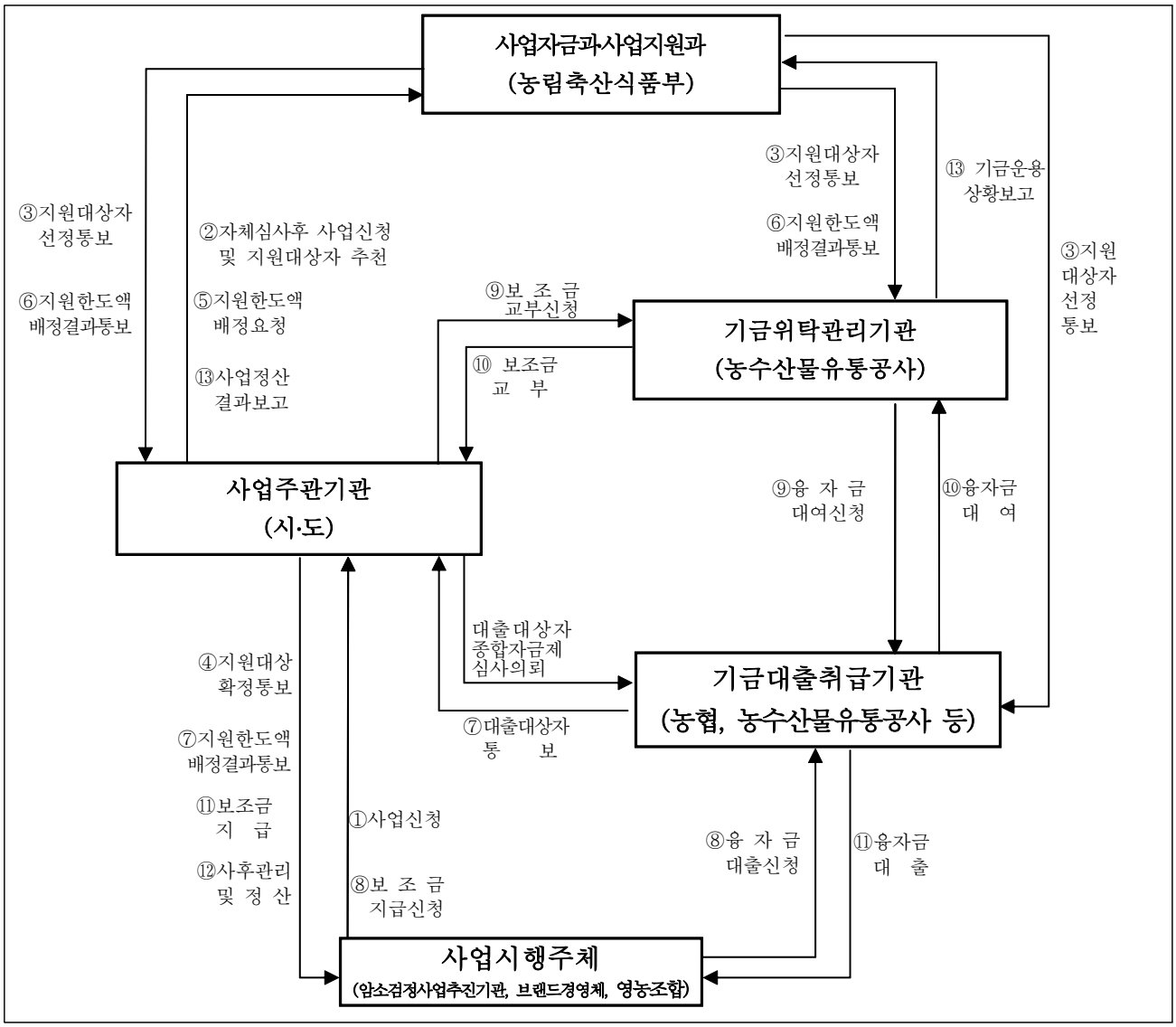

Ⅲ 평가 및 환류

1. 평 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2.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성과결과에 따라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사업시행체계》

<table>
<tr><th>경영체, 법인 등</th><th></th><th>시・도</th><th></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1)</td><td>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td><td>・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10.15)</td><td>추천 → ← 지도/ 조정</td><td>・현지실사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0.31)</td></tr>
<tr><td>・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td><td>제출 → ← 통보/ 사후관리</td><td>・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td><td>제출 → ← 통보/ 사후관리</td><td>・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td></tr>
</table>

<별지 제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18	'19	'20	'2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0년					00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00년도(1년차)												00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등록우보유두수 (60)	사육규모 (50)	HACCP (10)	추진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출하두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토종벌 육성사업)**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 저항성 토종벌('18, 농진청 개발)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 주요내용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사육경력 5년 이상)		
지원한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 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500	500
국 고	-	-	250	250
지방비	-	-	25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라 한다)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500	500	미정
보 조	-	250	250	
지방비	-	250	2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우선 지원 > : 순위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1. 낭충봉아부패병(SD) 발생으로 기존 사육하는 토종벌(벌통 포함)을 전부 살처분(소각)하고 교체하는 경우

   * 시·도는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처분(소각)한 토종벌을 모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섬(제주도 제외),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고, 반경 3㎞ 이내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Sacbrood Virus, 이하 'SBV'라 한다) 음성인 경우

3. 반경 3㎞ 이내에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SBV 음성인 경우

4. SBV 음성인 경우

5. 그 외, 시·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은 분양 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 사업대상자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여왕벌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군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로 전부 교체하여야 하며, SD 저항성 토종벌을 이용하여 증식한 봉군은 벌통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 저항성 품종 : A123 / A456

저항성 품종 이용 증식 봉군 : A123-1, A123-2 / A456-1, A456-2

○ 사업대상자는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SD 저항성 토종벌'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봉협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교미된 여왕벌 분양은 30만원/2마리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농가가 연간 10군 이상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며, 10군 미만 지원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에 한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 배정 내역을 시·도에 통보('19.2월)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및 심의 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서식 참조, '19.2월)

- 한봉 분야 농업경영체 여부, 5년 이상 사육경력 등을 확인

○ 시·도는 예산 배정받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확정

- 시·군은 지원 예산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추진('19.3월)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농진청 등으로부터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봉군 입식, 사양,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청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연 2회 이상 주기적 현황 파악

- 사업자 요청 시 사업현장 점검 및 봉군관리, 증식기술 컨설팅
- 사업자의 사업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검역본부는 SBV 검사 등에 대해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시·도(시·군)에 SBV 검사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 기준 등을 송부

< 한국한봉협회 >

○ 농진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사업대상자 >

○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시·군은 분양 전에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에 대해 SD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발병 여부를 확인

- 다만,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군은 농가가 검역본부의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샘플이 바뀌지 않도록 입회하여 봉인(기관명, 담당자 성명·서명, 연락처 등을 기입)

  * 해당 농가는 채취된 시료를 병성감정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에 SBV 검사 의뢰

- 분양받는 농가가 기존에 사육하는 토종벌의 봉군 수를 확인

○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사 샘플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 실시

- SBV 검사 결과를 해당 농가 및 시·군에 통보

○ 토종벌 관련 교육 이수, SD 저항성 토종벌(농진청 증명), 벌통마다 고유번호 부여·관리 등을 확인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받은 경우는 2마리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 축발기금사무국은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사업대상자 >

○ 토종벌 구입 전에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시·군의 SD(필요시 SBV) 음성 증명 확인 결과

3. 정산 단계

< 시·도 >

○ 시·도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참조, 익년 1월말 기준)

  * 해당 시·군에 지연사유 제출·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시기보다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전액 불인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사업추진 실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포함)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계약서,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매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 사업 결과 보고서(자율 서식)는 기관별 평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

5.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 · 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21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체계화		
사업 주요내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협경제지주		
지원한도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	500	500	500
국 고	500	5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사시설현대화 사후관리 조사 기관(농협)

3. 지원대상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 등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0백만원(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 범위내 집행)

- 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세부사업간 예산조정, 이월(집행기간 연장)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협경제지주(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1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

2. 사업자 선정단계

[e-나라도움]		[내부검토]		[e-나라도움]
세부계획 접수	→	세부계획 검토	→	세부계획 승인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 각 세사업의 내용, 세사업별 예산 신청규모의 적정성, 추진일정 등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및 승인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에 문서로써 통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12월)		민간보조사업자(2~12월)		사업시행기관(2~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기본규정」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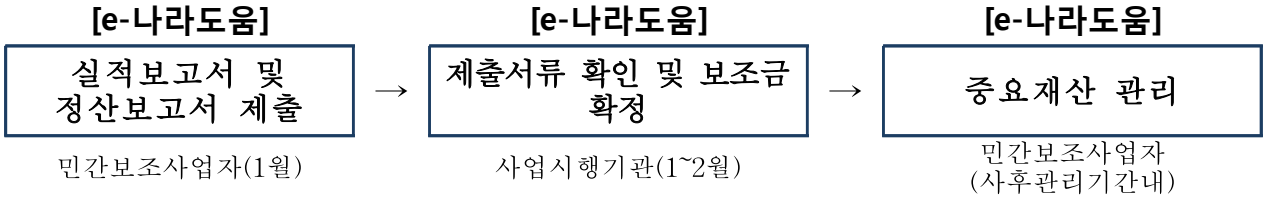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6,000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융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8,000	64,000	60,000	60,000
국 고	18,000	24,000	36,000	36,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생산성 향상	20%	'19.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5,840**	**48,000**	**64,000**	**96,000**
국 고	9,690	18,000	24,000	36,000
융 자	16,150	30,000	40,000	60,000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8.28 이후 지원 가능)**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m^2),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0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곤충, 양봉은 제외)**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곤충, 양봉은 제외)**

○ 사업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지원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단일 장비(예: 로봇착유기) 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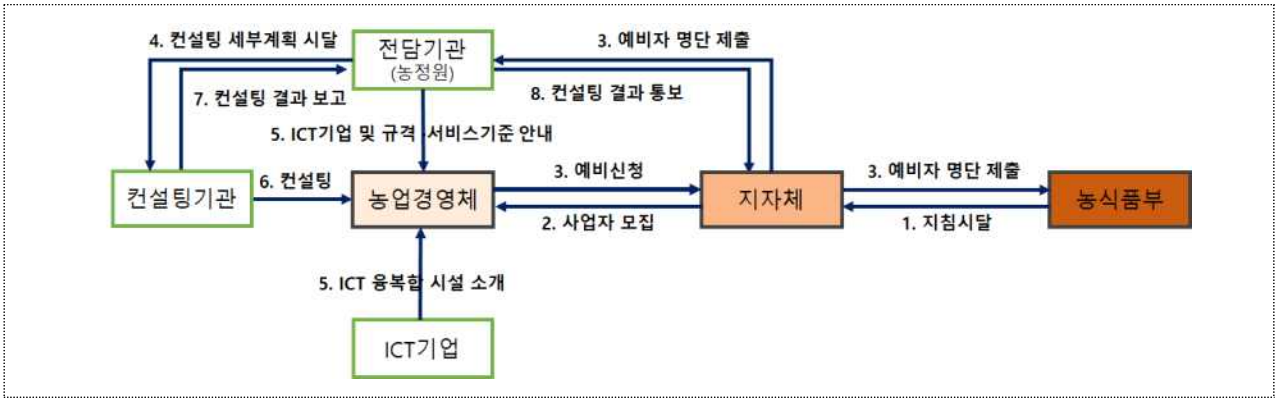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19.11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9.11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19.11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9.11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11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19.11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컨설팅 기관 **(곤충, 양봉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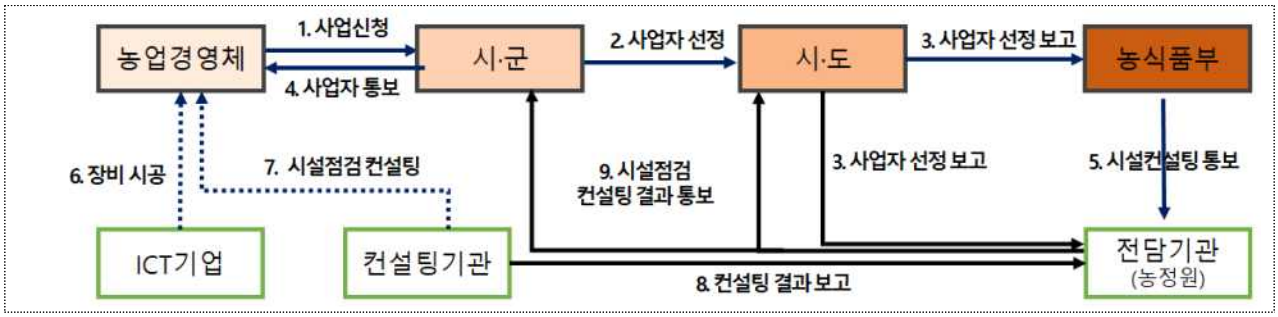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19.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12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19.12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

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7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다. 기타 사항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56 축산자조금 운영

세부사업명	축산자조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자조금 운영	예산 (백만원)	25,133
사업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지원한도	○ 국고보조50%(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52,000	52,000	52,000	50,266
국 고	26,000	26,000	26,000	25,133
자부담	26,000	26,000	26,000	25,13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당해연도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축산자조금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을 조성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

3. 지원대상

○ 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자조금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중「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임의자조금)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운용계획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관리위원회(전년 11월)

○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위원회 심의)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사업담당부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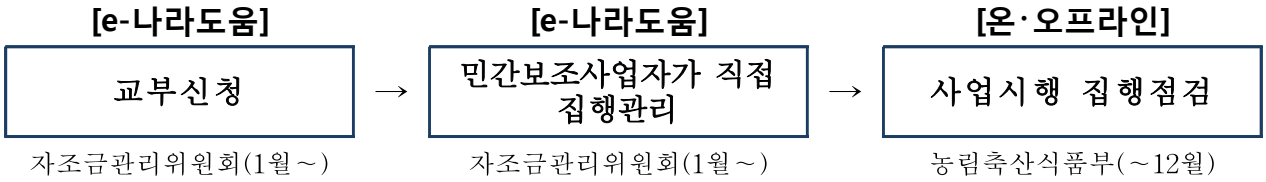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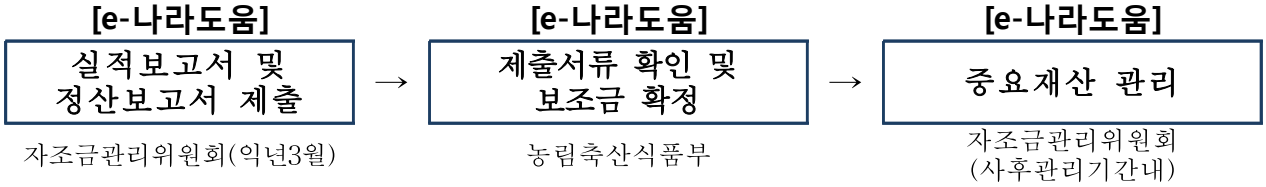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평 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2.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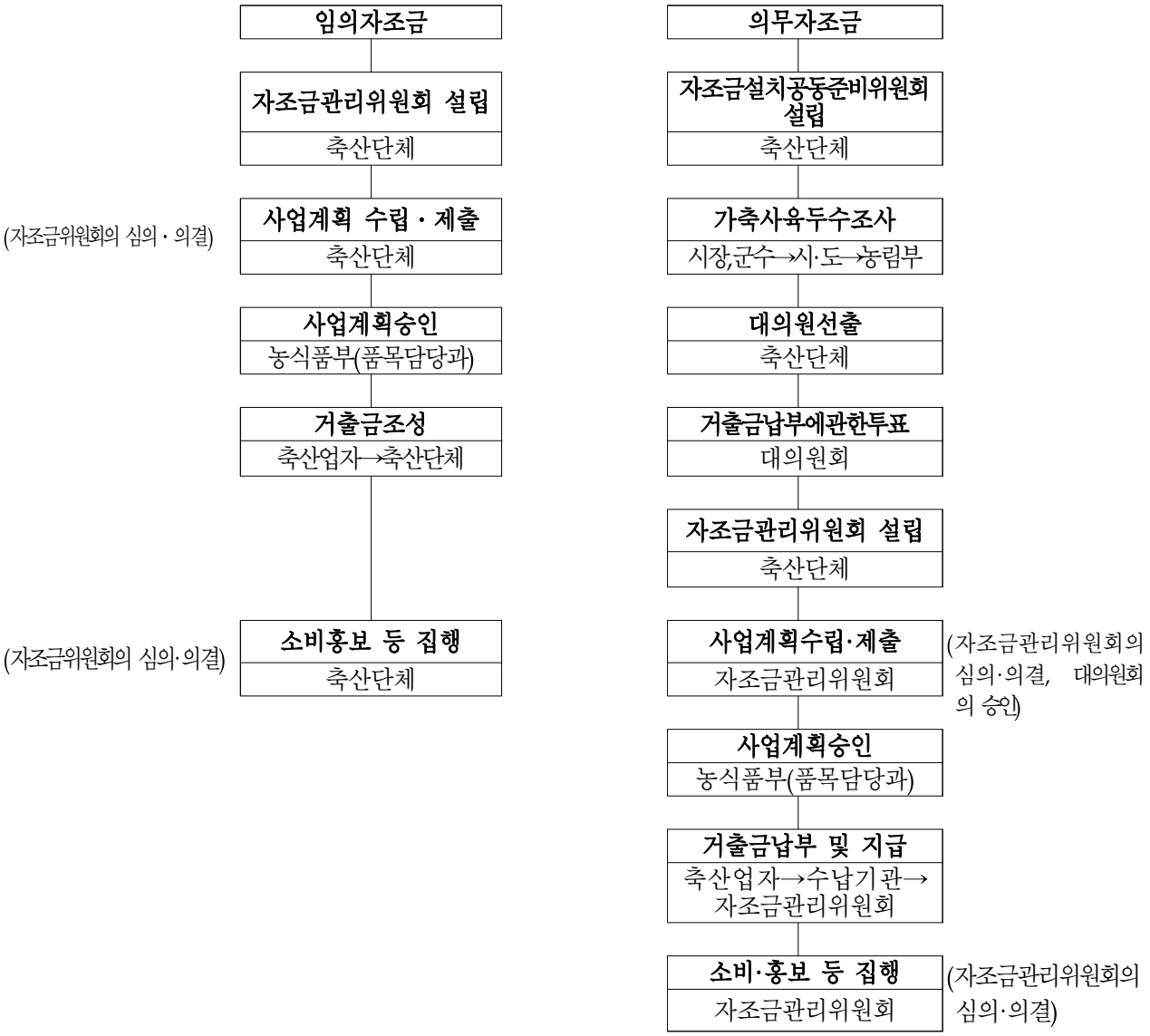

4-2 생산기반확충

축산분야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CCTV 등 방역인프라(말벌퇴치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 주요내용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200	200
국 고	-	-	100	100
융 자	-	-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신청시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334	334	미정
보 조	-	100	100	
융 자	-	100	100	
지방비	-	100	100	
자 담	-	34	34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1월)		농업인 등(전년도 12월~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대상자가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사업시행기관(1~12월)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말벌 퇴치 요령을 마련하여 농가 대상으로 교육(2월～)

* 지지체가 농가에 교육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 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교육내용에는 연초에 농가 스스로 말벌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5.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간 1회) 또는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6.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3년	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기계·장비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차년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가축분뇨처리지원</td><td>세목</td><td>자치단체경상·
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276)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27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27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280)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281)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282)
·공동퇴비장(마을형 퇴비자원화)(283)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84)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연계 시설장비 지원(287)
·부숙도 판정기 지원(289)
·악취측정ICT기계장비(296)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297,318)
·액비유통전문조직(298)
·액비저장조 지원(299)
·퇴비부숙도판정지원(317)
·퇴비유통전문조직(319)
·퇴액비 성분분석기 지원(320)</td><td>예산
(백만원)</td><td>45,049</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3">○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3">○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3">○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3">○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3">(단위 : 백만원/톤)
<table>
<tr><td>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td><td>70</td><td>100</td><td>150</td><td>200</td><td>250</td><td>300</td></tr>
<tr><td>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td><td>70</td><td>64</td><td>56</td><td>51</td><td>47</td><td>43</td></tr>
<tr><td>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td><td>100</td><td>92</td><td>81</td><td>73</td><td>67</td><td>62</td></tr>
<tr><td>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td><td>54</td><td>50</td><td>44</td><td>40</td><td>36</td><td>34</td></tr>
<tr><td colspan="7">※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td></tr>
</table></td></tr>
</table>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시설	개 별 농 가	500	300		200	
	법 인 체 등	2,000	800		1,000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79,962	153,865	133,606	154,444
국 고	43,223	36,908	35,050	45,049
지방비	43,205	39,509	33,162	39,319
융 자	65,822	55,710	48,295	55,523
자부담	27,712	21,738	17,099	14,5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박정미	044-201-2357 044-201-23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044-201-2351
		사무관 정창남	044-201-2357
		주무관 박정미	044-201-2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2020(p)
합 계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159,688
국 고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50,293
융 자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55,523
지방비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39,319
자부담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14,55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개별처리지원사업 5,000만원(총사업비 기준)은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 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① 축산농가 4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및 퇴비 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100ha이상 확보하여야 함(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키드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전문조직	30	50	-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 퇴비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 · 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⑥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바이오가스연계, ③에너지화)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마을형퇴비자원화)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마을형퇴비자원화) 마을내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계획 및 공동퇴비장 이용계획 등 퇴비 부숙관리 계획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퇴비·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 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20.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21.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1.3.05한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0.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20.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1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0.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0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20년 시범사업 후 '21년 추진 검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1년 예산배정 및 교부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8,040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EPC)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 경매, 등급판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신축 및 증설(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지원한도	신축(2년) 60~100억원, 증설.개보수(1년) 10~3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6,000	28,800	26,800
국 고	-	1,800	8,640	8,040
지방비	-	1,800	8,640	8,040
자부담	-	2,400	11,520	10,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유해리 유한상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9 044-410-706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신규 EPC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규모 이상로서 동 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축산법」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 시행을 전제로 지원

◦ 기존 EPC 개보수는 계란 일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 전제로 지원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준공과 함께 계란 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EPC) 운영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계획승인('19.12월 현재) :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신규 시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부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공판장 개설,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

- 시설 보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100만개(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0만개 미만 처리시설이어도 지원 가능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 총사업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60~100억원 규모이나, 60억원 미만이더라도 계란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계란 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사업자 소유)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시설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 다만, 총 사업비는 10~30억원 규모이나,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보완을 통해 1일 처리능력이 20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리적조건

○ EPC 신축부지는 가금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 시행단계 100%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름

* 다만, 농업법인의 설립 후 운영실적(1년 이상)은 적용 제외하고, 자본금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 신규법인으로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등록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라. 지원제한 기준

○ 신규 EPC(1일 6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된 지역의 경우 향후 3년간 신축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신규 E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이 경우 지자체장이 계란 생산, 유통량 등을 고려해 EPC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추천해야 심사 가능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1년이내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 (예시) 부지매매예정가가 지가를 시세의 50%이상 높게 책정하여 실거래가 어렵거나, 사업자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등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 계란의 자체 선별·포장시 발생하는 실금란 등 처리시설(간이 가공시설)

- 다만,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금란 등 발생물량 이상의 처리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간이가공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10% 내외로 제한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실금란 등 처리시설(간이 가공시설) : 할란기, 살균기, 저장탱크 등 액란가공시설(계란말이, 지단 등 2차가공품 생산시설 포함)

  * 간이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구운란, 훈제란, 반숙란 등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설계비는 전액 자부담 가능('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신규 EPC는 '공판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사업기간 중에 수립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준공전까지 관할 시·도시자에게 공판장 개설허가를 받아야 함

- 신규 EPC는 영업시작일부터 공판장 기능을 수행하여 공판장에서는 상장,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란을 거래하여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서 가격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 판매한 날의 거래물량 및 가격을 익일 12시(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평일 12시)까지 전자적 방법, FAX,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

- 다만, 천재지변, 경영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판장의 개설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연장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공판장의 휴업(재개업시기를 정해야함), 폐업, 시설 철거 및 폐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며, 지원시설이 상속, 양수도 등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그 의무가 승계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총 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 60억원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이어도 선정 가능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사업 신청서 제출(1.23일까지)

* ‘20년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결과에 따라 추가사업자 모집(수시)하고,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6.19일까지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EPC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결산재무제표(자기자본), ⑩ 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또는 지자체 의견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사업부지(건축물을 포함한다)가 담보제공이 되어 있더라도 지자체장이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추천 가능)

* 부지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지 확보(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 필요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 시행단계 100%

** 사업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부담금 50% 확보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2.12일까지)

*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7.10일까지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EPC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2.28일까지)

*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7.30일까지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 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EPC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21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3.31일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20년도 본 사업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3월)

* '21년 본 사업 신청서에 대한 단계별 평가 실시(8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순위 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사업자 선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2주이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 액에 대해서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9.12월말)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20.1월)

○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교부결정(‘20.2월~)

사업자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자 선정후 2주 이내)

* 향후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가능)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세부시행계획서 제출 후 2주 이내)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축평원, 농식품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세부시행계획서 제출 후 2주 이내)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공 통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등 조정건의 승인 주체는 아래표와 같음

<table>
<tr><th colspan="2">내 용</th><th>승인 주체</th></tr>
<tr><td colspan="2">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td><td>시·군 보고</td></tr>
<tr><td colspan="2">건축 설계변경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td><td>시·군 승인</td></tr>
<tr><td rowspan="6">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td><td colspan="2">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td></tr>
<tr><td>총 사업비의 0~15%</td><td>자체 조정</td></tr>
<tr><td>총 사업비의 16~30%</td><td>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td></tr>
<tr><td>총 사업비의 31~50%</td><td>시·도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td></tr>
<tr><td>총 사업비의 51% ~</td><td>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td></tr>
<tr><td colspan="2">*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td></tr>
<tr><td colspan="2">사업부지 변경</td><td>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td></tr>
<tr><td colspan="2">사업주체 등 중대한 사항</td><td>축산물품질평가원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td></tr>
<tr><td rowspan="3">총사업비 변경</td><td>0~19%</td><td>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td></tr>
<tr><td>20% ~</td><td>축산물품질평가원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td></tr>
<tr><td colspan="2">*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td></tr>
</table>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의무 면제(이 경우 사업자는 수의계약 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E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E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축은 사후관리기간 30년, 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며, 시설이 상속, 양수도 등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그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됨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EPC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EPC)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EPC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붙임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신규시설**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안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판장 운영 계획이 있는 자 입니까?		
		시설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EPC 운영자입니까?		
지원자격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입니까?		
기본요건		**신규시설** :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 하려는 자로서 시설·장비 등 요건을 충족합니까?		
		시설보완 :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합니까?		
사업규모	신규시설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 설치 계획입니까? * 60만개 미만이더라도 계란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예" 표시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실금란 등의 계란가공시설 연계 처리계획 등이 있습니까?		
	시설보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1일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보다 30%이상 개선할 계획입니까?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판매금액 기준) 이상입니까?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예" 표시		
시설성격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이 있습니까? **"예"⇒시설보완,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입니까? * 60억원 미만이더라도 계란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예" 표시		
		연간 최소 **25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시설보완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입니까? *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예" 표시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개별 농장에 딸린 EPC로서 다른 농가의 계란 반입이 없는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 신청단계 :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시행단계 100%)		
	이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관련 별표6에 정한 요건*을 충족합니까? * 운영실적(1년 이상), 자본금 확보기준(자부담금 이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 단,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아니오'에 표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신규법인으로서 사후 충족 계획인 경우 "예"에 표시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계란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간이 가공시설이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금란 등 발생물량 이상의 처리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지 검토되었습니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안전관리인증(HACC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가능합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대형 계란유통센터(1일 60만개 이상 처리)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 다만, 사업 시행지침(p.6)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아니오" 표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계란유통센터(E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A	B	C	D	E	평점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의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E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 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계란 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계란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생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E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E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종합계획	o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3					
가점 관련사업 연계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가점 관련사업 연계	o 자체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소 계(2)	3개 지표	9점					
합 계		**109점**					

<별지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서

<table>
<tr><td>사업자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HP)</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출자금</td><td>백만원</td><td>조합원수</td><td>명</td><td>사업 구분</td><td>신규, 보완</td></tr>
<tr><td rowspan="2">시설
보유현황
(㎡)</td><td>대지/건물</td><td>냉장실/보관창고</td><td>사무실 등</td><td colspan="2">선별,세척,포장 등
자동화기기</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대/처리능력(H)</td></tr>
<tr><td rowspan="2">사업
예정부지</td><td colspan="2">소재지(지번)</td><td>부지
확보여부</td><td>용도</td><td>건폐율(%)</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신청
사업비</td><td>계</td><td>국고(30%)</td><td>지방비(30%)</td><td colspan="2">자부담(40%)</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주1. 상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에 기재

<별지 2>

계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사업추진실적

[2018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주) 상표명 : ○○ 계란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계란 유통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17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2016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라. 기존시설 보유현황

저 온 저장시설	냉장실	일반창고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기타 유통장비
동 ㎡ ( )	동 ㎡ ( )	동 ㎡ ( )	조 ( )	조 ( )	조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마. 사업 참여 계란생산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비 고

바. 관내 계란 생산농가 중 비참여 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미 참여사유

사. 관내 계란유통센터 현황

시설명	참여농가수	처리능력	1일생산량(만개)	보유시설종류	비 고

사.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계란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지목 :)

◦ 용도지구 :

◦ 건폐율 :

◦ 용적율 :

◦ 관련 규제 검토 내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행위제한 내용 기재

- 지구단위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시굴 여부 등 관련규제 해당여부 검토내역 상세 기재

<관계법령명 및 관련 규제내용, 검토결과를 상세히 기재, 단순히 "부"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현시 "0점"처리 예정>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시·도	시·군	
계						
설계·감리 및 컨설팅						
토목						
소방,전기,통신						
집하,선별,포장장						
간이 가공시설						
저온창고 등						
사무실 등						
선별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						
위생설비						

(주) 부지구입비,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 제외

◦ 시설 설치계획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붙임의 엑셀양식)*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EPC시설 설치자금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E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생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사업계획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계란유통센터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매출액 (억원)	취급물량 (만개)	계약생산액 (억원)	계약생산비율 (%)	영업이익율 (%)
2020년					
2022년					
2024년					
증감(%)					

□ 계란 생산-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EPC 설립 및 산란계농장 수직계열화 등 유통주체로서 규모화, 전문화 발전목표와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 등

나. 추진전략

◦ 계란유통센터의 규모화, 전문화,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등과 연계 및 우수 생산농가 참여전략 등

다. 사업물량 확보 및 처리계획('20 ~ '24)

□ 사업물량 확보

구분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농가수	생산물량	참여농가	생산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A)	매 취(B)
	호	만개	호	만개	만개	만개	만개
2020년							
2021년							
계							

□ 사업물량 처리

구분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 보관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계선별	수작업	
2020년								
2021년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라. 추정 손익계산서

□ 2020년(사업완료 초년도부터 5개년 작성)

구 분		금 액(천원)	산 출 근 기
매출액(취급액)			
매출 원가	매입대금		
	부대비용		
	계		
매출총이익(A)			
비용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 건 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계(B)		
영업 이익(A-B)			

□ 2021년 ~ 2024년까지 연도별 작성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계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계란유통센터 규모화, 전문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소규모농가의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전략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계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 계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기 타

◦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1>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등 서식

○○계란유통센터 사업 개요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00, 지방비 3,000 자부담 4,0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0000㎡
- 건축 연면적 : 0000㎡

○ 선별 등 기계장비
- 00000 장치 1식
- 00000 설비 1식

○ 세척, 선별, 포장 등 능력
- 연 최대 만개(톤), 일 최대 만개(톤), 시간당 최대 만개(톤)

○○계란유통센터 부지 전경 사진

○○계란유통센터 조감도(생략 가능)

설 계 개 요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26-3번지 일원		
	지 역,지 구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 추진중)		
	사업구역면적	52,086.00M² (15,755.94평)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용지면적	32,620.00M² (9,867.51평)		
	공 공 용 지	완충녹지 : 12,639.00M²		
		도 로 : 5,315.00M²		
		공공공지 : 1,512.00 M²		
		합 계 : 19,466.00M²		
	건 축 면 적	8,640.00M² (2,613.59평)		
	연 면 적	10,463.60M² (3,165.22평)		
	건 폐 율	8,640.00 / 32,620.00 X100 = 26.49 %	법 적	40% 이하
	용 적 율	10,463.60 / 32,620.00 X100 = 32.08 %	법 적	100% 이하
	법정주차대수	10,463.60 / 300 = 34.9대	계획주차대수	42 대
	조 경 면 적	8,573.20 M2 (26.28%)	법 적	10% 이상
	장 애 조	-		

위 치 도

동 별 개 요

동별개요	구 분	건 물 명	구 조	층 수	건축면적(㎡)	연 면 적(㎡)	최고높이(M)
	건 축 물	신 동 관	R.C&철골조	지상 2층	7,344.00	9,167.60	11.3
		저 장 고	R.C&철골조	지상 1층	1,296.00	1,296.00	11.3
		계			8,640.00	10,463.60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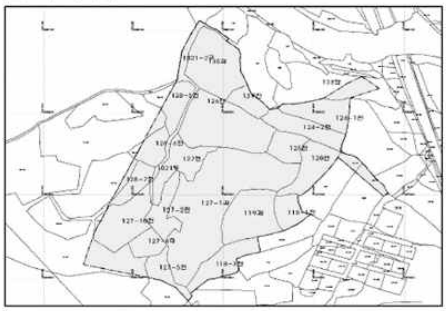

○○계란유통센터 시설 배치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1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2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정면 및 측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종 및 횡 단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선별기 등 구성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법인이 참여한 경우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계란유통센터와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 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계란유통센터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란유통센터시설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계란유통센터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9)'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지원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또는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설계 ②감리, ③건축(일반), ④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⑤일반창고(건축, 설비포함), ⑥설비(선별시스템 등), ⑦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계약담당자는 선별, 세척, 포장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 추진

- 다만, 상기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민간보조사업자가 합의하여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의 업체 선정 필요

○ 설계·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냉동공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서(기술사의 인감이 찍힌 설계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장비의 경우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등)의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장비 구매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E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사업자금 집행시 국고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 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함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감리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 장비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사업비 100억원 기준)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세척, 중량, 검란, 포장 등)는 공정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세척·건조기 : 물·브러쉬·에어세척 등이 가능한 기종

   * 물세척의 경우 냉·온수 공급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살균·세척이 가능하고 불림 및 헹굼공정을 거쳐 건조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고, 물세척한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유통하여야 함

2. 중량선별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파각·혈반검출기 등 품질관리 설비장착이 가능한 기종

3. 파각·혈반검출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중량선별기의 선별결과 데이터관리와 호환 가능한 기종

4. 오란검출기 : 고품질계란 생산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하고, 검란작업자에 의한 오란 및 파각란 선별을 위한 검란실 설치는 필수

5. 난각인쇄기 : 중량선별기의 처리능력에 상응하는 인쇄 장비 설치, 허용오차 0.1%

6. 자동포장기 : 10구(12천개/h), 15구(8천개/h)

   - 상기의 포장처리 능력을 충족하는 포장설비를 갖추고, 30구는 비닐랩핑이 가능한 장비 구비

<부대사항>

1. Off-Line인 경우 산란농장별 선별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고, 투입은 자동투입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 세척 부러쉬의 탈착이 가능하여 살균소독 및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신제품과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신속한 A/S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지붕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2. 벽체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3. 바닥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보관창고 등

○ 원료란 창고, 선별·포장 작업장, 제품란 창고, 부자재 창고, 출하장 등은 구획을 구분하여 교차오염 차단 및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5. 저온시설

○ 냉장기계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유닛쿨러(UNIT COOLER)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6.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7.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292)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293)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291)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294) - 산지생태축산농장 교육·홍보 지원	예산(백만원)	709
사업목적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비,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비용, 기계·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농업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지원한도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초지조성	50	-	50	-
	초지조성부담금	40	30	-	30
	컨설팅	40	30	-	30
	기계·장비	10	30	30	30
	기반시설	-	-	80	20
	교육·홍보	100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950	3,275	709	70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남기헌, 김소연	044-201-2352, 2354

신청시기	매년 1~2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 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 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5.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 (지정농장)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선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 및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 (재지정) 3년마다 지정농장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선정농장의 경우 지정농장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하여 지정 가능

○ 신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규 신청 농가와 분야별 자문위원을 1:1로 연결하여 컨설팅 지원

- (방법) 사업신청시 요청하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문위원과 1:1 연결

- (자문위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매년 위촉

- 산지생태축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지원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9.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20.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20.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20. 3~4월)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20.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20. 4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20. 4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선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Ⅲ 202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 신청

○ 2021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년 사업과 동일하게 시·군에 신청(’20. 1월)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사업신청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신청 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일하게 2021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동일조건일 경우 2020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table>
<tr><td rowspan="2">초지면적
(㎡)</td><td rowspan="2">계</td><td colspan="2">초 지</td><td colspan="2">임간방목지</td></tr>
<tr><td>자가</td><td>임차
(국·공·사유지)</td><td>자가</td><td>임차
(국·공·사유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보유현황
(㎡/동/대)</td><td>관리사</td><td>축사</td><td>축산시설</td><td>기계·장비</td><td>기타</td></tr>
<tr><td>0 동
(㎡)</td><td>0 동
(㎡)</td><td>0 동
(퇴비사 ㎡)
(_____ ㎡)</td><td>_____ 대
_____ 대
_____ 대</td><td></td></tr>
<tr><td rowspan="2">현재사육
축종
(마리수)</td><td>한우·육우·
젖소</td><td>닭</td><td>오리</td><td>염소·산양·
면양</td><td>토끼 등
(소수가축)</td></tr>
<tr><td>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td><td></td><td></td><td>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td><td></td></tr>
<tr><td rowspan="2">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td><td rowspan="2">매출금액</td><td rowspan="2">순이익금액</td><td colspan="3">자산 규모</td></tr>
<tr><td colspan="2">자산</td><td>부채</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table>
<tr><th>구 분</th><th>세부항목</th><th>배점</th><th>득점</th><th>득점근거</th></tr>
<tr><td rowspan="2">조사료 확보</td><td>○면적 ㎡
- 자가지 ㎡
- 임차지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td><td>200</td><td></td><td>
<table>
<tr><th>한우, 육우, 젖소, 말</th><th>염소, 유산양</th><th>소수가축</th><th>배점</th></tr>
<tr><td>10만㎡이하</td><td>5만㎡이하</td><td>5만㎡이하</td><td>50</td></tr>
<tr><td>10~15만㎡</td><td>5~10만㎡</td><td>5~7만㎡</td><td>100</td></tr>
<tr><td>15~20만㎡</td><td>10~15만㎡</td><td>7~10만㎡</td><td>150</td></tr>
<tr><td>20만㎡ 이상</td><td>15만㎡ 이상</td><td>10만㎡ 이상</td><td>200</td></tr>
</table>
</td></tr>
<tr><td>○조사료 자급률</td><td>200</td><td></td><td>· 40%이하 : 50
· 40~60% : 100
· 60~80% : 150
· 80%이상 : 200</td></tr>
<tr><td rowspan="3">가축 사육환경</td><td>○가축사육 밀도 (두/ha)</td><td>200</td><td></td><td>
<table>
<tr><td>점수</td><td>200</td><td>150</td><td>100</td><td>50</td></tr>
<tr><td>한우·젖소</td><td>3이하</td><td>4~5</td><td>6~7</td><td>8~</td></tr>
<tr><td>염소·유산양</td><td>30이하</td><td>30~50</td><td>50~70</td><td>70~</td></tr>
<tr><td>엘크사슴</td><td>6이하</td><td>8~10</td><td>12~14</td><td>14~16</td></tr>
<tr><td>사슴</td><td>15이하</td><td>20~25</td><td>30~35</td><td>40~</td></tr>
</table>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td></tr>
<tr><td>○개발부지의 적합성</td><td>100</td><td></td><td>
<table>
<tr><td>구분</td><td>0~8°</td><td>8~15°</td><td>15~25°</td><td>25°이상</td></tr>
<tr><td>경운초지</td><td colspan="4" rowspan="3">· 적 정 : 100
· 보 통 : 70
· 미 흡 : 50
· 매우미흡 : 30</td></tr>
<tr><td>불경운초지</td></tr>
<tr><td>임간초지</td></tr>
</table>
</td></tr>
<tr><td>○시설설치 확충 정도</td><td>50</td><td></td><td>· 분뇨처리시설 : 50
·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 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td></tr>
<tr><td rowspan="2">사업확대 의지</td><td>○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등 종합평가)</td><td>150</td><td></td><td>· 우수 : 150
· 보통 : 100
· 미흡 : 50</td></tr>
<tr><td>○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td><td>100</td><td></td><td>· 우수 : 100
· 보통 : 70
· 미흡 : 50</td></tr>
</table>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 인	□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 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40	32	24	16	8	
소계(B)		100					
평가자 의 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20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 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별지 제6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보조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5										
'16										
'17										
'18										
'19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5	'16	'17	'18	'19	계
계						

[별지 제7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별지 제8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 **로고 의미** : 산지생태축산 모델이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기 위해 주요 요소인 초지, 울타리, 사람, 자연, 동물을 조화롭게 구성함. 주요 축종인 한우, 젖소, 염소, 면양을 Shape으로 표현하였고, Green과 Sky blue는 자연과 하늘, Yellow는 동물, Red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함. 축종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과 굵은 선은 울타리와 넓은 초지(원)을 의미함

○ **로고 TYPE A**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좌우조합 기본형

좌우조합 응용형

○ **로고 TYPE B**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좌우조합 기본형

좌우조합 응용형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조사료생산기반확충</td><td>세목</td><td colspan="2">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td><td>예산
(백만원)</td><td colspan="2">76,592</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6">○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6">○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6">○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6">○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td></tr>
<tr><td>재원구성
(%)</td><td>국고</td><td>10~50</td><td>지방비</td><td>30~60</td><td>융자</td><td>30~100</td><td>자부담</td><td>10~70</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현황</td><td colspan="8">(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r>
<tr><td>합 계</td><td>104,263</td><td>97,093</td><td>87,384</td><td>83,079</td></tr>
<tr><td>보 조</td><td>81,839</td><td>80,435</td><td>76,577</td><td>76,592</td></tr>
<tr><td>융 자</td><td>22,424</td><td>16,658</td><td>10,807</td><td>6,487</td></tr>
</table></td></tr>
</table>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박수연	044-201-235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0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서기관 권우순	044-201-2351 044-201-2355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부 장 조재철 팀 장 최강필	02-2079-8440 02-2079-84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53,984	157,707	136,291	119,608	104,263	97,093	87,384	83,079
보 조	106,697	110,125	94,309	81,326	81,839	80,435	76,577	76,592
융 자	47,287	47,582	41,982	38,282	22,424	16,658	10,807	6,48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볏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파종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짚류 제외)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중량계근방법: 전량계근 또는 표본계근[곤포사일리지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또한, 시·도(시·군)은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영 가능

* 관외 유통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준용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 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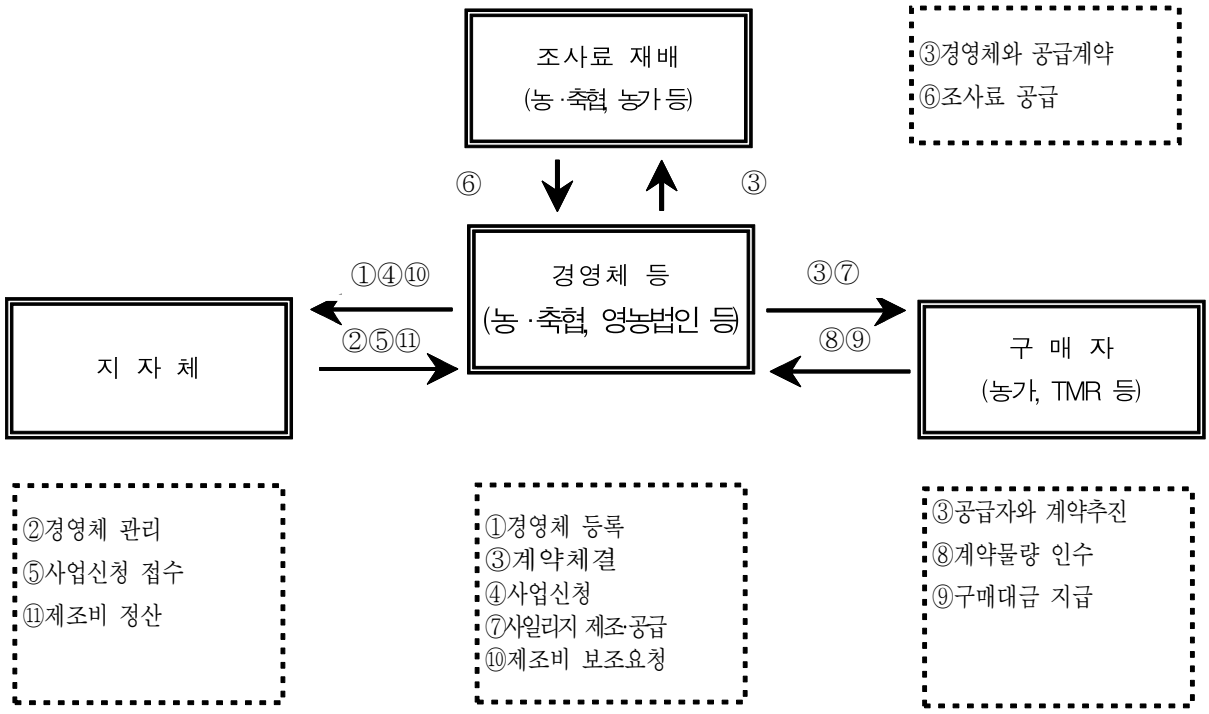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동계 C등급·하계 B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이상 :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5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타 시·군으로 50㎞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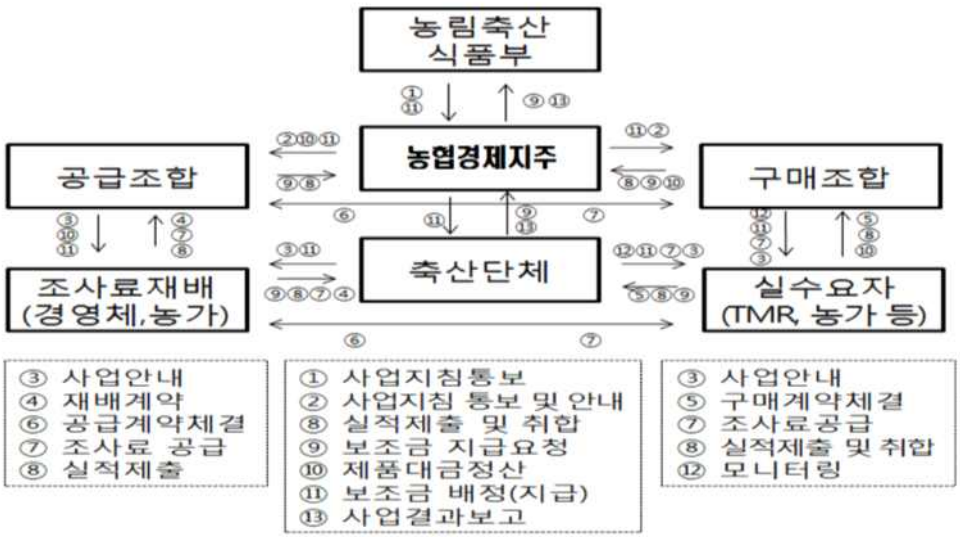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 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진주조(펄밀렛),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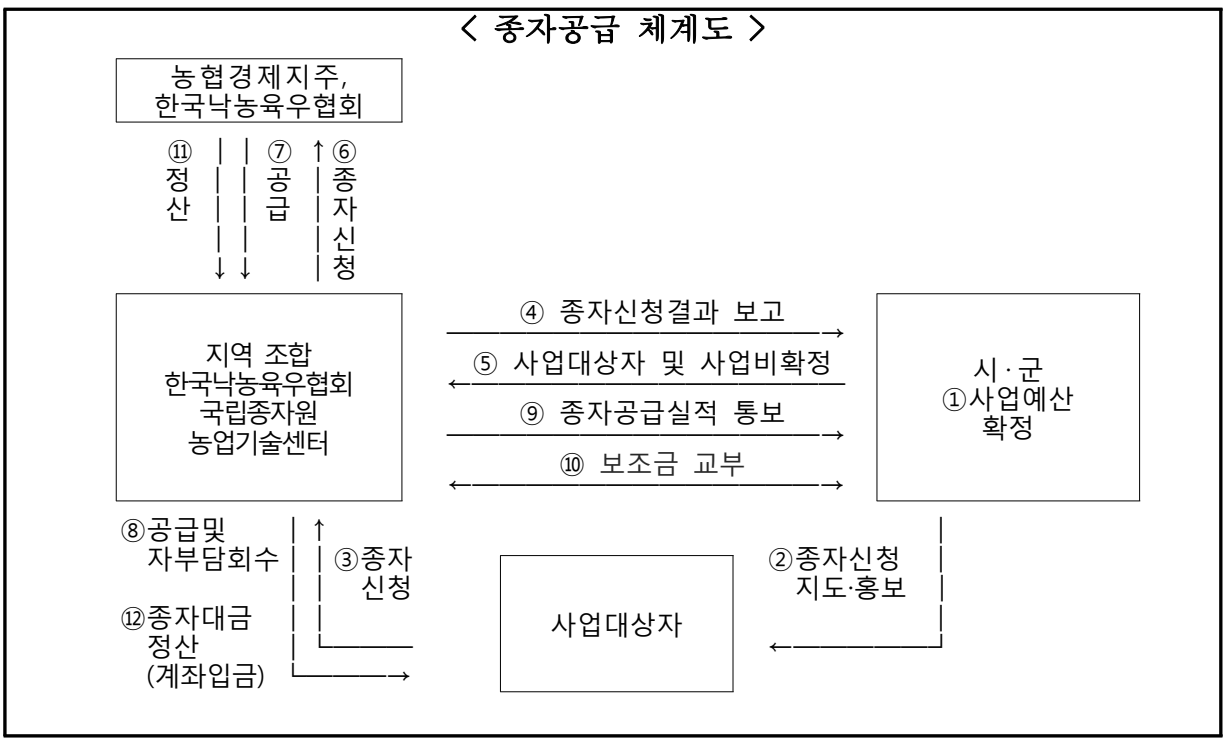

⑤ 초지조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존 TMR 공장 내 운영 병행 시 지원 제한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계약서 등 :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 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 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9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2021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

□ 국내산 조사료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21년부터는 '20년도 조사료 생산·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21년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평가반영실적(안) : '19년 10월 ~ '20년 9월

○ 평가항목(안) :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 예산 실집행 실적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0.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 · 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랩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형 식 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6cm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 · 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베스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서식 1>

202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획							실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ha)							톤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⑤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⑥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ha)							톤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자 담											-
	계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계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청 보 리											
호 밀											-
라이그라스											-
귀 리											-
기 타											-
계	-	-	-	-	-	-	-	-	-		-

<서식 3>

0000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 ·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20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A+B)
계					

<서식 5>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서식 6>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원실적												
		사업비(천원)				사업량(대)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2020년도 사료작물 · 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2까지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 실적(단위 : 톤, %)

			생산량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	비 고
					국내산	수입산	계		
생산능력 : 톤/일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 함.

<서식 9>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소포장		원형베일		계(A+B)	비 고
			생산량(A)	가동율	생산량(B)	가동율		
소포장조사료생산능력 : 톤/일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베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10>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융자 각 1,50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융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000	5,000	5,000	3,000
국 고	3,000	1,500	1,500	900
융 자	3,000	1,500	1,500	900
자부담	4,000	2,000	2,000	1,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31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건물 신축시 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10월)		법인·조합 등(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0.31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11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 법인 내부의견 합치여부,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1.15일 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11.15일 까지)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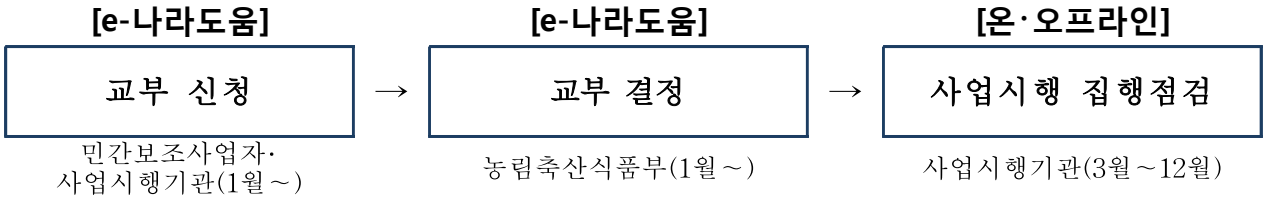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결정)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 (~12월)		농림축산식품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2">전화번호</td><td></td></tr>
<tr><td>축산업 종사경력</td><td colspan="2">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3">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2">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참여농가수</td><td colspan="3">호</td></tr>
<tr><td colspan="3">법인 내부 의견 합치 여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td></tr>
<tr><td>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 colspan="2">자부담</td></tr>
<tr><td>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7"></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 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 타 시 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농가수</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 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2">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td><td colspan="4">사 업 비 (백만원)</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2">(㎡)</td><td>합계</td><td colspan="2">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계 / 보조 / 대출</td><td>지방비</td><td>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법인 내부의견 합치 여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축산분야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계약신청 기간 : 매년 1. 1. ~ 5. 31.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

- 농협경제지주,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 사업시행기관과 시장·군수는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협동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지역 농·축협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가의 사업참여 신청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매년 1. 1(계약일)~ 12. 31(1년간)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경제지주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경제지주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 자금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매년 11.30일 이후)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자금 관리 전반(농협경제지주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경제지주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사업시행체계》

사업안내	☞	계약체결	☞	송아지생산신고
· 안정제사업내용 · 안정기준가격 ·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5개월 ·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 생후 30일이내 사업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	보전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등록		· 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시군별 소요보전금 배정(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64 친환경축산직불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585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9. 11. 1.~'20.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1,975	17,153	15,665	1,585
국 고	91,975	17,153	15,665	1,5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남기헌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최동철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9. 11. 1. ~ '20.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9. 11. 1.~'20.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9. 11. 1.부터 '20.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0.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0.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0. 3. 2. ~ 3. 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9.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1 ~ 2월)		친환경축산인 ('20. 3. 2. ~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와 '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14.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28.까지)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친환경인증기관협회 운영)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0.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9. 11. 1. ~ '20.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20.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20.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0.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20.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0.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농장현황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립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친환경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HACCP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	**회**

축종	인증 종류	농장소재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인증기관·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6제1항과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처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직불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1 경쟁력 제고

식품분야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예산 (백만원)	980
사업목적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3개월) 외식사업 실전경험에 필요한 사업장, 주방기구 및 비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7개소)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	1,000	1,000	1,400
국 고	100	700	700	980
자부담	100	300	300	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식품외식기획부	이정은 엄유선	044-201-2157 061-931-0711

신청시기	'19.12월~'20.1월 (운영기관별 상이)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사업대상자 공모 후 서류 및 실기 평가를 통해 선발

3. 지원대상

○ 사업장(청년키움식당)

○ 주방기기 등 제반설비(소모성 비품은 제외)

○ 교육 및 컨설팅(조리, 위생, 서비스, 매출관리 등)

○ 홍보 (매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협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차비 : 청년키움식당 연간 임차비(관리비 포함 연간 60백만원 이내)

- 보증금 및 권리금 지원불가

○ 설치비 :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외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 설치비용

-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함

○ 인큐베이팅비 : 사업운영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연간 30백만원 이내), 교육·컨설팅비, 참가팀 모집 및 사업장 홍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개소당 연간 총사업비 2억원 한도내 국고보조 70%, 자부담(청년) 30%

- 자부담 : 식재료비, 관리비, 세금,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대상 참가팀별 1~3개월 인큐베이팅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주관기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0월)		사업시행기관(전년 10월)		법인・단체 등(1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모집을 위해 e-나라도움 또는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의 경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신청방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사업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인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장 확보여부, 교육·컨설팅 역량, 사업대상자 확보방안, 사업비 운영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등록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부적합,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사업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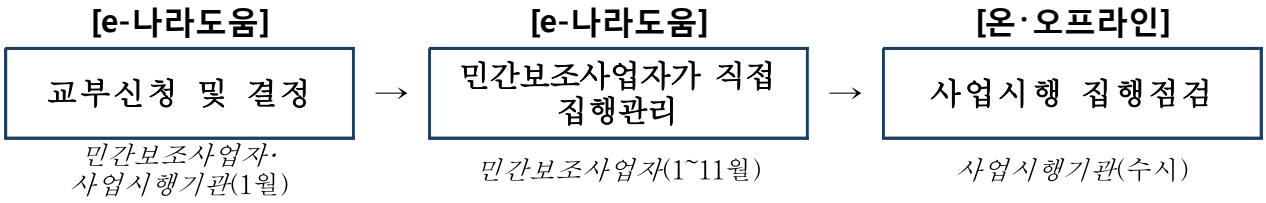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한다.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의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하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한다.

- 농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연 2회이상 사업자의 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해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업결과 보고**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업시행기관*(익년1월)		사업시행기관(익년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확정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운영 중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로 등록·관리한다.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른다.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10월말까지 사업운영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최종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e나라도움에 등록).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세부사업명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세목	융자금
내역사업명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식품원료계열화**	예산 (백만원)	**157,000**
사업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가공원료매입 및 부대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한도	○ 식품가공원료매입 : 50억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소규모창업)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억원 ○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 : 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20억원 ○ 식품원료계열화 : 10억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50,350	169,000	181,250	196,250
융 자	120,280	135,280	145,000	157,000
자부담	30,070	33,820	36,250	39,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이용직	044-201-2131
		사무관 강태원	044-201-2138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	044-201-2151
		사무관 류성훈	044-201-215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부 장 한순철	061-931-1140
		차 장 배성진	061-931-1141

신청시기	정기(전년12월~4월), 수시(잔여예산 발생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가공원료매입

- 국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대표자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름

※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수 10인 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식품원료계열화

-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과 계약재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선정(배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 사회적기업인증, 벤처인증기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또는 가점 부여
- 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자금은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 약정)한 경우 가점 부여

○ 지원 제외기준

-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농식품원료구매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적발된 자
- (외식업체육성)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 또는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업체, 주점업, 숙박업 등 타업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전통주점은 지원 포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3. 지원대상

○ 식품가공원료매입 :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 농식품시설현대화 :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계기구(설비) 도입, 가공공장 매입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 개설·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매장 신축·인테리어 공사비·주방시설·설비비·비품 집기 구입, 국산 식재료 구매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부대비

○ 식품원료계열화 :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농업인과 계약재배하여 매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융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0%

  식품원료계열화 :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 자금별 일정 요건 충족시 금리 우대(고정금리시 1% 금리 인하)

- (변동금리)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고정 또는 변동)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

○ 융자기간

- 식품가공원료매입 : 운영자금 1년(전통주류는 2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 1년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 시설자금 : 시설 기성금액이 지원액의 125%이상, 인증취득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가공원료매입 : 50억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농업인대표 소규모창업기업 12억원(운영 2, 시설 10)

○ 외식업체육성 : 12억원(운영 10억원, 시설 2억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40억원(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 식품원료계열화 : 10억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지원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대출일로부터 융자금 상환 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또는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

-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붙임]

2020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10">신청업체현황</td><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td><td></td></tr>
<tr><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여부</td><td></td></tr>
<tr><td>사업유형
(해당분야
✓표시)</td><td colspan="4">☐ 농식품 제조·가공업 ☐ 외식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td></tr>
<tr><td>사업체구분</td><td colspan="4">☐ 농어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 조합 등 일반업체</td></tr>
<tr><td>매 출 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종 업 원 수</td><td>명(사무직 , 생산직)</td></tr>
<tr><td rowspan="5">소 재 지</td><td rowspan="2">본사</td><td colspan="3">주소: (-)</td></tr>
<tr><td>전화:</td><td>팩스:</td><td>홈페이지:</td></tr>
<tr><td rowspan="3">공장</td><td colspan="3">주소: (-)</td></tr>
<tr><td colspan="3">규모 : 부지 평, 건물 평</td></tr>
<tr><td colspan="2">전화:</td><td>팩스:</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 rowspan="3">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td><td colspan="4">☐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td></tr>
<tr><td colspan="4">☐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외식업체육성지원</td></tr>
<tr><td colspan="4">☐ 식품원료계열화</td></tr>
<tr><td rowspan="3">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
총사업비의 80% 이내)</td><td>시설자금</td><td colspan="3">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td></tr>
<tr><td>운영자금</td><td colspan="3">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td></tr>
<tr><td>합 계</td><td colspan="3">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td></tr>
<tr><td colspan="2">인증취득 및 지정현황</td><td colspan="4"></td></tr>
</table>

2020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5. 농업인확인서(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신청 소규모식품제조업체 중 대표자가 농업인인 경우)
6.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전통주 제조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신청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배정)우선순위

5-2 생산기반확충

식품분야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전통장류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 제어 모델 개발 및 기능성·우수성 규명으로 장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모티터링) 전통장류 40개 업체 선정하여 제품별 안전성 분석 ○ (페러독스) 전통장류 4개 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선정 기능성, 우수성 규명 * 평가항목: 비만, 독성, 장기능 개선, 혈액검사, 마이크로바이옴검사 * 평가방법: 세포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장류 및 발효미생물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		
지원한도	○ 60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0% 국가 보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	600
국 고	-	-	-	-	300
지방비	-	-	-	-	300(자부담)
자부담	-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승국 주태진	044-201-2134 044-201-2135

신청시기	당해년도 1분기	사업시행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장류 및 발효미생물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출연 연구기관, 공인분석기관

*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부담 또는 지방비 50%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장류 안전성 분석이 가능한 시설, 장비, 인력을 보유한 기관(공인분석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협약된 경우 포함)

○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나트륨 저감 연구 및 위생안전 관리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3. 지원대상

○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및 기능성 규명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 시험(세포실험, 동물실험, 안전성 분석 등) 및 인체 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 장류 유해물질 제어 기술 및 소규모 HACCP 매뉴얼 연구 등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해물질 제어 매뉴얼 및 소규모 HACCP 모델 개발 비용

○ 인체 적용시험

- 인건비(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체 참여하는 연구원),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검사비, 피보험자보상비,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연구활동비, 임상시험비용), 간접비(간접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 총사업비의 50% 지방 또는 민간 자부담

○ 사업범위

- 장류 제조업체 40개소를 선정하여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안전성 분석
  * 분석항목 : 유해미생물(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병원성대장균),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바이오제닉아민), 나트륨
-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유해물질 제어 매뉴얼 제작
-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소규모 HACCP 매뉴얼 제작
- 전통장류 4개 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을 통한 기능성 및 우수성 규명
  * 평가 항목 : 비만, 독성, 장기능 개선, 혈액검사, 마이크로바이옴검사
  * 평가 방법 : 세포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600백만원 * 총사업비의 50% 국고 보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월)		연구기관(1월~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지원, 농식품 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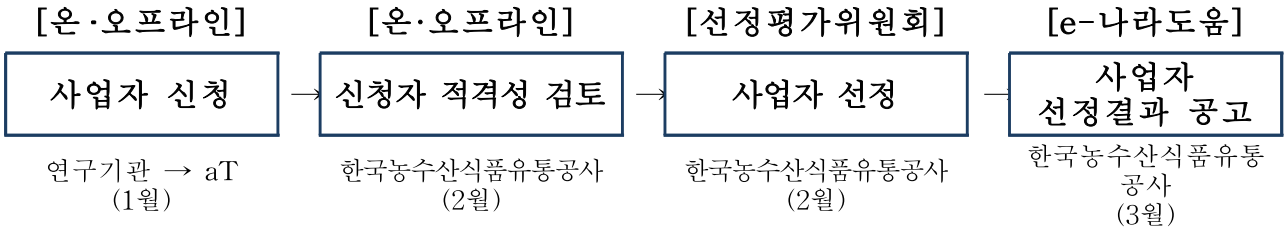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선정된 사업자는 연구반(컨소시엄 가능)을 구성 및 연구계획서를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업 수행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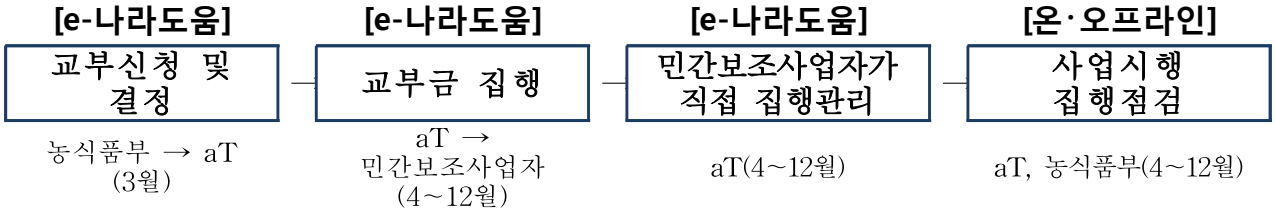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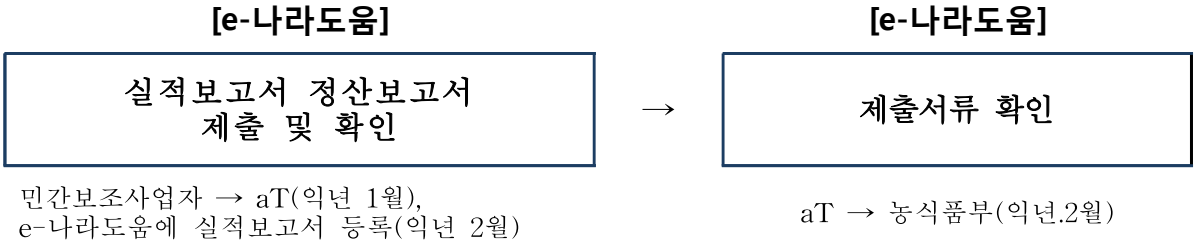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21.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68 전통주산업진흥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주 산업진흥			예산 (백만원)	2,878		
사업목적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정책연구, 전통주 유통 활성화, 전통주 품질 고급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지원한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82	3,820	1,978	2,878
국 고	3,682	3,820	1,978	2,87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박진희 이순영	044-201-2136 061-931-073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 산업진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선정우선순위 : 별도의 선정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산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름(예. 통계조사용역비, 전통주 홍보사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전통주 품질 고급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전통주 정책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지원)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사업 수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시)		사업대상 업체, 기관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7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5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1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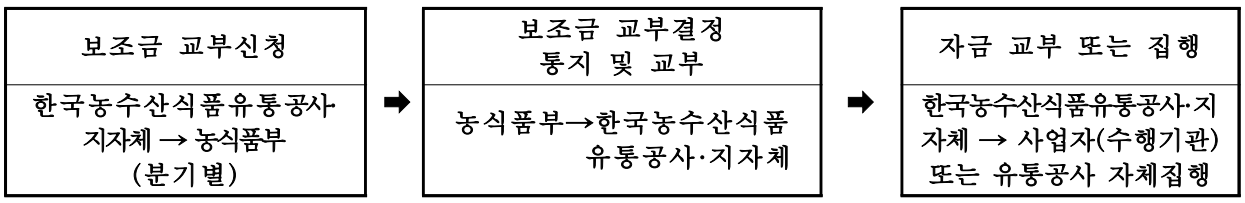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또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익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종균을 발효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업체에 맞춤형 유용 종균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 종균을 활용하여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종균을 확보하고 보급 등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제조업체별 40백만원(최고 50백만원 한도) * 종균보급기관의 종균비 및 기술이전 등 관리 비용은 최대 50% 이내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400	600	1,000
국 고	-	-	200	300	500
지방비	-	-	200	300	500
자부담	-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승국 주태진	044-201-2134 044-201-2135

신청시기	전년도 3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 종균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 수입종균은 제외)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17~'20)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종균을 활용한 발효식품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 종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종균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사업기간 내의 보조사업 물량에 한해서는 제조업체에 미생물사용료(기술료) 면제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사업신청 제한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3. 지원대상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연계하여 유용균주를 보급하고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필하고 생산 품목에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제조 등록된 기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비 등 재료비, 경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지방계약법,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 일반관리비의 반영 :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제조업체) 유용 종균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포장재 개선 등 비용,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농산물 원료는 국내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1년(2019년)

* 본 사업종료 후 종균 계속 사용을 위한 전용, 통상 실시권 계약 등은 기관과 업체 간 별도 협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업체 1개소 당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을 기준으로 최대 50백만원

* 종균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제조업체 1개소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A업체와 B기관이 세부사업내용을 별도 협약)

예시) A업체 총 보조금이 40백만원인 경우, A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B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 이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11월 초)		시·도(11월)		시·도 → 농식품부(11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11월 초)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적격 사항 등에 대한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 후 농식품부로 신청(11.19까지)

*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 4개소(제주 포함), 세종 1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단일 품목류는 도별 3개 이내)

** 사업비의 50%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경우 신청불가(매칭가능 시기를 포함한 지자체 확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1~2)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신청(11.18.까지)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3~4)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신청(11.18.까지)

* 제조업체는 시·도에서 취합,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사업계획서 직접 제출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11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11월 중)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가계획 시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7인 이내
- 구성범위: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가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는 비대면 심사, 발표심사는 대면 심사로 진행

** 신청업체가 20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 진행

○ 제조업체 심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로 상위 20개소를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상위 15개소를 1차 사업자로 선정
-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의 사업자를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체는 총 15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2개(장류, 식초류) 각 품목부류별 선정 업체수는 최대 10개 이내

*** 1차 사업자가 속한 지자체가 지방비를 **'20년 5월말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와 1차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차순위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음**

○ 종균 보급기관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적합여부로 사업자 선정

* 과거년도 본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12월 초)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협약체결 방식 등 협의)(12월 초)

* 사업자가 종균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적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 예산 조정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2.31.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할 종균보급 및 제품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12.31.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점검
농식품부, 시.도('20.1월)		시.도, 시.군(1~12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1.10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보급하고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12.15까지)

- 결과보고서: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 증빙: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식품부

○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은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3.21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31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3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7) → 시장·군수('20.7) → 시·도지사('20.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보급기관)
○ [별지 제4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 [별지 제5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요건확인서(자치단체)
○ [별표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 [별표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원료 사용량(톤)	*콩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등*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끝.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11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최대 50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개월)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6) 000백만원 → ('17) → ('18)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제품의 용도 및 특징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기재		
제작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수행내용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月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합 계			

※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최대 50%)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 양산화 계획

○ 판매 계획

○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 파급효과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보급기관)

<table>
<tr><td rowspan="2">법인·기관명</td><td rowspan="2"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담당자</td><td colspan="2">부서명:</td><td>직 급:</td><td>성명:</td></tr>
<tr><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2">핸드폰:</td></tr>
<tr><td colspan="2">팩 스:</td><td colspan="2">e-메일:</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4">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td></tr>
<tr><td colspan="5">상기와 같이 년도「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나. 기본현황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담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 *조직도*

○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자원 확보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사업추진방향*

5. 사업 세부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6. 예산 집행계획

가. 비목별 예산편성

나.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7.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 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8.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표 1. 제조업체 서류평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예상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용도 및 특성(20)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은 적정한가?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합 계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별표 3. 종균 보급기관용>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 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70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예산 (백만원)	96		
사업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48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한도 내 지원(4개 업체 선정)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 고	-	96	96	96
지방비	-	96	96	96
자부담	-	48	48	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박진희 이순영	044-201-2136 061-931-0731

신청시기	1분기(2~3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의 선정 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조장 기념품 및 인테리어, 운영 컨설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40%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96백만원(예산한도), 각 업체별 국고 지원 24백만원 한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분기 중)		전통주 업체, 지자체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대상 공모(공문 시행 예정)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업주관기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지자체, 전통주 제조 업체)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3월)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분기중)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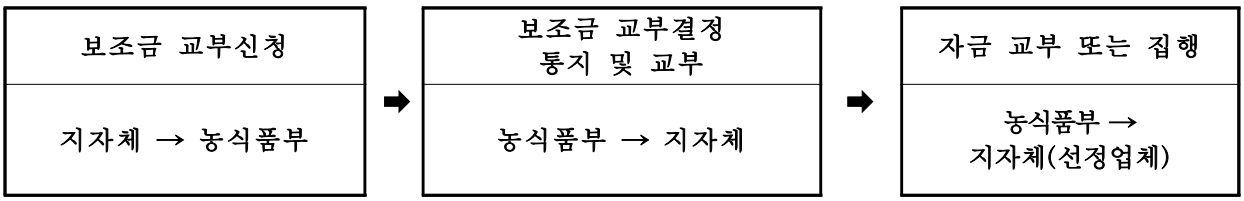

○ 지자체(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식품분야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예산 (백만원)	3,895
사업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과거 안전성 검사비용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50천원/점(토양117, 용수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0,508,000	10,508,000	11,514,000	7,790,000
국 고	5,508,000	5,508,000	5,757,000	3,895,000
지방비	5,008,000	5,008,000	5,757,000	3,895,000
융 자	-	-	-	-
자부담	-	-	-	-

* 2016~2018 재정투입은 주산지안전성분석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신우식	044-201-2271
		사무관 김남진	044-201-227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전진석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구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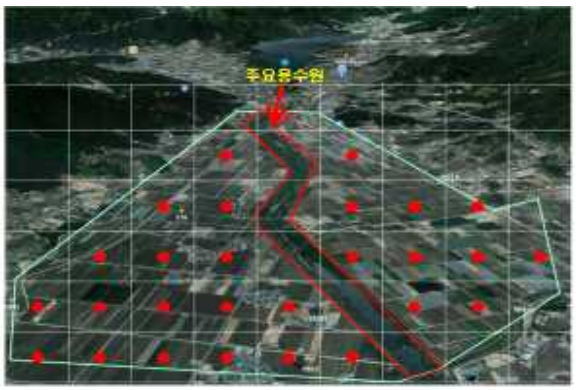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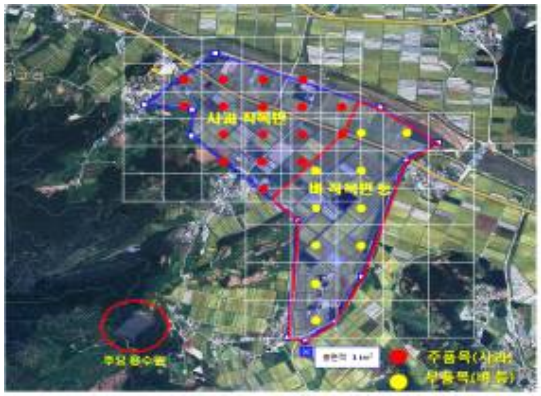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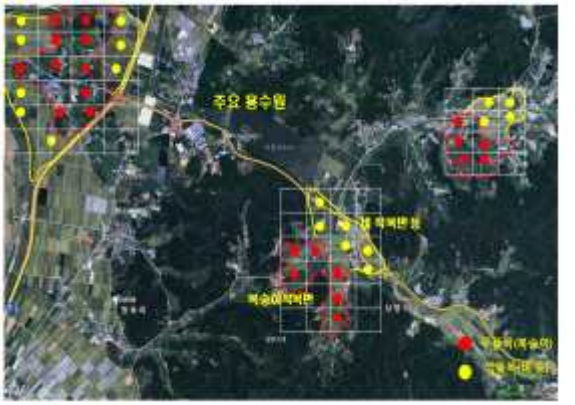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19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19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0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상기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용수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GAP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Ⅱ 사업추진체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1월)		지자체(1~2월)		시·군(1~2월)		시·군→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서명을 받은 후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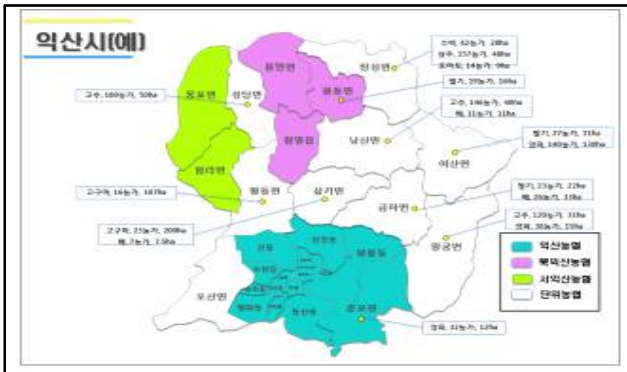

시군 모델 수립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 서류작성 교육

추진절차

○ 읍면동은 시·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 담 회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 시·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 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인증기관에 한함)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업체에 가점 부여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 및 월별 시료채취 계획 (별지 4호)을 수립하여 시·군에 송부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장이나 생산자 단체장 등의 입회하에 수행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 내의 모든 필지를 재조사하여 부적합 필지 최소화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결과보고	▶	자금집행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수행기관→시·군 → 시·도→농식품부)		(시·군→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및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1호)

○ 시・도는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유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10호)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관원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서(별지 9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분석결과를 D/B화 하여 분석성적의 유효기간(5년)동안 보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안전성 분설 결과(별지 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내 관련부서에 통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부정수급 관련 연 2회(상하반기) 점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1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 · 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 · 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 · 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3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 · 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분기별 1회)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①인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인증 농가 지원, ②검사비 이외에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 지원, ③중복지급, ④부적합 검사성적서(미등록 농약)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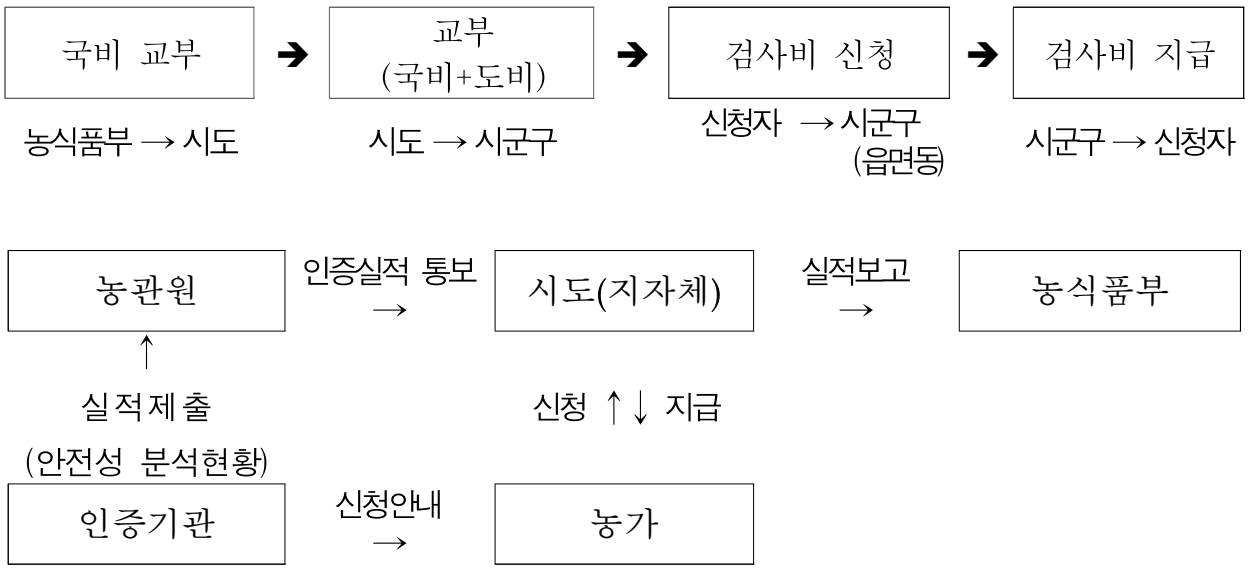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별지 제1호 서식(지자체용)>

2020년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0 GAP 안전성 분석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나. 사 업 량 :

다. 사업대상 :

2. 사업목적

○

3. 사업기간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

6. 보조사업의 효과

○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20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

Ⅱ.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회, 주요내용 등 기재)

Ⅲ. 세부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

3. 향후계획

○

<별지 제 3 호(생산자단체)>

'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품목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신청내용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0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4호(수행기관용)>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일자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채취건수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12.5.	84	2017.12.13.	68	2017.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3.20.	84		-	2018.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11.13.	120	2018.11.15.	100	2018.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원)

검사비 신청일	농가명	단체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유지여부(○,X)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7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분석기간 : ‘20. 1. 1. ~ ’20. 00. 00.

(단위 : 건수)

인증기관명	시군구 (주민등록지)	인증번호	신청자명	농지 소재지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 엑셀로 작성할 것(검사비 지급서류로 활용이 불가하며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

<별지 제8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시군구)명 :

□ 분석기간 : ‘00. 00. 00. ~ ’00. 00. 00.

(단위 : 건수, 원)

시군구 (주민등록지)	신청자명	분석현황				지급현황							
		토양 (건수)	용수 (건수)	농산물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건수)	중금속 (건수)					잔류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 집행실적 보고 시 누적자료 제출

<별지 제9호(수행기관, 지자체용)>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잔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분석결과 내역 1부.

2020.　　.　　.

보조사업자(지자체) :　　(인)

<별지 제10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 분석기간 :

(단위 : 건수, 원)

농가명 (단체명)	농가수	품목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 (계획)	집행내역								집행율
				계획	실적		계	시료채취			분석비용			사업 관리비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20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1 총괄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신청 농가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신청월	시도	시군구	농가명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인증번호	농약		중금속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농가별 작성(생산자단체라도 농가별 작성)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참고 1]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비 가내시	10월	·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 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② 사업지침확정	~12월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워크숍 등) **· '19년 사업지침 최종확정 및 시달**
⇓		
③ 사업신청 및 홍보	12~1월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 제출(→시·군)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		
④ 사업성 검토	2월	·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 확정**
⇓		
⑤ 수행기관 선정	3월	·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 · 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⑥ 토양, 용수검사	3~11월	· 토양, 용수검사(인증,검사기관)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시도→농림부 보고(분기별)
⇓		
⑦ 정산 및 보고	12월	·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농관원, 지자체) · 정산실시
⇓		
⑧ 사후관리		·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참고 2]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 생산자 단체 신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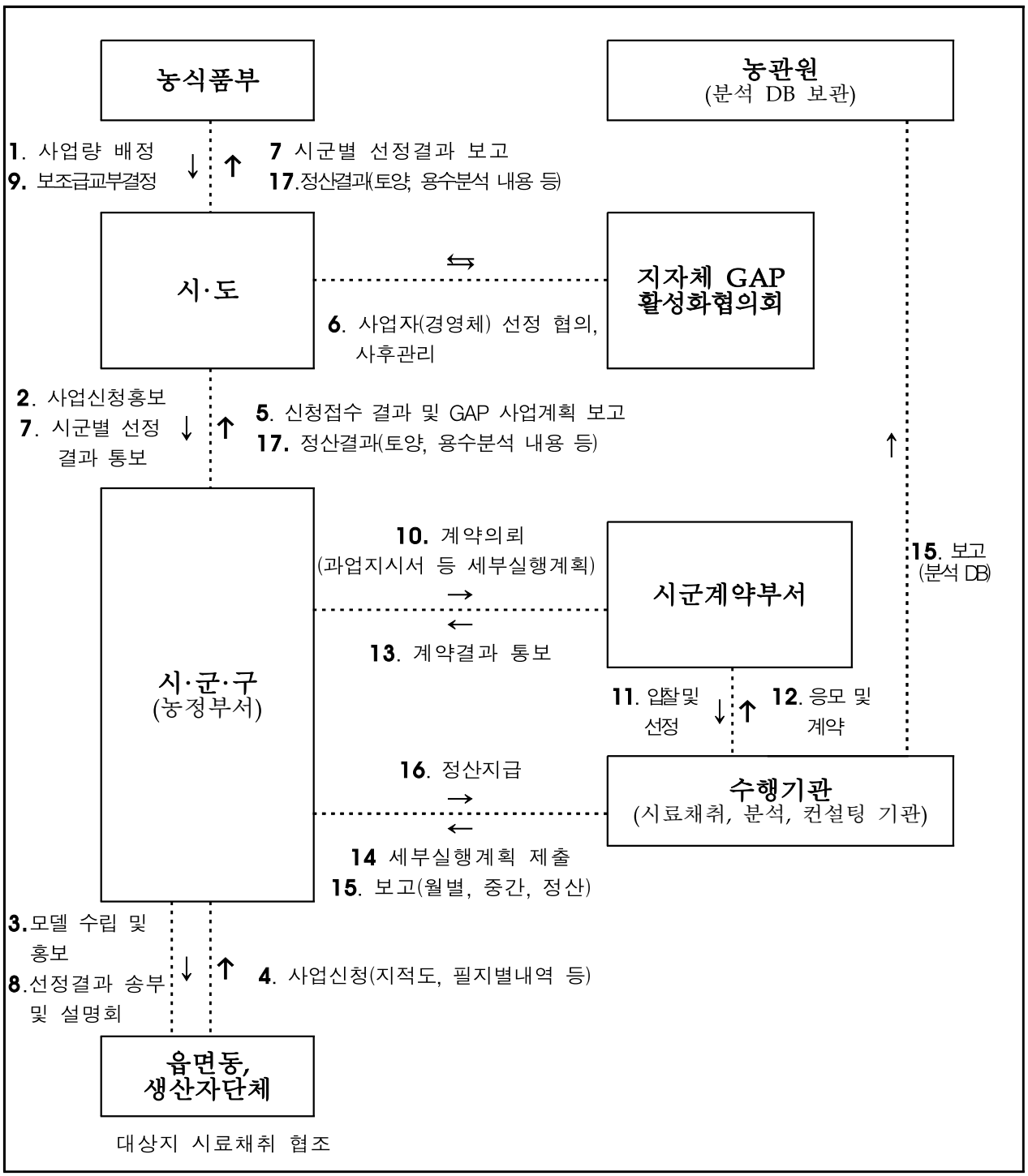

□ 관 주도로 추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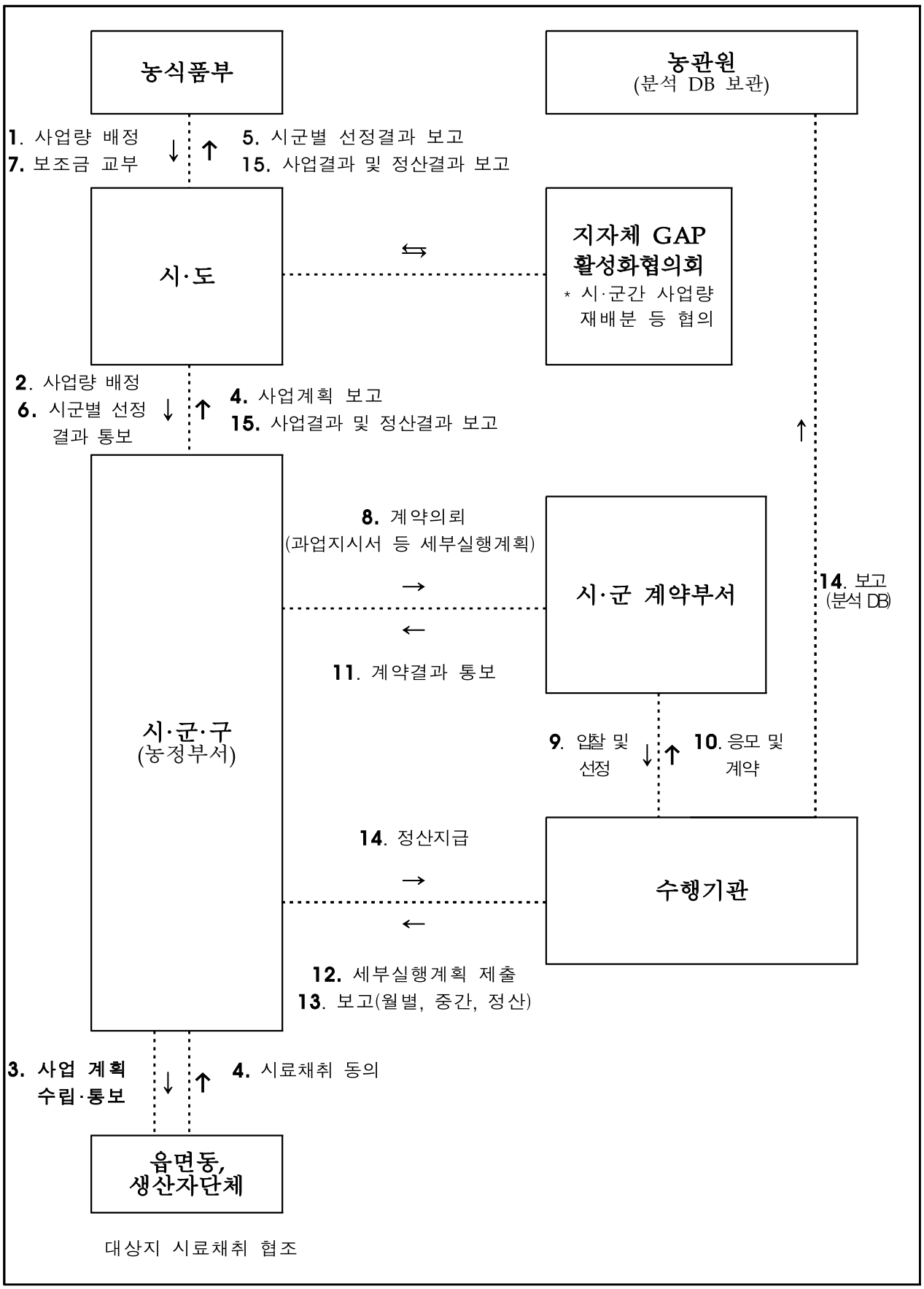
농식품부
농관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7. 보조금 교부
5.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시·군간 사업량
재배분 등 협의
2. 사업량 배정
6.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4. 사업계획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8.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11. 계약결과 통보
시·군 계약부서
14. 보고
(분석 DB)
시·군·구
(농정부서)
9. 입찰 및
선정
10. 응모 및
계약
14. 정산지급
수행기관
12. 세부실행계획 제출
13. 보고(월별, 중간, 정산)
3. 사업 계획
수립·통보
4. 시료채취 동의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참고 3]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정

1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 ○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 균일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분석활용, 나머지 1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3자를 입회

↓

3. 분 석
-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2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 ○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10~15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 ○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참고 4]

’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 업 명

○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2020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 12. 까지

4. 추정금액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유형	품목	대상지역	농가(호)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2020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에 따라 분석
-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①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 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 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5]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참고 6]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95,400~309,400원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_4$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2-}$)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9,400**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소 계	**53,1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

[참고 7]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계획 (15점)	15	12	9	6	3	○향후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2.부적합대응계획(10점)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72 GAP 생산여건조성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생산여건 조성	예산 (백만원)	350
사업목적	GAP인증 희망농업인의 GAP 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인증신청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GAP인증 생산기반 확대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확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GAP 교육, GAP실천요령, 위해요소관리 및 GAP인증 신청 지원 등의 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한도	민간경상보조금(국비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	500	350	350
국 고	500	500	350	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전진석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054-429-4172 054-429-417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미지정
관련자료	별도 공지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안전한 농·임산물 생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에서 농·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3. 지원대상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임산물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임산물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GAP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현장 컨설팅 및 인증신청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기준사업비: 국고 100%

Ⅱ 사업추진체계

1. 보조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사업자 공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생산여건조성사업 계획 수립(해당연도 1~3월)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 평가대상: 공모기간 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분야 사업 수행 적격 업체

○ 평가기간: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 후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사업제안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7인 이내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제안서발표: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 설명에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기술능력평가

- 발주기관(농관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기술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사업수행 계획	사업 계획 추진 방법의 적절성	
		교육관리 방법 및 실행 의지	
		업체 신뢰성	
	기술·지식·능력	전문인력 확보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	
	관리기술	교육진행 및 학습지원 적절성	
		각종 보고서의 신뢰성	
		교육생 관리 및 투입 인력 적절성	
	기타평가	교육장소의 접근성	
		사업예산 및 증빙자료 관리 방법위 적절성	
총계		80점	

○ 입찰가격평가: 발주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평가

보조사업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배점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 중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부여

○ 고득점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e-나라도움]		[심의위원회]		[사업수행기관]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계약 즉시)

2. 사업대상자(농·임업인) 선정

사업 신청

○ GAP 컨설팅이 필요한 농·임업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지원, 사무소에 유선 및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수시)

○ 시·도 및 시·군·구 등이 GAP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역 농·임업인 등의 사업대상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 농·임산물의 위해요소관리를 위해 채소류·과채류·과실류 위주의 생산자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가 달성해야 할 사업목표량이 있으며, 사업비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종류에 따라 사업목표는 변동되며, 사업목표량 미달성 시 사업비 차감 지급

○ 사업신청자 수가 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시·도(시·군·구) 및 유통·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의향 조사 후 사업수행기관과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조사업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기술협상 과정에서 사전 협의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GAP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현장 실천요령 지도, GAP인증신청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보조사업자)

○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GAP인증 희망 농·임업인 수시 발굴
-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농업인 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 매월 1회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분기 1회 중간보고회 및 사업 종료 시 결과 보고회 개최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전 승인 후 실시

4. 자금교부 및 집행

○ 보조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

○ 보조사업자는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카드 등 전자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지출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행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필요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월 30일 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사업비 검정 및 정산(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만족도 조사 실시

○ 보조사업자는 GAP생산여건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의 적정성, 해당 농업인의 의견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9~11월
- 조사대상 : GAP생산여건조성사업 대상 농가

2.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GAP생산여건조성사업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사업완료보고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국가인증 농식품지원</td><td>세목</td><td colspan="3">자치단체
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td><td>예산
(백만원)</td><td colspan="3">2,10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7">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7">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7">「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원 등),
제110조(자금지원)</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7">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7">300백만원 이내/개소</td></tr>
<tr><td>재원구성(%)</td><td>국고</td><td>3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td><td>지방비</td><td>2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td><td>융자</td><td>-</td><td>자부담</td><td>50
(생산자단체)</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계획</td><td colspan="7">(단위 : 천원)
<table>
<tr><th>구 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 이후</th></tr>
<tr><td>합 계</td><td>3,500,000</td><td>3,500,000</td><td>3,500,000</td><td>7,000,000</td></tr>
<tr><td>국 고</td><td>1,050,000</td><td>1,050,000</td><td>1,050,000</td><td>2,100,000</td></tr>
<tr><td>지방비</td><td>700,000</td><td>700,000</td><td>700,000</td><td>1,400,000</td></tr>
<tr><td>융 자</td><td>-</td><td>-</td><td>-</td><td>-</td></tr>
<tr><td>자부담</td><td>1,750,000</td><td>1,750,000</td><td>1,750,000</td><td>3,500,000</td></tr>
</table></td></tr>
</table>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신우식	044-201-2271
		사무관 김남진	044-201-227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전진석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우선 지원]

○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20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선정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별	구분	사용용도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 ·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건조저장시설	○ 곡온(穀溫)관리, 쥐 등 침입방지, 잔곡(殘穀)관리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물 공사
	작업장	○ 공정별(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출입문, 창문, 집진시설, 채광 및 조명 등 공사
	가공설비	○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 및 선별장치 공사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집진설비, 부산물실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공사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 ·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작업장	○ 공정별(선별, 세척 및 포장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배수, 내벽, 천장, 출입구, 창문, 채광 및 조명, 환기설비, 집진설비 등 공사
	수확 후 관리설비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취급 설비,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저장(예냉) 시설	○ 저온시설의 작업장과 분리 공사 ○ 벽체, 천장, 내벽, 창문, 출입문, 온도(냉장, 냉동, 냉각)관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시설 공사
지원제외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팰릿(pallet), 수송·운반·보관용 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참고사항>

○ 시설별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참고

○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 및 관련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정한 공사 방지

○ 사용용도 외 GAP 농산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장치나 설비 보완 허용하나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 제시

○ 전체사업비 5% 내 기술검토 비용 및 설계,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생산자단체 등(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3월)		시·도(3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 보조금 상반기 집행 가능자 우선 선발

[주요 점검사항]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4월)		시·군(4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4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감리는 권장사항)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4~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자체('20.1월), 농식품부('20.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집행률은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자체 독려)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1(생산자단체용)]

'20년 GAP시설 보완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11">신청업체현황</td><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세)</td></tr>
<tr><td>사 업 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td></tr>
<tr><td>대표자
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HP</td></tr>
<tr><td>총출자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자본금</td><td>백만원</td></tr>
<tr><td>사업형태
(√표시)</td><td colspan="4">□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td></tr>
<tr><td>사업체구분</td><td colspan="4">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td></tr>
<tr><td rowspan="4">설 립 일</td><td rowspan="4">년 월</td><td rowspan="4">'19년
매출액
(백만원)</td><td>총 매출액</td><td></td></tr>
<tr><td>생산(원물)</td><td></td></tr>
<tr><td>가 공</td><td></td></tr>
<tr><td>직거래</td><td></td></tr>
<tr><td rowspan="2">공장
주소지</td><td colspan="4">주소: (-)</td></tr>
<tr><td colspan="2">전화:</td><td colspan="2">팩스:</td><td>종업원수 :</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계</td><td>국비</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세부사업</td><td colspan="4"></td></tr>
</table>

GAP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별지2(생산자단체용)]

'20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18년도(톤)				'19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사 진	[위치도]	[사진]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GAP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 연 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별지3(시군용)]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 영어조합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20년(농가 ha), '21년(농가 ha), '22년(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18, '19년 주산지 GAP 토양용수검사 대상(○)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여부(○)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별지4(시도용)]

'20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05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 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10)	(8)	(6)	(4)	(2)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5점)			5	'18년, '19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신청대상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31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안 제55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2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예시)

1. 작업장 보완 공사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작업장
분리·구획
공사</td><td>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구획 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공사전

공사후(세척실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 작업공간 분리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 분리·구획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 2,600천원(10m×4m 기준)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바닥공사</td><td>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변경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보완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완
- 운반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 바닥 코팅제 보수작업: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공사전 ⇨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 13,000천원, 레진몰탈 : 26,000천원</td></tr>
<tr><td>배수구공사</td><td>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보완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td></tr>
<tr><td>천장공사</td><td>-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공사

공사전 ⇨ 공사후</td></tr>
</table>

구분	주 요 내 용
	-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분리공사와 함께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보완 시공 ⇒ 세척실 전청 보완(돌출부위 보완) 세척실 전청 보완(헤파필터 설치)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17,000천원
출입문공사	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출입문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출입문 보완(에어커튼설치) 출입문 보완(스피드도어설치)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 2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 1,700천원, 스피드도어 : 7,000천원
조명공사	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 설치공사,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 Lux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 Lux 이상

구분	주 요 내 용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 15,000천원
창문공사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공사 공사전 공사후
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	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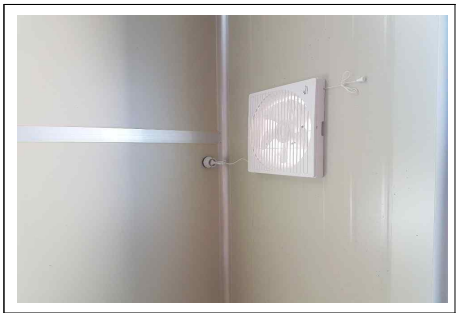 공사전(일반 Fan) 공사후(공조기 설치)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공사 : 25,0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겸용 환기공사 : 115,500천원(230㎡ 온도 20℃ 기준, 입고공간제외)

2. 설비보완 설치 공사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수확 후
관리설비
공사</td><td>농산물을 수확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를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보완 설치
- 수확 후 관리시설의 청소용이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

공사전 ➡
공사후</td></tr>
<tr><td>청소관리
시설공사</td><td>청소도구함 설치 및 청소관리 설비 설치

작업장 청소설비 설치

기계설비용 에어건 설치</td></tr>
<tr><td>위생시설
공사</td><td>위생장비/시설 설치공사

(포충등)

(손소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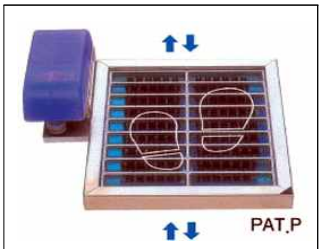
(발판소독기)

(에어커튼)

(손건조기)

(에어샤워기)</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td><td>*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 500천원, 손건조기 : 400천원, 발판소독기 : 150천원, 에어커튼 300천원 손 소독기 : 200천원, 포충등 : 450천원등
- 에어샤워기 :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td></tr>
<tr><td>화장실공사</td><td>-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 설치공사
- 수세식으로 세면대 보완 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 수세식 설비 공사
-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화장실 세면대 보완

손건조기, 페이퍼타월 설치</td></tr>
</table>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임
*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음

참고 3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합당하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가 타당한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대상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게 지원하였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이 적절하며,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 (15점)	15	12	9	6	3	○GAP 인증농산물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3-2.사후관리계획(10점)	10	8	6	4	2	○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합 계		100점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예산 (백만원)	1,796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진흥법」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6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736	3,331	4,931	3,536
국 고	2,636	2,106	2,606	1,796
자부담	1,100	1,225	2,325	1,7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헬스케어연구단	서희정 양혜정	044-201-2133 061-219-9245/9341

신청시기	정기(1월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3. 지원대상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기능성평가(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기업 규모별 국고 차등지원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지원비율	40%	50%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7개 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7개, 2년차 15개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품목당 지원규모 120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6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식품연구원(1월)		식품기업 등(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평가위원회]		[검토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연구계획서 승인 최종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1~2월)		한국식품연구원 (2~3월)		한국식품연구원 (3월)		한국식품연구원 (4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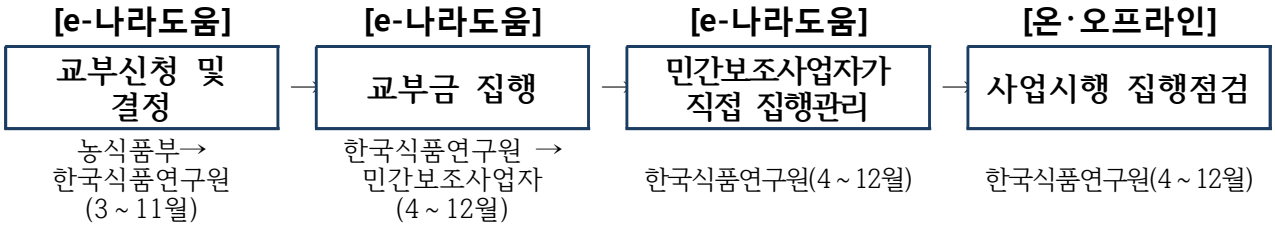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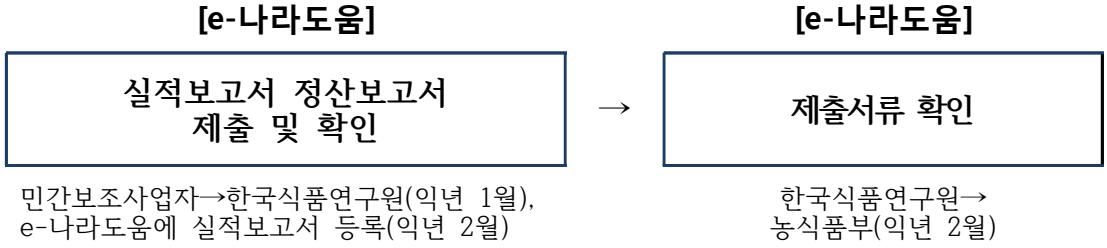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난하므로 협약서(수행기관/기업)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21.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체적용시험 사업신청서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table>
<tr><td>1.기관명</td><td colspan="3"></td><td>2.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3.주소</td><td colspan="5"></td></tr>
<tr><td>4.대표자</td><td colspan="3"></td><td>5.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6.주담당자</td><td>성명</td><td></td><td>직 위</td><td colspan="2"></td></tr>
<tr><td>전화</td><td></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FAX</td><td></td><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r>
<tr><td>7.지자체</td><td colspan="3"></td><td>8.생산자단체</td><td></td></tr>
<tr><td rowspan="4">9.기능성평가
품목정보</td><td colspan="2">① 소재/물질 또는 제품명
(국문, 영문, 화학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 기능성평가 지원항목
(표 참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③ 시험평가 근거자료</td><td colspan="3">☐ 소재/품목에 대한 자료 ☐ 시험물질 성적서 등
☐ in vitro 실험 ☐ in vivo 동물시험
☐ 안전성자료 ☐ 관련 논문 및 특허
☐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 생산자단체 참여확인서
☐ 기타 ( )</td></tr>
<tr><td colspan="2">④ 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10.기업현황</td><td>업태</td><td colspan="4">☐ 지자체 ☐ 농업법인 ☐ 벤처기업 ☐ 기업 ☐ 연구소</td></tr>
<tr><td>인원</td><td>명</td><td>매출현황</td><td>천원</td></tr>
<tr><td colspan="2">신청기업 공동부담액</td><td colspan="3">총 사업비(2억원 이내)의 %
천원</td></tr>
</table>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10부
2. 추가 근거자료 (성적서, *in vitro, in vivo* 동물시험,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 2부
3. 파일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인체적용前시험 사업신청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대표자			5. 전화번호	
6. 주담당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7. 지자체			8. 생산자단체	
9. 품목정보	① 소재/물질 또는 제품명 (국문, 영문, 화학명)			
	② 평가 지원항목			
	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해당되는 것에만 표시)			
	④ 기타 특이사항			
10. 기업현황	업태			
	인원		매출현황	

② 평가 지원항목
☐ 기능성평가 (당뇨, 비만 등..)
☐ 안전성평가

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해당되는 것에만 표시)
☐ 소재/품목에 대한 자료
☐ 역사적우수성 자료 ☐ 지리적 우수성자료
☐ 시험물질 성적서 등
☐ 기능성자료 ☐ 안전성자료
☐ 관련 논문 및 특허
☐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 기타 ( )

10. 기업현황
업태: ☐ 지자체 ☐ 농업법인 ☐ 벤처기업 ☐ 기업 ☐ 연구소
인원: 명 매출현황: 천원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5부 2. 추가 근거자료 2부 3. 파일 1부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table>
<tr><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td><td>세목</td><td colspan="2">자치단체
자본보조</td></tr>
<tr><td>내역사업명</td><td colspan="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td><td>예산
(백만원)</td><td colspan="2">2,940</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6">○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td></tr>
<tr><td>사업
주요내용</td><td colspan="6">○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td></tr>
<tr><td>국고보조
근거법령</td><td colspan="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td></tr>
<tr><td>지원자격 및
요건</td><td colspan="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6">○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td></tr>
<tr><td>재원구성
(%)</td><td>국고</td><td>30</td><td>지방비</td><td>30</td><td>융자</td><td>-</td><td>자부담</td><td>40</td></tr>
<tr><td>연도별
재정투입
현황</td><td colspan="6">(단위 : 백만원)
<table><tr><td>구 분</td><td>2017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이후</td></tr><tr><td>합 계</td><td>6,650</td><td>7,000</td><td>7,000</td><td>9,800</td></tr><tr><td>국 고</td><td>1,995</td><td>2,100</td><td>2,100</td><td>2,940</td></tr><tr><td>지방비</td><td>1,995</td><td>2,100</td><td>2,100</td><td>2,940</td></tr><tr><td>자부담</td><td>2,660</td><td>2,800</td><td>2,800</td><td>3,920</td></tr></table></td></tr>
</table>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강태원 주무관 권영민	044-201-2138 044-201-2139

신청시기	전년도 2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5)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동물성 기름 제외)(10403),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설탕 제조업(10720),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주정 제조업(11121)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농식품부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중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식품기업은 가, 나, 라, 마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없이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저온저장고는 ①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②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다만, 품목에 따라 CA저장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필요없는 경우 다른 저장방식 가능)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은 지원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절단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6.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전년도 6~7월) → 시·도		지자체(전년도 7월)		시·도(전년도 8월초까지) → 농식품부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덧붙임2~4)

시·군·구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덧붙임5) 작성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시·도로 사업신청 시 제외

시.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로 사업신청 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농식품부(전년도 6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8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8~9월)

시·군·구, 시·도

○ 사업여건 현장확인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9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 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2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53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 · 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 · 도지사, ‘20.3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 · 군수 또는 시 · 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6) → 시장·군수(‘20.7) → 시·도지사(‘20.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참고]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참고]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슘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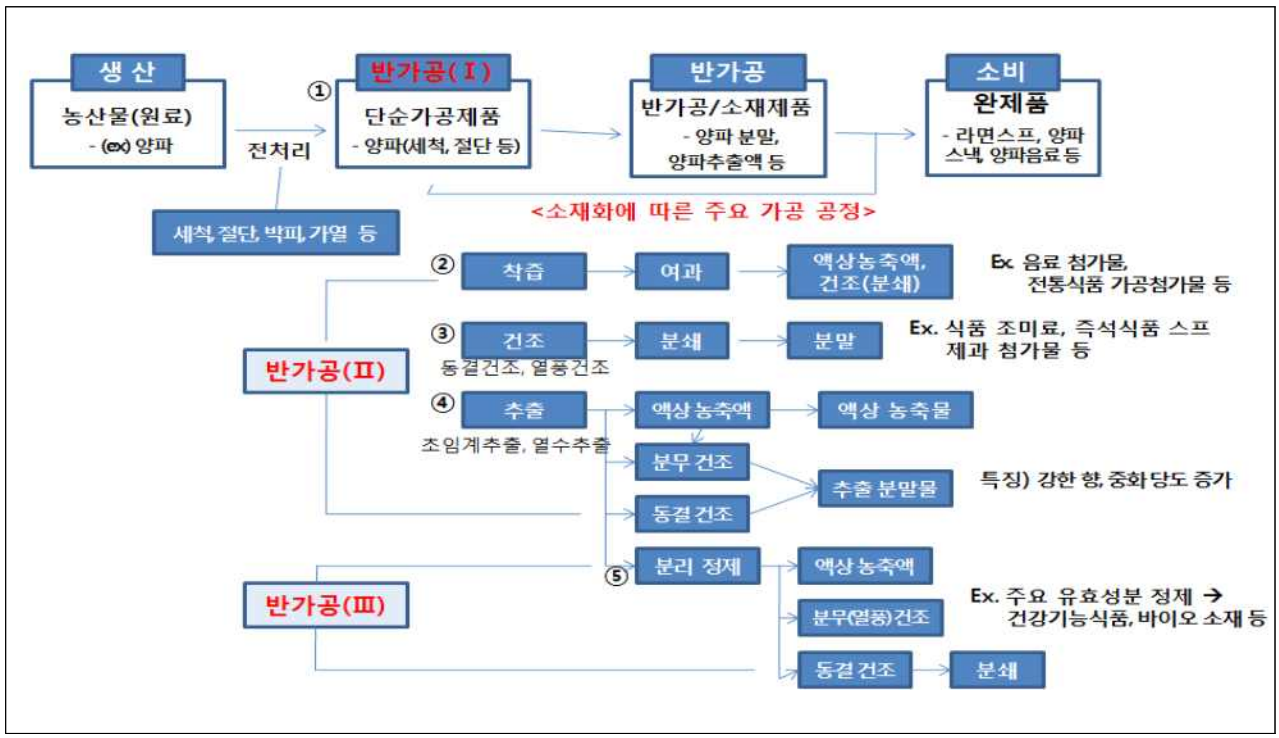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법인(생산자단체)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영농·식품업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td><td>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3">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td><td>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td><td colspan="2">1~5 중 택1
(중복가능)</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3">농지이용계획</td></tr>
<tr><td>농업진흥지역안</td><td colspan="2">지구</td></tr>
<tr><td>농업진흥지역밖</td><td colspan="2">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20.6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7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8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9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20년도 상반기]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O동(㎡)	O동(㎡)	O동(㎡)	O동(㎡)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6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6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17년					
	'18년					
	'19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21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21년 또는 2022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말까지)			
2020년(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비중(%)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말까지)									
2020년 (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원료 사용계획 증거자료(계약재배, 국산 농산물 등) 제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별표1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5) - 현재사업 및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에 해당 - 주 판매(납품)처가 완제품제조업체, 식품조리업체에 해당	15	12	9	6	3	
2.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점)	○ 국산원료 사용(규모, 비율) 현황(25) - 국산원료 사용 비중	25	20	15	10	5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 계약재배 등 세부적인 방안 포함 - 푸드플랜 참여시 만점 부여	15	12	9	6	3	
3. 경영 능력(25점)	○ 재정현황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25)	5	4	3	2	1	
	- 자산규모 등 재정현황(5)	10	8	6	4	2	
	- 매출액 증가율(10)						
	- 순이익 증가율(10)	10	8	6	4	2	
4. 시설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5) - 시설·장비 투자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 및 기대효과(5) - 기존시설과의 연계, 설치 후 경제효과 등	5	4	3	2	1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의 적절성(5)	5	4	3	2	1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5)	5	4	3	2	1	
※ 가점(5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공동협력(5) - 상생협력MOU 등 협력체계 구축한 경우						
총 점							

<계량부분 평가 참고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25)	5	30% 미만
		10	30% 이상 ~ 50% 미만
		15	50% 이상 ~ 70% 미만
		20	70% 이상 ~ 90% 미만
		25	90% 이상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3	10% 미만
		6	10% 이상 ~ 30% 미만
		9	30% 이상 ~ 50% 미만
		12	50% 이상 ~ 80% 미만
		15	80% 이상
경영 능력(20)	매출액 증가율(10)	2	1% 미만
		4	1% 이상 ~ 3% 미만
		6	3% 이상 ~ 7% 미만
		8	7%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순이익 증가율(10)	2	1% 미만
		4	1% 이상 ~ 3% 미만
		6	3% 이상 ~ 7% 미만
		8	7%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별표2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CEO 역량(10점)	○ CEO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10) - 연간 시설투자 등 사업확대 노력 - 상품화 및 공급계획(마케팅 전략 등)의 적절성	10	8	6	4	2	
2. 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	○ 운영계획의 적절성(10) - 국산원료 사용 비중 확대 - 매출액, 순이익 등 증가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3. 시설 설치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 전체 공정에 대한 개별 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 설치 계획의 경제성 및 효과성	15	12	9	6	3	
	○ 전문화 가능성 등(5)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5	4	3	2	1	
소 계							
서류평가 (60)	서류평가 × 60%						
합계							

2. 종합의견